

알기 쉬운 인도네시아 세법 (2020년)

발 간 사

인도네시아에서 우리 기업들은 성실한 세금신고와 납세를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으나 복잡한 인도네시아 세법을 정확히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세무처리 방법과 절차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불이익을 당하거나 기업의 존폐 위기에 빠지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세법은 한국과 상당히 다른 법률체계와 과세방식을 가지고 있으며, 세법의 엄격하고 까다로운 적용과 세무 공무원들의 낮은 납세자 권리보호 의식으로 인해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게 세금문제는 항상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우리 기업들의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인도네시아 세법에 대한 설명과 현지 세무 전문가가 인도네시아에서 상담하고 경험한 기업의 세무문제와 세무행정 사례를 엮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인도네시아 세법」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자에서 세무상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다룰 수 없었지만 2015년, 2016년, 2018년에 이어 네 번째로 발간되는 「알기 쉬운 인도네시아 세법」 책자가 우리 진출기업들에게 유익한 자료로 활용되고 인도네시아 세법을 정확히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앞으로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코리아데스크가 인도네시아 진출기업과 진출예정 기업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2020년 11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도네시아 코리아데스크

머 리 말

그동안 「알기 쉬운 인도네시아 세법」에 보내 주시는 뜨거운 성원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출간한 「알기 쉬운 인도네시아 세법」 2020년판은 아래와 같은 특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첫째, 발간 당시 개정된 세법만을 다룬 2018년도 책자와 달리 이번에는 우리 기업이 알아야하는 모든 세법 규정을 최신화하여 총 망라함으로서 기업이 필요한 내용을 이 책자 한편에서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본 책자는 기초편과 실무편으로 나누어 작성하였습니다. 기초편은 인도네시아에 신규 진출하는 기업이 인도네시아 세법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세법 체계부터 납세등록 후 세무신고, 세무조사, 환급절차, 불복청구까지의 내용을 정리하였고 실무편은 기업의 세무 실무역량 향상을 위해 기업이 알아야하는 세법 규정을 사례를 들어 설명함으로써 기업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셋째, 본 책자의 부록편에는 최근 11월 2일 공포된 일자리 창출법 UU No.11/2020 (일명 움니버스 법)에서 세법만 발췌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정된 일자리 창출법에서는 4개 조세분야가 개정되었으며, 소득세법(PPh), 부가세법(PPN), 국세기본법(KUP), 지방세법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중 소득세법, 부가세법, 국세기본법에서 변경 전, 변경 후 원문을 한글 번역하여 첨부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를 통해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인 기업들이 어려운 인도네시아 세법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0년 11월

BNG컨설팅 김 재 훈

CONTENTS

알기 쉬운 인도네시아 세법(2020년)

I. 기초편	1. 인도네시아 세법의 체계-----	10
	2. 납세등록증과 부가세 등록증에 대한 이해 -----	13
	3. 세무신고 -----	17
	4. 세무조사 -----	22
	5. 조세의 환급 -----	26
	6. 이의신청 -----	43
	7. 조세심판(항소) -----	46
	8. 이자, 과태료, 벌과금 감면 및 면제 -----	47
II. 실무편	1. 자본금과 세무 ISSUE -----	49
	2. 주식거래에 관한 인니 세법 -----	52
	3. 세금 면제 및 감면 제도 -----	55
	4. PPh4(2) 최종분리과세에 대한 이해 -----	58
	5. PPh15 인정과세에 대한 이해 -----	61
	6. PPh19 자산 재평가세에 대한 이해 -----	62
	7. PPh21 근로소득세에 대한 이해 -----	64
	8. PPh22 특정 물품의 매매향치 물품의 수입에 관한 선납 법인세에 대한 이해 -----	76
	9. PPh23 원천세에 대한 이해 -----	77
	10. PPh25 법인세 중간 예납에 대한 이해 -----	81
	11. PPh26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세에 대한 이해 --	83
	12. 법인세 계산 -----	85
	13. 국세청 서식 Form DGT -----	86
	14. 고정사업장 (BUT) -----	88

II. 실무편

15. 영세, 중소기업자에 대한 최종분리과세 -----	91
16. Tax Holiday -----	97
17. Mini Tax Holiday -----	105
18. Tax Allowance -----	116
19. 퇴직급여 총당금 -----	118
20. 기부금의 손금산입(법인세비용인정) 규정 -----	119
21. 노동집약산업에 대한 투자 소득공제, 교육훈련비 및 연구개발비 비용공제에 대한 정부령 (정부령 45호) -	125
22.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하는 세무사항 -----	128
23. 상속 및 증여세 -----	130
24. 자동차에 부과되는 특소세 개정 -----	131
25. 고급 주택 등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 및 소득세 관련 재무부장관령 개정 -----	134
26. 법인세 신고 시 확인해야 할 사항 -----	136
27. 개인소득세 신고와 주의사항 -----	139
28. Daftar Biaya 란 ? -----	145
29. 접대비의 손금 산입 시 주의사항 -----	147
30. Pas Final 이란? -----	148
31. 부채비율 -----	150
32. 특정 외국법인 유보소득에 대한 간주 배당 제도 -	152
33. 자회사가 모회사로부터 차입 시 이자 -----	155
34. 인도네시아 업체가 한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한 경우 세무사항 -----	156

II. 실무편	35. 부가세 환급 시 유의사항 -----	158
	36. 수출 용역에 대한 부가세 -----	160
	37. 수출 용역에 대한 신고서 -----	163
	38. 세금계산서 범칙 조사 -----	166
	39. 이전가격에 대한 문서화 규정 -----	168
	40. 이전가격 사전 합의에 대한 재무부장관령 수정안 -----	174
III. 부록편	1. 일자리 창출법(옴니버스법) 중 세법 규정 -----	177
	2. 소득세법 개정(Pasal 111) -----	183
	3. 부가세법 개정(Pasal 112) -----	189
	4. 국세기본법 개정(Pasal 113) -----	199

I

기초편



1. 인도네시아 세법의 체계

인도네시아 법률은 인니어로 Undang Undang 으로 보통 UU No. 및 년도로 표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UU No. 36 /2008 이라고 하면 2008년에 공포된 법률 제 36호로 해석한다.

법률은 국회를 통과하여야 하기 때문에 변경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에 보통 법률에는 이러 이러한 규정은 재무부장관령에 따른다, 또는 정부령에 규정한다는 식으로 되어 있다. 우리나라로 보면 시행령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 인도네시아 세법 체계 >

Undang Undang (본법)
Peraturan Pemerintah (정부령)
Keputusan peresiden (대통령 규정)
Keputsan Menteri keuangan (재무부장관 규정)
Peraturan menteri Keuangan (재무부 장관령)
Keputusan Dirjen Pajak (국세청장 규정)
Peraturan Dirjen Pajak(국세청장령)
Surat Edaran Dirjen Pajak (국세청 내규)

인도네시아 세법으로는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

- 국세기본법 : Undang undang ketentuan Umum Dan Tata Cara Perpajakan / UU No. 28/2007 일반규정과 과세절차 관한 법령

- **소득세법** : Pajak Penghasilan (PPh) / UU No. 36 /2008 인니 소득세법은 한국의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포함한 것으로 말 그대로 Pajak(세금) Penghasilan(소득)이며, 줄여서 PPh로 표시한다.

PPh4(2)(최종분리과세), PPh15(인정과세), PPh19(자산재평가세), PPh21(갑근세), PPh22(수입물품 및 특정물품에 대한 선납법인세), PPh23(국내거래에 대한 원천세), PPh25(법인세 중간 예납), PPh26(국외거래에 대한 원천세), PPh29(법인세 추납) 등 납부하는 세목들은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PPh4(2)는 최종분리과세로 소득세법 제 4조 2항에 규정되어 있다.

PPh21는 소득세법 제 21 조에 규정된 세목으로 급여성 소득에 대한 소득세로 한국의 갑근세와 유사하다. 간혹 PPh를 PPH 로 표시하지만 필자가 보기에는 PPH는 잘못된 표기로 볼 수 있다. Pajak의 P와 Penghasilan의 P와 h를 따와서 표시를 하였으므로 PPh로 표기하는 것이 다른 약자와 혼돈이 없을 것이며, 반면 부가세는 PPN 또는 부가세 및 특별소비세(사치세) PPn BM으로 표시한다.

PPn 으로 표시하는 것은 역시 잘 못된 표시인데 Pajak에서 P와 Pertambahan의 P와 Nilai의 N을 따왔기에 PPN으로 표시하는 것이 맞겠다. Barang Mewah를 넣는다면 PPn BM 으로 표시하면 되겠다.

- **부가세법** : Pajak Pertambahan Nilai atas Barang dan Jasa dan pajak Penjualan atas Barang Mewah (PPN) / UU No 42 /2009
- **재산세법** : Undang-Undang Pajak Bumi dan Bangunan (UU PBB) / UU No.12 /1994
- **국제징수법** : Undang-Undang Penagihan Pajak dengan Surat Paksa / UU PPSP / Undang-Undang No. 19/2000;

- 취득세법 (또는 토지 및 건물 권리 이전에 관한 법) : Undang-Undang Bea Perolehan Hak atas Tanah dan Bangunan/UU BPHTB / Undang-Undang No. 20/2000

- 조세심판법 : Undang-Undang Pengadilan Pajak/UU PP / Undang-Undang No. 14/2002

- 인지세법 : Undang-Undang Bea Meterai/UU BM / Undang-Undang No. 13 / 1985

2. 납세등록증(SKT)과 부가세 과세등록(SPPKP 또는 PKP)

1) 납세등록증(Surat Keterangan Terdaftar 또는 SKT)과 부가세 과세등록증(Surat Pengukuhan Pengusaha Kena Pajak / SPPKP 또는 PKP)의 이해

법인 설립을 하게 되면 관할 세무서에 납세등록을 하게 되는데 한국과 다른 점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매입 부가세를 환급 또는 매출부가세와 상계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부가세 과세등록을 하여야 한다.

한국에서 진출한 법인의 경우 한국과 같이 납세등록증만 교부 받고 부가세 과세등록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단 토지를 구매하거나 기계, 설비 자산 등을 구매하면서 매입부가세를 지급하는데, 2020년 11월 2일 옴니버스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 부가세법에는 부가세 과세등록 받기 이전의 매입세액은 매입부가세 불공제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부가세 과세등록 의무는 연간 매출액이 48억 루피아 이상인 경우에는 의무 가입이며, 연간 매출이 48억 이하이더라도 부가세 과세등록을 할 수 있다. 초기 자본재 등에 대한 매입부가세 발생한다면 당연히 부가세 과세등록을 하며, 향후 환급 또는 매출 부가세와 상계처리를 받아야 한다. 결국 부가세 과세등록을 한다면 부가세 신고 및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발생하지만 매입부가세를 환급 또는 매출부가세와 상계할 수 있는 권리도 발생한다는 것이 규정의 취지로 이해하면 되겠다.

부가세 과세등록과 관련한 불이익 사례는 다양한데, 실제 사례를 보면 아래와 같다.

<사례 1>

A기업의 경우 인도네시아에 진출하여 납세등록을 한 후 별도로 부가세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단 토지 매입 후 부가세를 지급하였고 기계 설비를 수입하면서 수입부가세를 납부하였다. 부가세 과세등록이 되었다면 상기 매입부가세는 환급을 받거나 향후 발생할 매출부가세와 상계처리가 가능하지만, 부가세 과세등록을 하지 않아서 전액 비용으로 처리한 사례이다.

<사례 2>

이번 사례는 굳지 부가세과세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부가세 과세등록을 하면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로서, B기업은 년 매출액이 48억이 되지 않고, 매입부가세도 발생하지 않는 판매처가 개인을 상대하는 서비스 업체인데, 납세등록 후 부가세 과세등록을 하였다. 매입 부가세는 거의 발생하지 않지만, 부가세 과세등록을 하였기 때문에 매출액에 10%를 부가세로 납부하고 매월 부가세 신고를 하는 불편이 있었고 부가세 과세등록을 말소 신청하여 말소 받을 수 있지만, 말소시에는 세무조사 후 말소 결정이 되기 때문에 세무조사의 위험도 부담도 초래한 사례이다.

위의 사례들에서 신규 법인 설립 시 부가세 과세등록 여부는 충분히 고려하여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 후 발급까지는 최소 3주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 등 필요 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진행을 하여야 하겠다.

2) 납세등록증

세법에 의한 과세 대상 주체(개인 또는 법인)와 물체(소득)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모든 납세 의무자는 거주지 또는 사업장이 있는 관할세무서에 자진 등록 할 의무가 있으며, 납세자 번호(NPWP)를 부여 받아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2조 1항)

신청서와 아래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 설립 정관(Akta Pendirian) 스캔파일
- 법무부 확인서(SK Kehakiman) 스캔파일
- 임대인이 작성한 사무실 소재 확인서(Surat Keterangan Domisili dari Gadung) 원본
- 대표자 여권 또는 KTP, NPWP 스캔파일

납세의무자 또는 부가세 신고 업자가 자진해서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5년간 소급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제 2 조 4항)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납세등록증 및 납세등록번호는 부여 받지 않으면 통장개설, 사업인허가 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설립 시 납세등록은 이루어지지만, 부가세과세등록은 자진 등록을 하지 않아도 제약이 없어서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5년 전까지 추징될 수 있으므로 상당한 주의가 필요로 하다.

납세등록 신청은 간단하지만, 납세등록 말소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국세청장은 납세자 번호의 말소 신청에 대한 모든 서류가 완전히 접수된 일자로부터, 개인 사업자는 6개월, 법인일 경우 12개월 이내에 세무조사 시행 후 해당 말소 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한다.(국세기본법 제 2조 7항)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말소 신청 시에는 세무조사를 받고, 모든 체납사항이 완료된 후 말소 승인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유로 납세등록증은 그냥 두고 0 신고로 몇 년간 진행하여 세무서에서 직권 말소를 유도하는 이유일 것이다.

3) 부과세 과세등록증

위에 언급한 납세등록번호와 동일한 사유로 부가세 과세대상이거나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되고자 한다면 신청서와 아래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자진 신청해서 부가세 과세등록을 하여야 한다.

- 법인 설립 정관 (Akta Pendirian) / pdf파일
- 법인 납세등록증 (SKT Perusahaan) / pdf파일
- 법인 납세등록카드 (NPWP Perusahaan) / pdf파일
- 대표자 여권 (Paspur Direktur) / pdf파일
- 대표자 KITAS (KITAS Direktur) / pdf파일
- 대표자 개인 NPWP (NPWP Direktur) / pdf파일
- 대표자 3X4 증명사진 (Foto Direktur) / jpg파일
- 대표자 영문 주민등록등본 (Family Register) / pdf파일
- 사업자등록번호 및 사업허가서 (NIB & Izin Usaha) / pdf파일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Perjanjian Sewa Kantor) / pdf파일
- 임차료 원천세 납부증 (Bukti Setor PPh 4(2)) / pdf파일
- 사무실 입구 및 내부 사진 (Foto dari luar dan dalam ruang kantor) / jpg파일
- 회사 위치 구글맵 캡처 (Capture Lokasi Google Map) / jpg파일
- 최근년도 법인세 신고서 (SPT Tahunan Badan Terakhir) / pdf파일

납세등록은 신청 후 7일 이내 발급이 되지만, 부가세 과세등록은 구비서류도 복잡하고 대부분은 반드시 실사 후 발급이 되기 때문에 3주정도 소요된다. (세무서 별로 차이는 있는데 전자세금계산서 신청서 실사하는 경우도 있음)
따라서 매입세액을 공제 받고자 한다면 상기 소요 기간을 감안해서 미리 준비를 하여야 하겠다.

부가세 과세 등록 말소의 경우에도 세무조사가 진행되는데, “국세청장은 부가세 과세등록 말소 신청에 대한 모든 서류가 완전히 접수된 일자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세무조사 시행 후 해당 말소 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한다” (국세기본법 제2조 9항) 로 규정되어 있다.

부가세 과세등록을 한다고 해서 곧바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아니고, 이후 전자세금계산서 서명권자 등록 등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3. 세무신고

세무신고서는 크게는 기간 신고와 연간 신고로 두 종류가 있다. 세무신고서를 인니어로 Surat Pemberitahuan Pajak이라고 하고 줄여서 SPT라고 쓰는데 여기에 SPT Masa (기간신고)와 SPT Tahunan(연간신고)로 나눌 수 있고 세부적으로 SPT Masa PPh21/26, SPT Masa PPN 등 세목을 붙여서 갑근세 신고서, 부가세 신고서 등 각 세목별 신고서를 구분하고 있다.

1) 세무신고서에 대한 규정

“신고서는 인도네시아어와 라틴문자, 아랍숫자 및 루피아 화폐 단위를 사용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서명 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3조 1항)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외국어와 루피아 화폐가 아닌 화폐 단위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무부장관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에 대한 실행 규칙은 재무부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국세기본법 제 3조 1a항)

루피아가 아닌 다른 화폐로 통화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계연도 시작 3개월 이전에 승인을 완료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내년(2021)부터 화폐를 루피아에서 달러로 변경하고자 한다면 2020년 10월 이전에 승인을 받아야 2021년부터 적용할 수 있다.

세무 보고의 제출 기한은 다음과 같다.(국세기본법 제 3조 3항)

- 기간 신고서의 경우, 과세 기간 종료 후 최대 20일까지
- 개인 납세자의 소득세에 대한 연간 세금 신고서의 경우, 과세년도 종료 후 최대 3개월까지
- 법인 소득세에 대한 연간 법인세 신고서의 경우, 과세년도 종료 후 최대 4개월까지

기간 신고서의 경우 갑근세, 원천세 등의 경우 납부는 익월 10일까지이며, 신고는 20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부가세는 익월 말까지 납부 및 신고하여야 한다.

년간 신고의 경우에는 개인은 익년 3월말, 법인은 익년 4월말까지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단, 법인이 12월 결산 법인이 아니고 2월 결산법인이나 6월 결산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6월말과 10월말이내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연간 세무 신고의 경우에는 기한 내 제출을 할 수 없는 경우 “최대 2개월 연장 받을 수 있는데, 연장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세무서에 서면 또는 다른 방법으로 통지를 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3조 4항)

2) 지연 신고에 관한 벌과금

부가세 지연신고(미신고 포함)의 경우 IDR 500,000의 행정과태료가 부과되며, 기타 기간 신고의 경우에는 IDR 100,000, 개인 연간 소득세의 경우 IDR 100,000, 법인 연간 법인세의 경우 IDR 1,000,00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국세기본법 제 7조 1항)

그리고 아래의 경우에는 지연 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 개인 납세 의무자가 사망했을 경우
- 개인 납세 의무자가 더 이상 사업 활동이나 자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
- 외국인 개인 납세 의무자가 더 이상 인도네시아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 고정사업장(BUT)가 인도네시아 영내에서 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
- 더 이상 사업 활동을 하지 않지만 해당 규정에 의해 아직 청산되지 않는 법인 납세자의 경우
- 더 이상 지불/결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기관의 경우
- 재난을 당한 납세자의 경우 (이에 대한 규정은 재무부 장관 규정으로 정한다.)
- 재무부 장관 규정으로 정해지는 기타 납세자의 경우

3) 세무보고서 수정 신고

인도네시아 한국과 동일하게 자진신고 제도를 택하고 있고, 이미 제출된 세무 신고서를 수정할 수 있다. 단, 세무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능하다.

세무조사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수정신고가 가능하지만 납세자에게 유리한 수정사항으로 세무 신고서의 수정이 결손 또는 환급 신청에 해당할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수정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수정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없지만, 수정신고로 인해서 추가 납부할 세금이 있다면 종전까지는 해당일로부터 소급해서 납부시까지 월 2%의 지연납부이자 (행정 과태료)가 부과 되었지만 옴니버스법 제정으로 2020년 11월 2일부터는 (기준금리 + 5%) / 12 을 월 이자율로 한다. 지연 이자는 최대 48%까지 부과할 수 있다.

4) 세무 신고서 접수 방법

2018년 4월 이전까지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고서를 접수 또는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하였지만, 2018년 1월 23일 재무부장관령 9호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09 / PMK 03/2018) 로 전자신고 의무화 및 신고 간편화 규정이 공표되었는데 규정은 아래와 같다.

< 전자신고 의무화 및 신고 간편화 >

재무부 장관령 9호(Peraturan Menteri Keuangan No.09/PMK.03/018)

2018년 1월 23일 재무부장관령 9호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09/PMK.03 /2018) 발효되었다.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 09 / PMK.03 /2018



Mulai Tanggal 26 Januari 2018	SPT Masa PPh 25 Nihil	Tidak Perlu Lapor	Pasal 10 Ayat(4)
	SPT Masa PPh 25 Kurang Bayar	Tidak Perlu Lapor	Pasal 10 Ayat(3)
	SPT Masa PPh 21 Nihil	Tidak Perlu Lapor	Pasal 10 Ayat (2)
	SPT Masa PPh21 Nihil Masa Desember	Wajib Lapor	Pasal 10 Ayat (2a)
Mulai Tanggal 1 April 2018	SPT Masa PPh 21 Elektronik (e-SPT)	Wajib E-Filing	Pasal 8 Ayat (6)
	SPT Masa PPN (e-SPT)	Wajib E-Filing	Pasal 8 Ayat (7)

PPh25(법인세 중간 예납) 신고와 관련하여 변경전에는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납부 후 납부한 영수증으로 신고를 하거나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Nihil (0)으로 신고를 하여야 했었는데 2018년 1월 26일부터는 신고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또한 PPh21(갑근세)의 경우에도 0(Nihil)인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고 12월 신고분에 한해서만 신고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2018년 4월 1일부터는 PPh21 과 PPN의 경우 전자신고(E-Filing)가 의무화 되었다.

E-Filing (전자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EFIN (Electronic Filing Identification Number)등록을 하여야 하며, 2017년 12월 29일 발효된 국세청장령 32호 (Per 32 /PJ /2017) 4조 3항에 개인납세자 EFIN 등록과 4조 4항 법인납세자의 EFIN 등록과 관련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

E-FIN 등록 (개인 납세자) Per 32/PJ/2017 Pasal 4 Ayat 3

1. Permohonan diajukan langsung ke Kantor Pajak tidak boleh diwakilkan

2. Mengisi Formulir E-FIN
3. Menunjukkan Asli & Fotocopy Identitas
 - a. KTP (WNI)
 - b. KITAS/KITAP & Passport (WNA)
 - c. NPWP/SKT
4. Memberitahu alamat email aktif.

E-FIN 등록 (법인) PER 32/ PJ / 2017 Pasal 4 ayat 4

1. Permohonan diajukan oleh Pengurus Perusahaan
2. Mengisi Formulir E-FIN
3. Menunjukkan Asli & Fotocopy :
 - a. KTP (WNI)
 - b. KITAS/KITAP & Passport (WNA)
 - c. NPWP/SKT Pengurus
 - d. NPWP/SKT Perusahaan
4. Memberitahu alamat email aktif.
5. Surat Penunjukan Pengurus untuk mewakili Perusaha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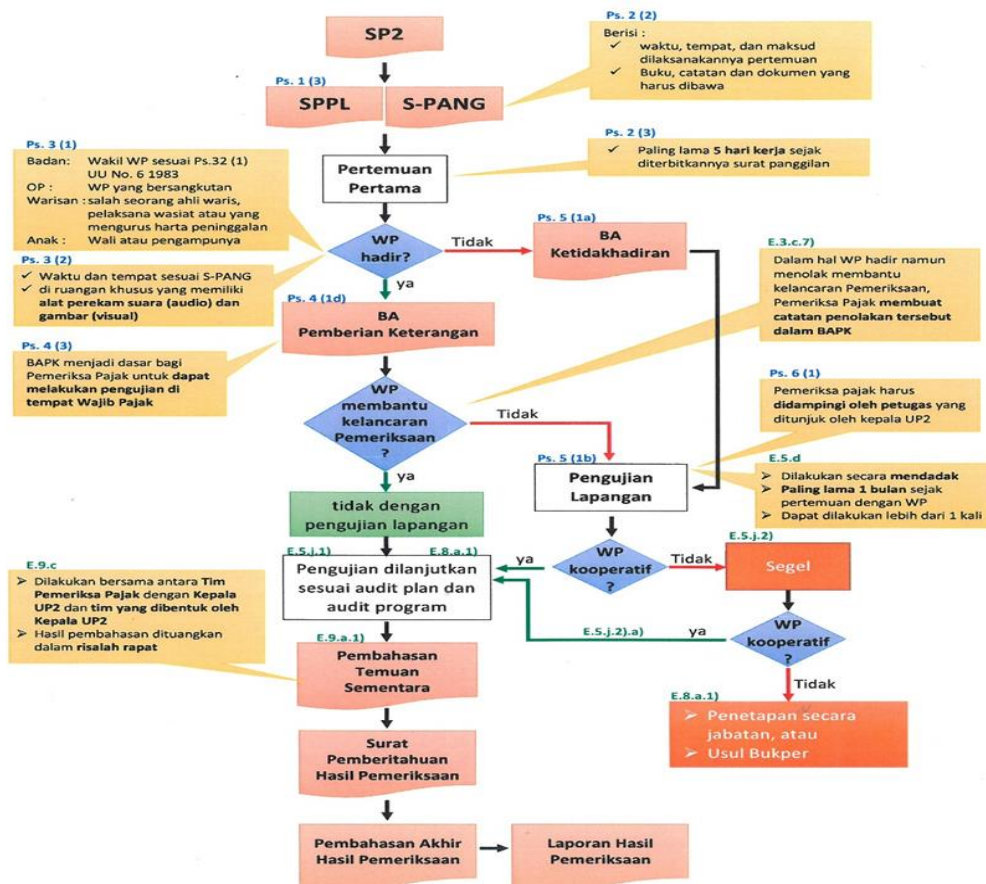
상기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본인이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분확인을 거친 후 EFIN을 발급받고 본인이 받았다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비대면 업무가 진행되는 바 관할세무서의 재량으로 Online 신청이 가능하다.

4. 세무조사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 29 조에 규정되어 있고 시행령으로는 국세청장령 7호 (Peraturan Direktur Jenderal Pajak nomor PER-07/PJ/2017) 및 국세청내규(SE-10/PJ/2017)에 규정되어 있다.

KEBIJAKAN PEMERIKSAAN LAPANGAN TAHUN 2017 (PER-07/PJ/2017 & SE-10/PJ/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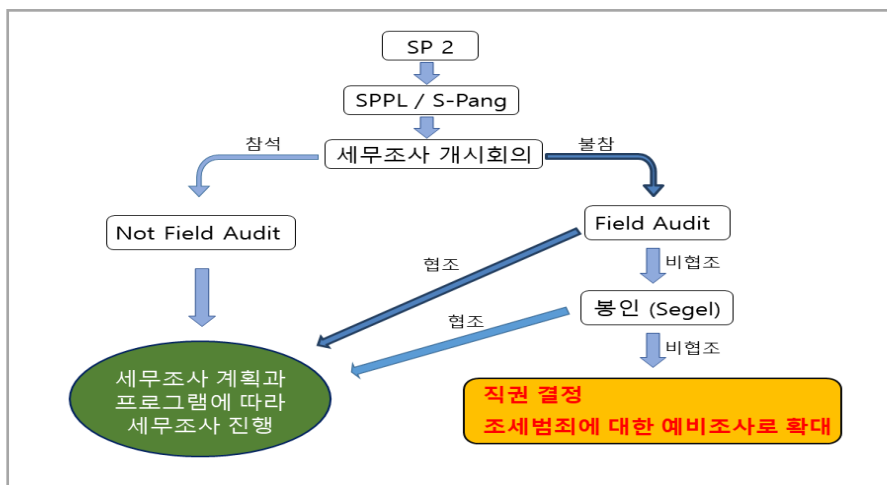
<세무조사 절차에 대한 시행령>

(국세청장령 7호 Peraturan Direktur Jenderal Pajak nomor PER-07/PJ /2017)
및 국세청내규(SE-10/PJ/2017)

세무조사를 받는 법인에게 관할세무서에서 대표자에게 소환장(Surat Panggilan)을 발급하여 이런 이런 자료를 준비해서 관할세무서로 출두하라는 소환(Panggilan) 통보를 받는데 과거에는 이러한 경우가 없어서 회사가 어떤 잘못을 하여 이러한 통지서를 받는지 의아해 하는 질문을 받곤 하였다. 또한 일자에 맞추어 세무서에 방문하면 비디오 촬영이나 오디오로 녹음을 한다고 의아해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런데 이는 2017년 4월 21일 발표한 국세청장령 7호/PJ/2017 (Peraturan Direktur Jenderal Pajak Nomor PER-07/PJ/2017)에 근거하여 모든 납세자에게 해당이 되는 사항이라 하겠다.

국세청장령 PER-07/PJ/2017과 국세청 내규 (SE-10/PJ/2017)의 취지는 보다 더 명확하고 투명한 세무 행정을 위한 목적이라고 하는데, 관련 규정을 근거로 세무조사 절차를 보면 아래와 같다.

< 세무조사 개시 절차>



SP2 는 Surat Perintah Pemeriksaan으로 세무조사 지시서로 세무서장이 세무조사팀에 이런이런 납세의무자에 세무조사를 하라는 통지서이며, 조사팀장은 SP2를 근거로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SPPL 과 S-Pang을 전달한다.

SPPL 은 Surat Pemberitahuan Pemeriksaan lapangan으로 세무조사 개시통지서라 하겠다. S-Pang은 Surat Panggilan으로 납세의무자 소환장이라 하겠다.

관련 규정을 보면 아래와 같다.

- (제 2 조 2항) 세무조사 개시회의에 대해서는 일정, 장소 및 요청자료 목록을 적시하게 규정되어 있다.
- (제 3 조 1항) 상기 2조에 언급 된 소환장에서 세무조사 개시회의는 반드시 아래 해당자가 참석해야 한다.
 - a. 법인(Badan)은 국세기본법 UU No.6 1983 제32조 1항에 언급된 것으로 회사는 경영진, 회사가 파산을 신청한 경우는 파산 관재인, 회사가 해산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청산 관재인
 - b. 개인(OP)는 개인납세의무자
 - c. 상속(Warisan)은 분리되지 않는 상속의 경우 상속인 중 1명, 유언장의 집행인
 - d. 미성년자(Anak)는 후견인 이다.
- (제 3 조 2항) 오디오 또는 비디오 기록 장치에 의해 문서화하여야 한다.
- (제 4 조 1항 D) 납세의무자는 세무조사 개시 회의 과정에서 소환장에 명시된 모든 요청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아래사항에 대해 설명하여야 한다.
 - 신분증 제시
 - 비즈니스 프로세스
 - 장부 및 문서화된 기록
 - 주요 고객과 공급처에 대한 정보
 - 특별한 거래
 - 세무조사관이 발견한 자료와 세무신고서 상의 자료 불일치에 대한 확인

< 세무조사 완료 절차 >



상기 절차에 의해서 세무조사가 완료된다.

5. 조세의 환급

인도네시아도 한국과 같이 납세자가 자진 신고제도로 초과 납부의 경우 환급이 가능하다.

법인세의 경우에는 중간 예납과 원천징수 등으로 인하여 환급이 자주 발생되며, 부가세의 경우에는 수출 기업, 초기 기계설비 등 자본재 투자기업 또는 국영기업에 납품하는 기업 등 부득이 매출세액과 상 계처리가 어려울 경우 환급이 발생되는데 세법에는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환급결정서를 발급한다.”(국세기본법 제 17 조)라고 규정되어 있어 환급 신청 시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것이 한국과 다른 점이라고 하겠다. 물론 아래와 같이 조기 환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조기환급도 가능하다.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국세 조기 환급에 관한 신 규정을 2018년 4월 12일 공포하였다. (재무부장관령 no.39 / PMK.03 / 2018). 이번 시행령은 새로운 규정은 아니고 기존 법령인 국세기본법 제 17 C 조의 특정 납세자(WP Kriteria Tertentu), 제 17 D 조의 특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납세자(WP Persyaratan Tertentu) 및 부가세법 제 9 조 4c 항의 낮은 위험률의 과세 대상 일반 과세자(Pengusaha Kena pajak Berisiko Rendah)에는 조기 환급 신청이 가능하며 환급 신청 후 1개월 이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재무부장관령 PMK No.71, PMK No. 74, PMK 198 등에 자격 조건 등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런 규정을 통합한 시행령으로 볼 수 있다.

인도네시아도 한국과 동일하게 자진 신고제이지만 한국의 경우 초과납부가 있는 경우 환급을 우선하고 이후에 세무당국이 필요로 한다면 감사를 하는 경우이지만 인도네시아는 초과납부가 있는 경우 환급을 해주기 위해서 세무당국에서 환급 결정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세무 조사 후 환급 진행이 일반적이라 하겠다.

그렇지만 상기 재무부장관령과 같이 일정 조건을 갖춘다면 선환급을 해 주는 것이 본 법령의 취지이다.

조세 환급은 조기환급과 일반환급으로 구분되며 조기환급제도는 이번 chart에서 언급하고 일반환급 즉 세무조사 후 환급은 다음 chart인 세무 절차에 대한 규정에 설명되어 있다.

<조기 환급과 일반 환급>

조기환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기본법 17C 조 : "특정 납세자"에 대한 선환급 • 국세기본법 17D 조 : "특정요건을 충족시키는 납세자"에 대한 선환급 • 부가세법 9조 4c 항 - "저위험율의 과세 대상 기업"
일반환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무조사 후 환급을 의미 • 국세기본법 제 17 B 조 : 완전한 환급신청서류를 접수한 일자로부터 12개월 이내 과세결정서(SKP)를 발급

조기 환급과 관련하여 우선 아래 시행령 발췌문을 참조하여 조기환급 대상인지 아닌지 우선 판단하여야 한다.

특정 납세자(WP Kriteria Tertentu) 및 낮은 위험률의 과세 대상 일반 과세자 (Pengusaha Kena pajak Berisiko Rendah)는 사전 승인 절차를 받아야 하지만, 특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납세자(WP Persyaratan Tertentu)는 승인 절차 없이 환급 신청을 진행하면 된다.

<세금 조기환급에 관한 규정(재무부장관령 no.39 / PMK.03 /2018) 설명>

제 3장 특정 납세자 (Wajib Pajak Kriteria Tertentu)

제 3 조

(2)항 특정 납세자는 국세청장에 의해 지정되며 다음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a. 세금신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였을 것
- b. 납기연장이나 분납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세목에서 체납이 없을 것
- c. 공인회계사 또는 정부감사기구에 의한 감사보고서상 3년간 연속하여 적정의견을 받았을 것
- d. 최근 5년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조세 범칙사실이 없을 것

(3)항 (2) a 항에서 언급한 세금신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였다 함은 다음을 말한다.

- a. 최근 3년간의 연 세금신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
- b. 최근 과세연도의 1월부터 11월까지의 월 세금신고서를 제출
- c. 월 세금신고서 제출 지연이 있는 경우 각 세목에 있어 3개 기간 미만이어야 하고 연속되어서는 아니되며 그 다음 기간에 월 세금신고서 제출 기한을 넘겨서는 안된다.

제 4 조

(1)항 납세자는 1월 10일까지 세무서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2)항 국세청장은 기준 충족 여부를 검증하고 다음을 발급한다.

- a. 기준 충족 시 특정 납세자 지정 결정서
- b. 기준 미 충족 시 신청 거부 통보서

(3)항 지정 결정서 또는 거부 통보서는 접수된 때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된다.

제 5 조

(1)항 특정 납세자로의 지정 결정은 지정된 날부터 지정 철회되는 때까지 유효하다.

(2)항 다음의 경우 지정 결정이 철회된다

- a. 연 세금신고서 제출 지연
- b. 한 세목의 월 세금신고서를 2기간 연속하여 제출 지연
- c. 한 세목의 월 세금신고서를 1역년 중 3기간 제출 지연
- d. 조세 범칙 예비조사 또는 수사의 진행

제 6 조

(1)항 특정 납세자는 세금신고서에 조기 환급 란을 채우는 방법으로 조기 환급을 신청한다.

(2)항 위 신청에 근거하여 국세청장은 먼저 다음의 형식요건 검증을 실시한다.

- a. 특정 납세자 지정이 계속 유효함
- b. 현재 조세 범칙 예비조사 또는 수사를 받고 있지 않음
- c. 한 세목의 월 세금신고서를 2기간 연속하여 제출 지연하지 않음
- d. 한 세목의 월 세금신고서를 1역년 중 3기간 제출 지연하지 않음
- e. 연 세금신고서를 제출 지연하지 않음

(3)항 특정 납세자가 위 형식요건을 만족한 경우 국세청장은 다음의 후속 검증을 실시한다.

- a. 세금 계산과 기재의 정확성
- b. 공제된 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이 신청 납세자 및 원천징수의무자의 세금신고서에 기 보고되어 있는지
- c. 공제된 매입세액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월 신고서에 기 보고되어 있는지
- d. 자가징수 매입세액이 적정히 납부되었는지

제 7 조

- (1)항 국세청장은 형식요건 검증 결과 요건을 충족하고 후속 검증 결과 세금 초과 납부액이 있는 경우 조기 환급 결정서를 발급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그러한 사실을 통보한다
- (2)항 위 조기 환급 결정서 또는 통보는 신청이 접수된 때로부터
- a. 소득세는 3개월 이내
 - b. 부가가치세는 1개월 이내 발급된다
- (3)항 조기 환급 결정서의 환급액과 조기 환급 신청시의 환급신청액이 다른 경우 그 차이에 대해 별도로 다시 조기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세금신고서를 수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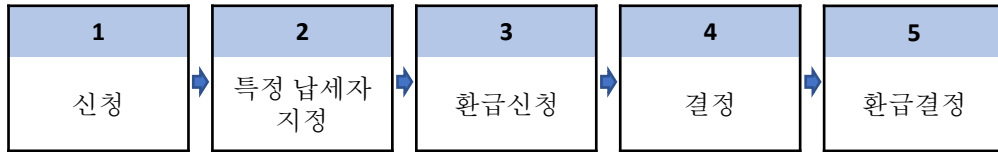
이상 특정 납세자에 대한 선환급 규정을 언급하였는데 아래 도표로 요약하였다.

국세기본법 17C 조 - 특정 납세자에 대한 선환급 Wajib Pajak Kriteria Tertentu

▪ 대상

1. 세금신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였을 것
 - 최근 3년간의 연 세금신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
 - 최근 과세연도의 1월부터 11월까지의 월 세금신고서를 제출
 - 월 세금신고서 제출 지연이 있는 경우 각 세목에 있어 3개 기간 미만이어야 하고 연속되어서는 아니되며 그 다음 기간에 월 세금신고서 제출 기한을 넘겨서는 안된다.
2. 납기연장이나 분납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세목에서 체납이 없을 것
3. 공인회계사 또는 정부감사기구에 의한 감사보고서상 3년간 연속하여 적정 의견을 받았을 것
4. 최근 5년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조세 범칙사실이 없을 것

▪ 절차



1. 신청 : 1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

2. 특정 납세자 지정 : 기준 충족 시 1개월 이내 특정 납세자 지정 결정서 통보

3. 환급신청

4. 검증

- a. 세금 계산과 기재의 정확성
- b. 공제된 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이 신청 납세자 및 원천징수의무자의 세금 신고서에 기 보고 되어 있는지 여부
- c. 공제된 매입세입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월 신고서에 기 보고되어 있는지 여부
- d. 자가징수 매입세액 납부의 적정성

5. 환급결정 : 소득세는 3개월 이내, 부가세는 1개월 이내 환급결정서 통보

제 4장 특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납세자(WP Persyaratan Tertentu)

제 9 조

(1)항 특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납세자(WP Persyaratan Tertentu)는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초과 납부액에 대해 조기 환급을 받을 수 있다.

(2)항 특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납세자(WP Persyaratan Tertentu)란

1. 사업활동 또는 자유직업활동을 하지 않는 개인으로써 연 소득세신고 시 환급을 신청한 경우

2. 사업활동 또는 자유직업활동을 하는 개인으로써 연 소득세신고 시 1억 루피아 이하의 환급을 신청한 경우
3. 법인으로써 연 소득세신고 시 10억 루피아 이하의 환급을 신청한 경우
4.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서 월 부가가치세신고 시 10억 루피아 이하의 환급을 신청한 경우

제 10 조

- (1)항 특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납세자(WP Persyaratan Tertentu)는 세금신고서에 조기 환급 란을 채우는 방법으로 조기 환급을 신청한다.
- (2)항 (1)항의 신청에 근거하여 국세청장은 다음을 검증한다.
 - a. 세금 계산과 기재의 정확성
 - b. 공제된 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이 신청 납세자 및 원천징수의무자의 세금신고서에 기 보고되어 있는지
 - c. 공제된 매입세액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월 신고서에 기 보고되어 있는지 또는 자가징수 매입세액이 적정히 납부되었는지

제 11 조

- (1)항 국세청장은 위 검증 결과 세금 초과 납부액이 있는 경우 조기 환급 결정서를 발급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납세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통보한다
- (2)항 위 조기 환급 결정서 또는 통보는 신청이 접수된 때로부터
 - a. 개인의 소득세 조기 환급 신청에 대해서는 15 영업일 이내
 - b. 법인의 소득세 조기 환급 신청에 대해서는 1개월 이내
 - c.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신청에 대해서는 1개월 이내 발급된다.
- (3)항 조기 환급 결정서의 환급액과 조기 환급 신청시의 환급신청액이 다른 경우 그 차이에 대해 별도로 다시 조기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납세자가 이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세금신고서를 수정할 수 있다.

특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납세자 관련 규정을 설명하였는데,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국세기본법 17 D조 - 특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납세자 (WP Persyaratan Tertentu)											
■ 대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활동 또는 자유직업활동을 하지 않은 개인으로써 연 소득세신고 시 환급을 신청한 경우 2. 사업활동 또는 자유직업활동을 하는 개인으로써 연 소득세신고 시 1억 루피아 이하의 환급을 신청한 경우 3. 법인으로써 연 소득세신고 시 10억 루피아 이하의 환급을 신청한 경우 4.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서 월 부가가치세신고 시 10억 루피아 이하의 환급을 신청한 경우 										
■ 절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 width: 20%;">환급신청</td> <td>· 특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납세자(WP Persyaratan Tertentu)는 세금 신고서에 조기환급란을 채우는 방법으로 신청</td> </tr>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검증</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금계산과 기재의 정확성 · 공제된 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이 신청 납세자 및 원천징수 의무자의 세금신고서에 기 보고되어 있는지 여부 · 공제된 매입세액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월 신고서에 기 보고되어 있는지 또는 자가징수 매입세액이 적정히 납부되었는지 여부 </td> </tr>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환급 결정서</td> <td>· 개인소득세는 15일 이내, 법인세와 부가세는 1개월 이내</td> </tr> </table>	환급신청	· 특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납세자(WP Persyaratan Tertentu)는 세금 신고서에 조기환급란을 채우는 방법으로 신청	↓		검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금계산과 기재의 정확성 · 공제된 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이 신청 납세자 및 원천징수 의무자의 세금신고서에 기 보고되어 있는지 여부 · 공제된 매입세액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월 신고서에 기 보고되어 있는지 또는 자가징수 매입세액이 적정히 납부되었는지 여부 	↓		환급 결정서	· 개인소득세는 15일 이내, 법인세와 부가세는 1개월 이내
환급신청	· 특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납세자(WP Persyaratan Tertentu)는 세금 신고서에 조기환급란을 채우는 방법으로 신청										
↓											
검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금계산과 기재의 정확성 · 공제된 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이 신청 납세자 및 원천징수 의무자의 세금신고서에 기 보고되어 있는지 여부 · 공제된 매입세액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월 신고서에 기 보고되어 있는지 또는 자가징수 매입세액이 적정히 납부되었는지 여부 										
↓											
환급 결정서	· 개인소득세는 15일 이내, 법인세와 부가세는 1개월 이내										

제 5장 낮은 위험률의 과세 대상 일반 과세자 (Pengusaha Kena pajak Berisiko Rendah)

제 13 조

(1)항 특정 사업활동을 수행하며 낮은 위험률의 과세 대상 일반과세자로 지정된 일반 과세자는 매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초과 납부액에 대한 조기 환급을 받을 수 있다.

(2)항 낮은 위험률의 과세 대상 일반과세자는 다음 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 a. 주식이 인도네시아 주식시장(bursa efek di Indonesia)에서 거래될 것
- b. 주식 대부분이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에 의해 직접 소유될 것
- c. 재무부령이 정하는 관세 주요 파트너(Mitra Utama Kepabeanan)로 지정된 일반 과세자
- d. 재무부령이 정하는 Operator Ekonomi Bersertifikat (Authorized Economic Operator)로 지정된 일반과세자
- e. 위 a.~d.에 규정된 일반과세자 이외의 생산, 제조업자로서 생산 활동을 위한 장소를 보유하고있고 최근 12개월동안 월 부가가치세신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였을 것
- f.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신고시 10억 루피아 이하의 환급을 신청한 경우

(3)항 (1)항의 특정 사업 활동이란 다음을 말하며 이를 충족하여야 한다.

- a. 과세대상 유형(Berwujud)의 재화 수출
- b.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자에게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
- c. 부가가치세가 거래징수되지 않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
- d. 과세대상 무형의 재화 수출
- e. 과세대상 용역 수출

(3)항 (1)항의 특정 사업 활동이란 다음을 말하며 이를 충족하여야 한다.

- a. 과세대상 유형(Berwujud)의 재화 수출
- b.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자에게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
- c. 부가가치세가 거래징수되지 않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
- d. 과세대상 무형의 재화 수출
- e. 과세대상 용역 수출

(4)항 (1)항의 낮은 위험률의 과세대상 일반과세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아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 a. 부가가치세 대상 과세 대상자는 언급된 (2항) a에서 e까지 부가세 목적을 위한 과세대상자이다.
- b. 지난 12개월간 부가세 신고가 적시한 과세대상자. (미신고 또는 지연신고가 없어야 함)
- c. 조세 범칙 예비조사 또는 수사를 받고 있지 않은 과세 대상자

제 14 조

(1)항 낮은 위험률의 과세 대상 일반과세자로 지정되기 위해 세무서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4)항 국세청장은 기준 충족 여부를 검증하고 다음을 발급한다.

- a. 기준 충족 시 낮은 위험률의 과세 대상 일반과세자 지정 결정서
- b. 기준 미 충족 시 거부 통보서

(5)항 지정 결정서 또는 거부 통보서는 접수된 때로부터 15 영업일 이내 발급된다.

(8)항 13 조 (2).f항의 특정 납세자 요건을 충족하는 일반과세자는 13 조 4 c항, d항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낮은 위험률의 과세 대상 일반과세자로 취급되며, 낮은 위험률의 과세 대상 일반과세자 지정 신청을 할 필요가 없고 국세청장은 이에 대한 지정 결정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제 15 조

- (1)항 낮은 위험률의 과세 대상 일반과세자로의 지정 결정은 지정된 날부터 지정 철회되는 때까지 유효하다.
- (2)항 다음의 경우 지정 결정이 철회된다.
- a. 조세 범칙 예비조사 또는 수사의 진행
 - b.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조세 범칙사실이 있는 경우
 - c. 낮은 위험률의 과세 대상 일반과세자 기준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제 16 조

- (2)항 낮은 위험률의 과세 대상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월 세금신고서에 조기 환급란을 채우는 방법으로 조기 환급을 신청한다.
- (3)항 위 신청에 근거하여 국세청장은 먼저 다음의 형식요건 검증을 실시한다.
- a. 13조 2 f 항을 제외하고는 낮은 위험률의 과세 대상 일반과세자 지정이 계속 유효하다.
 - b. 현재 조세 범칙 예비조사 또는 수사를 받고 있지 않아야 한다.
 - c. 최근 5년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조세 범칙사실이 없어야 한다.
- (5)항 낮은 위험률의 과세 대상 일반과세자가 위 형식요건을 만족한 경우 국세청장은 다음의 후속 검증을 실시한다.
- a. 13조 3항의 특정 사업활동 요건을 충족하는지
 - b. 세금 계산과 기재의 정확성
 - c. 공제된 매입세액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월 신고서에 기 보고되어 있는지
 - d. 자가징수 매입세액이 적정히 납부되었는지

제 17 조

조기 환급 결정서 발급

- (1) 국세청장은 형식요건 검증 결과 요건을 충족하고 후속 검증 결과 세금 초과 납부액이 있는 경우 조기 환급 결정서를 발급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그러한 사실을 통보한다.
- (2) 위 조기 환급 결정서 또는 통보는 신청이 접수된 때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된다.
- (3) 조기 환급 결정서의 환급액과 조기 환급 신청시의 환급신청액이 다른 경우 그 차이에 대해 별도로 다시 조기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월 부가가치세 세금신고서를 수정할 수 있다.

낮은 위험률의 과세 대상 일반과세자와 관련한 규정을 언급하였는데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부가세법 9조 4c항 - 낮은 위험률의 과세 대상 일반 과세자 (Pengusaha kena pajak Berisiko Renda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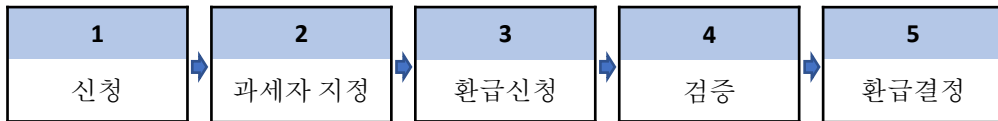
▪ 대상

1. 주식이 인도네시아 주식시장(bursa efek di indonesia)에서 거래될 것
2. 주식 대부분이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에 의해 직접 소유될 것
3. 재무부령이 정하는 관세 주요 파트너(Mitra Utama Kepabeanan)로 지정된 일반 과세자
4. 재무부령이 정하는 Operator Ekonomi Bersertifikat(Authorized Economic Operator)로 지정된 일반과세자
5. 위 1~4에 규정된 일반과세자 이외의 생산, 제조업자로서 생산활동을 위한 장소를 보유하고 있고 최근 12개월 동안 월 부가세 신고서를 기한내 제출하였을 것
6. 부가세 일반과세자로서 부가세 신고시 10억 루피아 이하의 환급을 신청한 경우

■ 요구조건

1. 부가세 대상 과세 대상자에서 언급된 (2항) a에서 e까지 부가세 목적을 위한 과세 대상자이다.
2. 지난 12개월간 부가세 신고가 적시한 과세대상자 (미신고 또는 지연신고가 없어야 함)
3. 조세 범칙 예비조사 또는 수사를 받고 있지 않은 과세 대상자
4. 최근 5년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조세 범칙사실이 없는 과세대상자

■ 절차



1. 신청 : 관할세무서에 신청
2. 낮은 위험률의 과세 대상 일반과세자 지정 : 기준 충족 시 15일 이내 통보
3. 환급신청
4. 검증 : a. 세금 계산과 기재의 정확성
b. 공제된 매입세액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월 신고서에 기 보고되어 있는지 여부
c. 자가징수 매입세액이 적정히 납부되었는지 여부
5. 환급결정 : 부가세는 1개월 이내 환급결정서 통보

<특정 납세자 및 저위험 일반 과세자 지정 철회>

지정 철회 대상 행위	특정 납세자	저위험 일반 과세자
1. 지연신고 - 연간 세금신고서를 제출 지연 - 월 세금신고서를 1역년 중 3기간 제출 지연 - 월 세금신고서를 2기간 연속하여 제출 지연	지정철회	
2. 조세 범칙 예비조사 또는 수사 진행중	지정철회	지정철회
3. 조세 범칙 사실에 대한 확정 판결		지정철회
4. 낮은 위험률의 과세 대상 일반 과세자 대상 취소 a. 상장 기업 취소 b. 주식대부분이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에 의해 소유가 취소 c. Mitra Utama Kepabeanan 취소 d. Operator Ekonomi Bersertifikat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취소 e. 위 a.~d. 에 규정된 일반과세자 이외의 생산, 제조업자로 생산활동을 위한 장소가 없거나 최근 12개월동안 월 부가 가치세 신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음		지정철회

제 6장 특별 조항**제 19 조**

(1)항 특정 납세자 또는 특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납세자가 낮은 위험률의 과세 대상 일반과세자에도 해당되는 경우 낮은 위험률의 과세 대상 일반과세자에 관한 조항이 우선 적용된다

(2)항 특정 납세자, 특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납세자, 낮은 위험률의 과세 대상 일반 과세자가 초과 납부 상태의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조기 환급 또는 일반 환급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처리 된다.(세무조사 실시 후 환급액이 있는 경우에 과다납부 결정서 발급)

(3)항 특정 납세자, 특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납세자, 낮은 위험률의 과세 대상 일반 과세자가 초과 납부 상태의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였다더라도 국세기본법 제 17B에 따른 일반 환급 신청을 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7B에 따라 처리된다.
(환급 신청에 대해 세무조사 실시 후 신청서 제출시부터 12개월내 세액결정서 발급)

(4)항 조기 환급 신청에 대한 검증 결과 조기 환급 결정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7B에 따라 처리된다.

제 21 조

국세청장은 기 조기 환급을 받은 특정 납세자, 특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납세자, 낮은 위험률의 과세 대상 일반과세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세액결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 7장 경과규정

제 23 조

(1)항 동 재무부장관령 시행 전에 아직 특정 납세자로 지정되지 않은 납세자는 동 재무부장관령이 시행된 때부터 3개월 이내 특정 납세자 지정 신청을 제출할 수 있고, 신청서가 접수된 때부터 1개월 이내 특정 기준 납세자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2)항 동 재무부령 시행 시 기존의 특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납세자와 낮은 위험률의 과세 대상 일반과세자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동 재무부령이 시행된 때부터 1개월 이내 재지정을 통보한다.

(3)항 동 재무부령 시행 시 아직 종결되지 않은 특정 납세자, 특정한 요건을 충족시키지는 납세자, 낮은 위험률의 과세 대상 일반과세자의 조기 환급 신청에 대한 처리는 종전의 규정들에 따르며, 종전 규정들에 근거한 집행 결정은 동 재무부령에 반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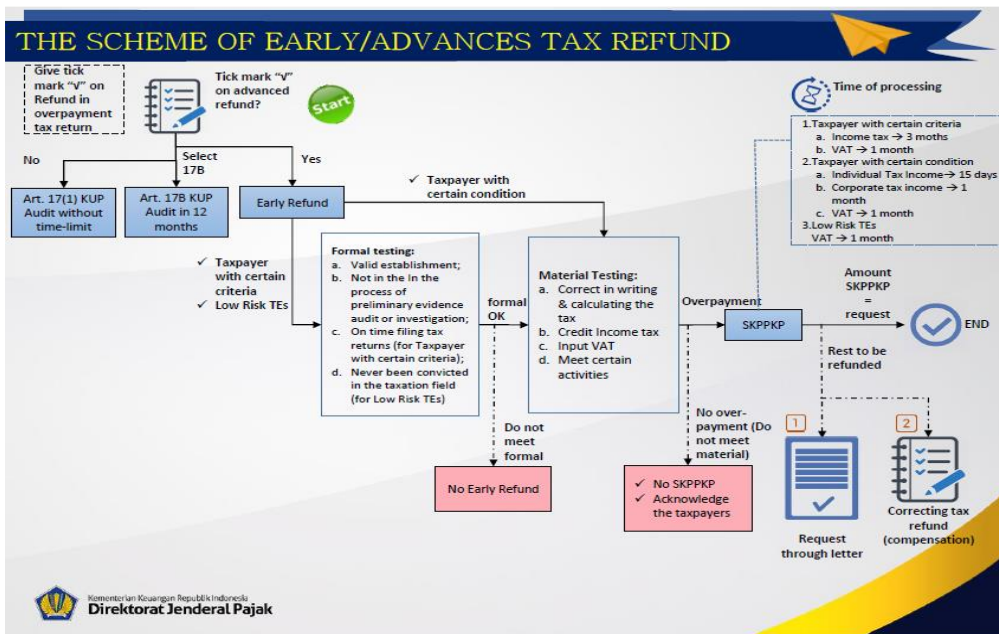
제 8장 종결

제 25 조

동 재무부령은 공포일에 발효한다.

공포일 2018년 4월 12일 <끝>

상기 규정과 관련한 조기 환급 요약 도표는 다음과 같다.



추가로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지속되어 재무부장관령 86호를 규정하여, 세제 감면 및 조기 환급을 지원하고 있다.

< 재무부장관령 86호 (PMK No.86 / Tahun 2020)에 대한 설명 >

인니 정부는 코로나 19관련 조세 혜택과 관련하여 여러 혜택을 내 놓았는데, 환급과 관련하여 위에 언급한 저 위험율의 과세 대상 기업이 아니더라도 아래에 해당이 된다면 부가세법 9조 4c 에 해당이 되어 조기 환급을 받을 수 있다.

○ 부가가치세 세제 혜택 (Insentif PPN)

Kode KLU(klasifikasi Lapangan Usaha) Lapmiran huruf P 에 해당되는 업종, KITE 로 지정된 회사, 보세구역 허가를 받은 회사로서 환급액이 50억 루피아를 초과하지 않으면 월별 부가세 신고서에 환급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면 별도 신청없이 부가세법 9조 4c 낮은 위험율의 과세 대상 기업과 같이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 적용 기간은 2020년 4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6. 이의 신청

이의 신청을 인니어로 *Keberatan* 이라고 하는데 납세자는 아래의 경우에 국세청장에게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25조 1항)

- a. 추징 결정서(SKPKB)
- b. 추가 추징 결정서 (SKPKBT)
- c. 영세 결정서 (SKPN)
- d. 환급 결정서 (SKPLB)
- e. 조세법 규정에 의거하여 제 삼자에 의해 징수 또는 공제 당한 경우

결국 관할세무서에서 결정 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국세청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 업무는 관할세무서(Kantor Pelayanan Pajak (KPP))의 상위 기관인 우리나라로 보면 지방국세청인 Kantor Wilayah (Kanwil)에서 담당을 한다.

이의 신청서는 인도네시아어로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납세 의무자가 산출한 미납세금 총액, 공제/징수한 세금 총액, 또는 손실 총액을 계산의 근거가 된 사유를 함께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의신청은 위에 언급한 과세 결정서(SKPK)들의 발송 일자 또는 세금의 징수/공제 일자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접수하여야 하고, 관할 세무서의 세무조사 후 납세자가 동의한 만큼의 금액은 이의 신청 전에 납부를 하여야 한다.

이의 신청이란 관할세무서에서 세무조사 후 세무서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 다툼 있는 것(납세자가 동의하지 않는 사항)으로 다툼의 여지가 없는 즉, 동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납부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세무조사에서 언급하였지만, 세무조사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Surat tanggapan (소명서)를 제출하고, 세무조사 최종 결과 회의 (Berta acara hasil Pemeriksaan) 후 회의록 서명 시 이의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Tidak setuju)는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의 신청 후 이의 신청서를 받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해 이의 신청서 접수증이나, 우편으로 발송했을 경우 서류 발송증, 또는 재무부 장관 규정에 의해 정해진 기타 방법을 통해 접수 할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는 접수/발송 증명 서류 등을 보관하여야 한다.

접수증이 중요한 사유는 위에 언급한 접수일 기한(관할세무서 결정서 발송일부터 3개월) 입증뿐만 아니라 이의 신청서의 접수일자로부터 최장 12개월 이내에 접수된 이의 신청에 대한 국세청 답변 기한이기도 하다. 국세청장은 최장 12개월 이내에 접수된 이의 신청에 대해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구된 이의 신청은 받아들여진 것으로 간주한다. (국세기본법 제26조 5항)

필자의 경험으로 여러 차례 조세법원에 불복청구를 한 바 있는데 위와 같이 이의 신청을 접수하여 접수증을 받은 후 1년이 훨씬 지난 후 기각결정을 받을 경우 조세법원에서 대부분 승소하였다.

이런 경우 복잡하게 추정 세액에 대한 세부 내역을 따지기 보다는 국세기본법 제 26조 5항을 근거로 납세자가 접수 후 받은 접수증으로 충분하다고 하겠다.

이의신청시 납세자가 동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납부를 하여야 하지만, 이의를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지만 이의 신청이 거부 되거나 부분 승소할 경우, 해당 납세자 에게는 이의 신청 결정서의 추정 세금에서 이의 신청을 하기 전 납부한 세금을 차감한 세금 총액의 50%에 해당하는 행정 벌과금이 부과된다.

단 항소 결정서(PB)를 제출할 경우에는 벌과금 50%는 부과되지 않는다.(국세기본법 25조10항)

결국 이의신청한 사항에 대한 세금은 납부하지 않고 이의 신청이 가능하지만 거부 (tolak)되거나 부분 승소할 경우에는 미 납부 세금과 미납부세금의 50%의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물론 거부될 경우 다시 조세심판 청구를 하기 때문에 가산세는 납부하지 않지만, 조세법원에서 패소하게 되면 가산세가 100%가 되기 때문에 이의 신청 시 원금은 납부를 하고 이의 신청하는 것이 가산세 부담도 줄고, 향후 승소시에는 종전까지는 납부세금에 월 2% (최대 48%)의 이자를 돌려 받을 수 있었으나 2020년 11월 2일 옵니버스법에는 재무부장관이 정한 월 이자율로 변경되었고, 절차 등은 별도 시행령이 공포될 예정에 있다.

7. 조세심판 (항소)

납세자는 이의 신청 결정서(Surat Keputusan Keberatan / SKK)에 대하여 오직 조세 심판소(badan peradilan pajak)를 통해서만 항소를 할 수 있고 반드시 이의실정결정서를 받은 일자로부터 3개월 이내에 명확한 사유와 함께 인도네시아어로 된 서면으로 접수하여야 하고 이의 신청 결정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항소를 청구하는 시점까지 남아 있는 미납세금은 항소 결정서가 발급되어지기 전까지는 미납세금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국세기본법 27 조 5c항) 결국에 세무당국과 납세자간 불복이 있어서 불복청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정세금은 조세심판 확정까지는 미납세금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지만, 패소시에는 미납세액 총액에 100%에 해당하는 행정벌과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8. 이자, 과태료, 벌과금의 감면 및 면제

납부지연 이자와 벌과금에 대한 면제 또는 감면 제도에 대해서 모순되는 부분이 법에서 이자, 과태료, 벌과금 규정을 만들어 놓고 다시 면제 규정을 둔다는 것에 대해 의아해 하는데, 아래 사항에 대해서 감면 또는 면제가 가능하다.

국세청장은 직권 또는 납세자의 요청에 의해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 a. 조세 법 규정에 의해 부과된 이자, 벌과금, 인상 등 행정 과태료 중 부지중의 잘못이나 본인의 잘못이 아닌 다른 이유로 인해 부과된 행정 과태료의 감면 및 면제
- b. 잘못된 조세 결정서(SKP)의 감면 또는 면제
- c. 조세 고지서(STP)가 잘못된 경우 해당 고지서에 명시된 금액의 감면 또는 취소
- d. 다음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시행한 세무 감사 결과 또는 과세 결정서(SKP)의 취소, 감사 결과 보고서 통지 및 납세자와 감사 결과 최종 합의

국세청장은 상기 명시된 요청이 접수된 일자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접수된 요청에 대한 답변을 하여야 하며, 6개월의 기한 내에 답변이 없을 경우에는 납세자의 요청이 인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위에 언급한 규정에서 b, c, d 는 납득이 가지만 a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부지중의 잘못이나 잘못이 아닌 (kekhilafan Wajib Pajak atau bukan karena kesalahannya) 라는 문구에 대해서는 쉽게 납득이 안되겠지만 성실 납세자이고 원금은 성실히 납부를 하였으나 벌과금에 대해서 납세가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세무당국의 권한으로 벌과금에 대해서 일부 감면 또는 전액 면제 가능하다는 법적 취지로 이해하면 되겠다.

II

실무편



1. 자본금과 세부 ISSUE

외투법인(PMA)의 경우 주식회사(PT) 형태로만 설립이 가능한데 인도네시아 주식회사는 수권자본제도로 총 발행할 주식수를 설립 정관에 기재하게 된다.

수권자본(Modal Dasar)제도란 주식회사에서 있어서 회사 설립 시 설립정관에 회사가 발행할 총 주식수 (수권주식총수) 를 기재하고 이렇게 기재된 수권주식 총수 중 주주가 일부만 납입하여도 회사가 설립되고 나머지 주식에 대해서는 회사의 필요에 따라 증자 형태로 자본 조달하는 제도를 말한다.

다시 말해, 수권 자본은 회사 설립시 총발행할 주식을 뜻하며, 납입자본(Modal Setor)는 말 그대로 실제 납입한(회사에 입금한) 자본금을 의미한다.

인도네시아 주식회사법상 최초 납입자본금(Modal Setor)은 수권자본(Modal Dasar)의 25%이상 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25%이상이므로 50%든 100%든 관계 없다 최소 25%이상이면 가능하다.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인도네시아의 경우 납입자본금을 예탁하지 않더라도 법인 설립이 되지만, 회계처리상은 납입을 하지 않더라도 정관에 등록된 납입자본금을 자본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 회계처리 및 세무 신고되는 자본금은 반드시 정관상 납입자본금을 기재하여야 하는데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납입을 하지 않아도 법인이 설립되므로 한국의 투자자가 이해하는 납입자본금과 정관상 납입자본금의 차이로 인하여 낭패를 보는 사례가 자주 발생되었다.

<사례 1>

한국에 모기업은 상장회사로 인니에 투자한 회사의 재무제표를 연결하여 공시하는 기업인데, 인니 회사의 정관상 수권자본금은 20,000,000불이고 납입자본금도 20,000,000불로 설립되었다. 한국 모기업에서 그 해 10,000,000불만 송금하였다.

한국 모기업의 입장은 한국에서는 투자유가증권으로 10,000,000불만 회계처리하였고 인니 투자회사도 자본금이 10,000,000불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자본금으로 10,000,000불만 송금하였기 때문인데, 인니 법인은 정관상에 20,000,000불이 납입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20,000,000불을 자본금으로 처리하여야 하고 입금 되지 않은 10,000,000불은 주주대여금 등으로 처리하여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감사인은 한정 의견을 줄 수 밖에 없고 세무상으로도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었다.

세무상 20,000,000불이 정관상 납입자본금으로 되어 있으므로 실제 납입한 10,000,000불만 자본금으로 처리한다면 10,000,000불에 대해서 세무당국의 입장은 주주가 배당금으로 가져 갔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어떻게 보면 사소한 부분일 수 있지만 <사례1>과 같은 유사 사례는 많은 신설 회사들에 발생되고 있다.

<사례 2>

정관상 납입자본금이 1,000,000불인 기업이 있는데 당해년도에 납입을 하지 못하고 수년에 걸쳐서 납입하였는데 세무당국은 별도 거래로 인정하여 매출로 과세한 사례인데 이의신청에서 받아들여져 해결은 되었지만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감.

앞에서 언급을 하였듯이 자본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다. 그렇지만 자본금 납입이 되지 않더라도 법인 설립이 되기 때문에 미 납입 자본금에 대한 인식 차이로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하여야 한다.

2. 주식거래(주주변경)에 관한 인니 세법

제목을 주식거래에 관한 인니 세법이라고 하였지만 주주변경과 같은 맥락으로 매도자가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매수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로 하다.

한국 투자자(비거주자)가 인도네시아의 비상장 주식을 인수할 경우 또는 투자자간 지분 변경시에 매도인이 비거주자라면 매수인이 매매금액의 5%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매수인도 비거주자이면 해당 법인에서 5%의 원천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어떻게 보면 납득이 되지 않는 규정일 수 있으나 인도네시아 세무 당국의 경우에는 매도자가 거주자의 경우에는 양도차액에 대해서 매도자가 신고를 하지만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과세할 방법이 없으므로 매수인 또는 해당 법인에서 납부, 신고 의무를 두고 있는 것이다.

물론 비거주자의 경우 인도네시아와 비거주자의 국가간 조세협약이 맺어져 있으면 조세협약이 우선하며, 한국과 인니 조세협약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한국에서 과세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매도자는 한국의 관할세무서에서 Form DGT (또는 COR) 를 거래일 이전일자로 받아 제출을 하여야 조세협약이 적용될 수 있다.

(Form DGT는 별도장에 설명함)

<사례 1>

신설 법인인 T 법인의 주주는 한국거주자 A씨 USD 300,000, B씨 USD 100,000, C씨 USD 100,000로 법인이 설립되었다. 자본금 납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C씨가 투자를 하지 못하겠다고 빠졌고, D씨로 변경되었고, 이후 D씨도 빠지면서, 결국 A씨가 인수하게 되었다. 법인 정관은 최초 A씨 USD 300,000, B씨 USD 100,000, C씨 USD 100,000 였고 이후 A씨 USD 300,000, B씨 USD 100,000, D씨 USD 100,000 로 변경되었고 다시 A씨 USD 400,000, B씨 USD 100,000로 되었다.

T법인과 A씨의 경우 한국식으로 양도차액이 없었으므로 납부 세금이 없을 것으로 단정하였으나 주주가 모두 비거주자였기에 이후 매매 금액에 5%씩 총 USD 15,000이 과세된 사례이다.

매입자가 누구냐는 의미가 없고 매도자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그리고 매도하는 법인이 상장법인인지 비상장법인지에 따라 적용 세율 등이 다르므로 거래 내역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은 아래와 같다.

A업체는 B업체의 주식을 보유한 매도자라고 가정함

1. A업체의 거주국이 인도네시아이며 B업체가 상장사인 경우

A업체가 보유한 B업체 주식을 C에 매각시에는 주식가치의 0.1% (단 기업공개 시점의 경우 주식가치의 0.5%)를 원천징수(PPh4(2))하며 처분이익은 최종분리과세(Final Tax) 됨.

관련법령 - 대통령령(PP131/139) 및 재무부장관령(No.282/KMK 04/1998) 증권거래소에서 매매되는 주식 증권거래에 대한 소득 조항

2. A업체의 거주국이 인도네시아이며 B업체가 비상장인 경우

별도의 원천세는 없으며 처분이익은 익금 산입됨.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익월 4월말일까지 법인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하며 A업체가 개인(인니거주자)인 경우 익월 3월말까지 개인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

관련법령 - 소득세법(UU No,36/2008) 4조 1항 D - 자산의 매매이익 및 양도 조항

3. A업체의 거주국이 한국이며 B업체가 상장인 경우

1항과 동일하게 주식가치의 0.1% (기업공개 시점의 경우 0.5%)를 원천징수하며 처분이익은 최종분리과세임

관련법령 - 1항과 동일

4. A업체의 거주국이 한국이며 B업체가 비상장인 경우 (조세협약 적용할 경우)

관련법령 - 한,인니 조세협약 P3B 1988 - 13 조 양도소득

관할 세무당국에서 PPh26 조항을 근거로 하기 5와 같이 주식 매매 금액의 5%를 원천징수에 대하여 이견이 있으나 과세 법규 재무부장관령(KMK No434/KMK-04/1999) 2 조 2항에 조세협약 P3B가 체결된 국가의 경우 P3B가 우선한다는 전제 규정이 있음

5. A업체의 거주국이 한국이며 B업체가 비상장인 경우 (조세협약 적용하지 않을 경우)

조세협약을 따르지 않는 경우 주식가치의 5%를 인도네시아에서 원천징수함. (PPh26) 단. 조세협약이 있는 경우 조세협약에 따름.

관련법령 - 재무부장관령 (KMK No434/KMK-04/1999) 2 조 3항.

3. 세금 면제 및 감면 제도

인도네시아 조세의 특징 중의 하나가 중간예납이 과도하고 원천세가 상당히 많은 편으로 서비스를 제공 받는 자에게 즉 대금을 지급하는 자에게 납세의무를 부여하여 소득자(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탈루 할 가능성을 방지하고 세금을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특징이라 하겠다.

원천징수를 당하는 쪽에서는 그만큼 선납법인세가 발생되게 되는데, 초과 납부가 되어 환급으로 인한 세무조사의 부담이 있을 수 있기에 사전에 면제 및 감면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는 제도가 있다.

<사례 1> 원천세 관련 사례

A업체가 B업체에 렌터카를 100원에 제공하였다고 할 경우 B업체는 렌터카 비용으로 100원 전액을 A업체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원천세 2%를 공제한 98원만 지급하고 B업체는 공제한 2원을 PPh23항목으로 세금을 납부 및 신고하고 원천세 공제내역서를 A업체에 전달하게 된다.

A업체는 원천세 공제 내역을 전달 받은 후 향후 법인세 신고 시 선납한 법인세로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 받게 된다.

그런데 A업체가 납부할 법인세 보다 선납한 세금이 많다고 할 경우에는 환급이 발생되어 법인세 세무조사 후 환급이 진행되게 된다.

<사례 2> 년 매출액이 48억 루피아 이하인 경우

년 매출액이 48억 루피아 이하인 경우에는 매출액에 0.5%의 세금만 납부하는 Final Tax 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납부할 세금이 없는데 (PPh4(2)에서 설명됨) 예로 A 업체가 년매출액이 48억 루피아 이하인 케터링 업체인데 B업체에 케터링 서비스를 제공하였다고 할 경우 B업체는 원천세 2%를 공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1.5%만큼은 초과 세금이 발생하여 결산 후 법인세 신고 시에는 환급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경우 PPh23 면제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면 SKB PPh23이 발급되며 원천징수를 면제 받게 된다.

<사례 3>

물품 수입 시 선납법인세 (PPh22)를 납부하여 통관이 되는데 신설업체로서 결손이 예상되거나 이월 결손이 많은 업체의 경우 선납한 법인세가 환급이 발생된다.

이런 경우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PPh22 감면 또는 면제 승인(SKB PPh22)을 받을 수 있다.

<사례 4>

법인세 중간 예납(PPh25)을 하게 되어 있는데 간단히 설명하면 작년에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12로 나누어 매월 중간 예납을 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당해년도에는 작년 만큼의 이익이 발생되지 않는다면 결국 초과 납부가 되어 환급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경우 예상 손익계산서 등을 근거로 법인세 중간 예납 감면 또는 면제 승인을 받을 수 있겠다.

이렇듯 납세자가 세무조사 등 환급 받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장 승인하에 면제 또는 감면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부가세도 감면 또는 면제 승인이 가능한데 기계 설비 등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부가세 10%를 납부하여야 통관을 할 수 있으나 사전에 관할세무서에 자본재에 대한 부가세 면세 승인서를 발급받아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고 통관이 가능하겠다.

이런 면세/감면 제도는 관할세무서장의 승인 사항인데 초과 납부에 대해서 사전에 면제/감면을 받느냐, 초과 납부 후 환급을 받느냐의 관점이라 하겠다.

4. PPh4(2) 최종 분리과세에 대한 이해

부동산 임대소득, 부동산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 건설업의 소득세 등에 대한 세금을 설명하고자 한다. 상기 세목들은 PPh4(2)에 해당이 되는데 우선 최종분리과세에 대한 설명을 하면, 최종분리과세(Final Tax)란 여기서 과세하고 나면 더 이상 과세하지 않는다. 즉, Final 로 끝난다는 의미인데 부동산 임대소득은 임차인이 임대료의 10%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게 되어 있다.

예를 들면 임대주가 A라 하고 임차인이 B라고 가정하고 임대료는 100이라고 했을 때 임차인 B는 임대주 A에게 임대료 100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90만 지급을 하고 10은 B가 PPh4(2)로 납부를 하고 공제내역확인서를 A에게 전달하게 된다. 임대소득은 A의 것이지만 임대소득 100에 대해 소득세 10%를 납부하는 것은 임차인 B에게 있다. 탈루 소득을 막기 위해 대금을 지급하는 자에게 납세의무를 둬으로써 세수를 확보한다는 취지인데 여하간 A입장에서는 B가 납부한 10%로 임대소득 100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건설업의 경우 건설, 설계 및 감리에 따라서 또 적정한 면허가 있는지에 따라서 세율은 아래와 같다.

건설 시공의 경우 면허가 소규모 공사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일반 허가는 3%, 면허가 없는 경우 4%이며 설계 또는 감리의 경우에는 면허가 있는 경우 4%, 없는 경우 6%로 되어 있다.

예를 들어 발주처를 A, 일반 건설 시공 면허를 가진 업체를 B라고 가정하고 공장을 짓는데 100억에 공사를 하기로 가정할 경우 건설업체 B는 공사 대금으로 100억을 A에게 청구한다면, A는 97억만 B에게 지급하고 3억은 A가 납부 후 납부공제 내역서를 B에게 제출한다.

B의 입장에서는 공사 수익은 100억이지만 소득세로 A가 3억을 납부함으로써 100억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세금이 발생되지 않는다.

흔히 소득세는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이익에 대해서 세율을 곱한 것이지만 이렇게 PPh4(2) 해당되는 세율은 이익이 더 나건, 손실이 나건 관계없이 해당 수익 100억에 대해서 3억을 납부하므로써 종결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다시 말해, 건설업체 B의 입장에서 한 과세기간동안 상기 공사 100억만 있다고 할 경우 매출은 100억이며 거기에 따른 공사비용이 90억만 발생되어 10억 이익이 발생하든지 아니면 공사비용이 110억이 발생하여 10억만큼 적자가 나든 관계없이 매출액에 대해서 3% 원천징수 당함으로써 더 이상 final 로 납세는 종결된다는 것이다. 적자가 났다고 3% 낸 것에 대해서 환급이 되지도 않고 이익이 더 많이 났다고 해서 추가로 세금이 더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세무당국에서 볼 때 건설업의 경우 원가를 부풀릴 수도 있고 또 건설업체 입장에서 사전 공사 계약 시 법인세 비용도 고려를 하여야 하고 함으로써 법인세율은 이익이나 손실에 관계없이 매출액에 2%, 3%, 4%, 6% 로 확정을 한 것이다.

년 매출액이 48억 루피아 이하인 경우에도 매출액에 0.5%를 Final Tax 로 납부하게 되어 있다. 년 매출액이 48억 루피아 이하인 경우에는 영세업체로 이익이 많이 나든지 적자가 나든지 관계없이 매출액에 0.5%를 납부하는 것으로 법인(소득)세는 종결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년도 매출액이 48억 루피아 이하인 경우에는 매월 발생하는 매출액에 0.5%를 final tax 로 납부하게 되어 있다.

상기 final tax 들은 소득에 대한 것으로 final 이 되는 것이지 여타 원천세나 부가세 까지 Final 이 되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 양도소득도 final tax 인데, 부동산을 매각하고 양도 차액이 10억이 발생하였다고 할 경우 PPh4(2)로 2.5%의 세금을 납부하면 부동산 매각에 따른 소득에 대한 세금은 완료된다.

5. PPh15 인정과세에 대한 이해

PPh15는 소득세법 제 16 조 1항, 3항을 근거로 소득세 계산을 할 수 없는 특정 납세자를 위한 특별 소득 계산 방법을 재무부장관이 정하고 있다.

업종	인정과세 소득율 (매출액 기준)	적용세율 30% / 20%
국내 해운 회사(Final)	4%	1.2%
국내항공회사(PPh23 선급법인세)	6%	1.8%
국내 해운 및 항공회사(Final)	6%	2.64%
석유, 가스 채굴 용역의 외국회사	15%	4.5%
상공부 관할 주재원 사무소	인도네시아 수출가액의 1%	0.44%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대표사무소, 무역대표사무소, 건설지사 등이 한국 또는 인도네시아 영외의 국가의 본사이름으로 지사가 설립이 되는데, 대표사무소나 무역대표사무소의 경우 비즈니스(수익)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본사에서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경우에 인도네시아의 수출금액의 0.44%를 PPh15로 인니지사서 익월 15일까지 납부 및 20일까지 신고를 하여야 한다.

6. PPh19 자산 재평가세에 대한 이해

재평가 대상은 일부 또는 전체의 유형 고정자산에 해당이 되며, 반드시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감정평가 업체(KJPP)로부터 고정자산에 대한 평가(시장가격 등)를 받아 국세청 사전 허가 및 재평가세를 납부하면 되고 재평가 차익에 대한 세율은 10%이며, 최종분리과세(Final Tax)에 해당된다.

2015년 11월 20일 고정자산 재평가 제도에 대한 재무부장관 시행 규칙 제 191 / PMK 010 /2015 이 발효될 때에는 한시적으로 재평가 세율을 3%(2015년 12월 31일 까지 신청분), 4%(2016년 1부터 6월까지 신청분), 6%(2016년 7월부터 12월까지 신청분)까지 할인 적용되었으나 2015년부터 2016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 바 있으나 현재는 10% 적용되고 있다.

굳이 재평가세를 내면서 재평가를 왜 하느냐에 대해서는 아래 기업의 경우 자산 재평가를 신청하면 소득세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자본 잠식 기업, 부채 비율이 400% 이상인 기업(재무부장관령 No. 169/PMK.010/2015 발효 2016년 사업년도부터 적용 세법상 동 비율은 부채금액을 자본금액의 4배까지로 제한하여 4배를 초과하는 부채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금융비용은 손금불산입), 유형고정자산 재평가 후 감가상각비가 크게 늘어난 기업 등이 해당 되겠다.

<사례 1>

2005년에 토지를 구입하였는데 구입 당시 10억 루피아였는데 현재 시장가치는 100억 루피아로 가정할 경우 자산재평가를 하지 않는다면 장부상 토지금액은 10억이지만, 재평가를 하여 현재 시장가치로 변경하고자 한다면 90억만큼의 평가차액이 발생하게 되며 상기 금액이 반영된 재무제표로 세무 신고시에는 자산재평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럴 경우 90억만큼 자산이 증가하고 동일 금액만큼 이익잉여금 증가하게 되어 실질적으로 자본 증가로 부채비율을 낮출 수 있겠다.

<사례 2>

2005년 기계장치를 10억에 구입하였고 감가상각 내용년수는 8년이라 하고 현재 시장가치는 5억이라고 가정 할 경우 자산재평가를 하지 않는다면 현재 장부상 기계장치는 0이겠지만 재평가를 한다면 5억만큼의 평가 차액이 발생하게 된다. 물론 재평가된 기계장치는 신규 자산 취득과 동일하게 감가상각을 할 수 있으므로 법인세 절감 효과가 있다 하겠다.

재평가 금액은 정부가 승인한 감정평가(KJPP)에 의해 산정되어야 하며, 국세청장은 해당금액이 적정하게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재평가 차액은 5년마다 가능하다.

7. PPh21 근로소득세에 대한 이해

PPh21은 한국의 근로소득세와 유사한데, 한국은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분 급여지급시 1년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고,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확정신고를 한다.

인도네시아는 1월부터 11월까지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후 12월 신고 시 연간소득을 확정하고 3월 개인연간소득세 신고 시 개인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든 다른 소득이 있던 개인 연간 소득신고는 하여야 한다.

소득세율은 세금의 계산 방법에 설명은 하였지만, PPh21의 경우 근로소득은 개인 소득세율 적용하고 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직금에 의한 원천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별 개인소득세율>

과세표준 (단위 : IDR)	세율
1 ~ 50,000,000	5%
50,000,001 ~ 250,000,000	15%
250,000,001 ~ 500,000,000	25%
500,000,001 이상	30%

누진세율로서 연간 과세표준이 600,000,000 이라고 했을 때,
 30%를 적용 ($600,000,000 * 30\% = 180,000,000$)하는 것이 아니고,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50,000,000 * 5\% + 200,000,000 * 15\% + 250,000,000 * 25\% + 100,000,000 * 30\% =$
 125,000,000 이 되겠다.

<퇴직금에 의한 원천세율>

과세표준 (단위 : IDR)	세율
1 ~ 50,000,000	0%
50,000,001 ~ 250,000,000	5%
250,000,001 ~ 500,000,000	15%
500,000,001 이상	25%

누진세율로 개인소득세율과 동일하게 계산된다.

인도네시아는 소득공제는 직책공제와 인적공제 두가지이며, 개인이 부담한 BPJS
 노후연금 2%와 의료보험 1%는 공제하며, 대신 회사가 납부한 BPJS는 소득에 합산을
 한다.

직책공제(Biaya Jabatan)는 총 받는 급여에서 5%를 공제해 주는데, 연간 6,000,000
 루피아 한도내에서 월 500,000 루피아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급여가
 20,000,000 루피아인 경우 5%를 곱하면 1,000,000 루피아이지만, 최대 500,000
 루피아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다.

필자는 인적공제로 표현을 했는데 Penghasilan Tidak Kena Pajak (PTKP)로 소득 공제가 정확한 표현이지만 사람의 인원수에 따라 본인공제, 배우자공제, 부양자녀 공제 등으로 되어 있어 인적공제라는 표현으로 대신하였다.

2020년 PTKP 비율은 여전히 전년도와 동일하며 여전히 재무부 장관 규정 번호 101 / PMK.010 / 2016을 나타낸다. 다음은 2020년 PTKP는 본인(TK/0) IDR 54,000,000 공제, 배우자 추가 (K/0) IDR 4,500,000 추가 공제, 부양가족은 최대 3명까지 공제 가능하며 1인당 IDR 4,500,000 추가 공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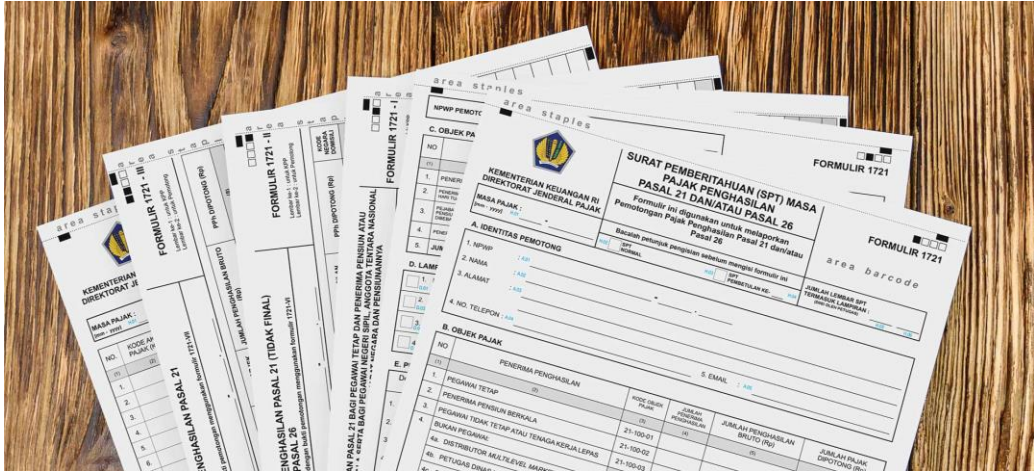
부양 가족에 따라 K/1, K/2, K/3로 표시한다. TK는 Tidak Kawin 으로 미혼 즉, 본인만 공제되는 것이고 K는 Kawin으로 기혼 즉, 배우자 공제가 된다. K/0은 본인 및 배우자만 있는 경우, K/1은 본인 및 배우자에 부양자녀가 1명인 경우로 되어 있다.

남편과 아내가 각각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양쪽 다 공제를 받지 못하며, 아내만 본인 공제(TK/0)이 되며 남편은 언급한 공제를 다 받을 수 있다.

PPh21의 납부는 익월 10일까지 이며, 신고는 20일까지 하여야 하고, 신고는 Online 신고만 가능하다.

실제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갑근세 계산 오류보다는 직원들 복리후생과 관련하여 과세 측면에서 PPh21 대상인지 아닌지가 상당한 issue가 될 수 있는데 이부분은 복리후생비에서 자세히 설명이 하고 아래 내용은 Klikpajak 에서 발췌한 PPh21 번역 자료인데 신고 절차와 갑근세 계산 사례 등 참조하면 되겠다.

<소득세법 21조의 정의>



PPh21 은 국내 개인 납세자 (WPOP)가 자신의 업무, 서비스 또는 활동에 대해 받은 소득에 부과되는 원천 징수세이다. 즉, 고용주가 피고용주에게 급여 등을 지급 시 고용주는 PPh21을 계산하여 공제 후 지급하기에 소득은 피고용주의 소득이지만 납세의무는 고용주에게 있다. 일반적으로 PPh21은 회사의 급여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세금을 다루지만 실제로 다양한 다른 활동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PPh21의 처리는 소득 유형에 따라 크게 다르며, PPh21이 적용되는 소득 유형에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범주가 있다.

- 정규 직원(Pegawai Tetap)의 소득
- 비정규 직원(Pegawai Tdiak Tetap)의 소득
- 비직원(Bukan Pegawai) 소득
- 최종 분리과세의 소득
- 다른 소득

과세 대상 및 과세 대상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관련 법 규정은 아래와 같다.

< 소득세 관련 법 규정 >

- 소득세법(소득세에 관한 1983년 법률 번호 7(UU No.7 tahun 1983)에서 2008 법률 번호 36(UU No.38 tahun 2008) 까지)
- 재무부장관 규정 No. 252 / PMK.03 / 2008 개인의 업무, 서비스 및 활동과 관련하여 소득에 대한 원천 징수세 시행 지침에 관한 규정
- 국세청장령 (PER-16 / PJ / 2016) 개인의 업무, 서비스 및 활동과 관련된 소득세 제21조 및 / 또는 소득세 제 26 조의 원천 징수, 예치 및 신고 절차에 대한 지침
- 재무부장관 규정 No. 102 / PMK.010 / 2016은 소득세 계산 대상이 아닌 일일 및 주간 직원 및 기타 비정규직 근로자의 작업과 관련된 소득 결정에 관한 지침
- 정부령 68/2009. 퇴직 급여, 연금 급여, 노령 급여, 연금 급여 형태의 소득에 대한 소득 세율 제21조에 관한 규정
- 재무부장관 규정 No. 16 / PMK.03 / 2010 소득세 원천 징수 절차에 관한 소득세 제 21 조
- 납세자 PPh21 (세금 규정 제 21 조)

소득세 제21조의 납세자는 고용인, 퇴직금 수령자, 연금 수령자, 노령 수당, 노령 수당, 상속인, 비 근로자로서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소득을 받거나 받는 납세자로 아래와 같다.

- 회계사, 건축가, 변호사, 의사, 컨설턴트, 보험 계리사, 감정사 및 공증인으로 구성된 독립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전문가.

- 영화 배우, 음악가, 가수, 발표자, 광고, 연속극, 모델, 영화 제작진, 감독, 사진 모델, 화가, 드라마 배우, 무용가, 조각가 및 기타 예술가.
- 운동 선수, 코치, 트레이너, 강사, 고문, 중재자 및 연사.
- 연구원, 저자 및 번역가.
- 컴퓨터 서비스 및 애플리케이션 시스템, 사진, 엔지니어링, 통신, 경제, 전자, 사회 및 위원회 서비스 제공 업체.
- 외부 보험 담당자, 직접 판매, 다단계 마케팅 회사의 유통 업체, 상품 판매 담당자.
- 회사의 정규직 직원 또는 위원으로 겸직하지 않는 감독위원회. 스포츠, 과학, 기술, 예술, 민첩성 및 기타 유형의 대회를 포함한 모든 분야의 대회 참가자 및 예술과 같은 활동에 참여한 소득 수령자.
- 회의, 세션, 회의, 직장 방문 및 회의 참가자. 교육 및 훈련 참가자, 기타 활동 참가자.
- 전 직원.

<제 21 조 소득세 대상 (Objek Pajak PPh21)>

a. 소득세 제 21 조에서 원천 징수 된 소득

- 정규직 또는 비정규 소득의 형태로 정규직이 받거나 얻은 소득.
- 연금 또는 유사한 소득의 형태로 연금 수급자가 정기적으로 받거나 벌어들이는 소득.
- 해고 관련 소득과 퇴직금, 연금 수당, 노령 수당 또는 노령 수당 및 기타 유사한 지급의 형태로 동시에 받는 연금 관련 소득.
- 임시 또는 프리랜서 근로자의 일당 임금, 주당 임금, 단위 임금, 단가 또는 월간 임금 형태의 직원 소득.

- 비 직원에 대한 혜택은 무엇보다도 명예, 커미션, 수수료 및 수행 된 업무, 서비스 및 활동과 관련된 보상으로서 모든 이름과 형식의 유사한 보수의 형태.
- 활동 참가자에 대한 보상은 무엇보다도 용돈, 대표 자금, 회의 금, 명예 관, 선물 또는 상금, 이름과 형식에 관계없이 모든 이름으로 유사한 보상의 형태로 제공.

b. 소득세 제 21 조에서 공제되지 않은 소득

- 건강 보험, 상해 보험, 생명 보험, 기부 보험 및 장학 보험과 관련하여 보험 회사로부터 혜택 또는 보험 혜택.
- 고용주가 부담하는 소득세 (정부가 부담하는 소득세 포함)를 포함하여 납세자 또는 정부가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현물 및 향유 형태의 소득.
- 재무부 장관이 설립을 승인 한 연금 기금에 지급되는 연금 기금, 사용자가 지급하는 노령 급여 집행 기관 또는 노동 사회 보장 집행 기관에 대한 노령 급여 또는 노령 저축 기여금.
- 정부가 설립하거나 승인한 *amil zakat* 기관 또는 기관으로부터 자격을 갖춘 개인이 받은 *Zakat* 또는 정부가 설립하거나 승인 한 종교 기관으로부터 자격을 갖춘 개인이 받은 인도네시아의 공인 종교 신자들에게 의무적인 종교 기부로서 당사자의 사업, 직업, 소유권 또는 통제와 관계가 없는 것.
- 재무부 장관의 규정에 충족되는 장학금.

<비과세 소득 (PTKP)>

비과세 소득 (PTKP)은 PPh 제 21 조에 포함된 소득세 대상이 아닌 소득이다. 세무국에 따르면 비과세 소득 (PTKP)은 납세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 필요를 1년 이내에 충족하기 위한 비용으로 설명된다. 따라서 소득세 제 21 조에 포함되지 않는다.

PMK No. 101 / PMK. 2016년 1월 10일, 납세자의 소득이 IDR 54,000,000 이하인 경우 납세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소득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 개인 납세자의 경우 IDR 54,000,000.
- 기혼 납세자에게는 IDR 4,500,000 추가.
- IDR 54,000,000 -수입이 남편의 수입과 합쳐진 아내의 경우.
- IDR 4,500,000 -혈통의 생물학적 가족 및 가족 구성원과 전적으로 의존하는 입양 자녀에 대해 추가, 각 가족당 최대 3명.

<PPh21 세율>

소득세법 제 17 조 1 항에 따라 개인 세율 계산에는 다음과 같은 누진율이 사용된다.

- 연간 최대 IDR 50,000,000의 소득에는 5%의 세율이 적용
- 연간 IDR 50,000,000에서 IDR 250,000,000까지의 소득에는 15%의 세율이 적용
- 연간 IDR 250,000,000에서 IDR 500,000,000까지의 소득에는 25%의 세율이 적용
- 연간 IDR 500,000,000 이상의 소득에는 30%의 세율이 적용.

한편, NPWP가 없는 납세자는 이미 NPWP가 있는 납세자보다 20%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PPh21 계산 방법>

PPh21의 계산은 세율에 세율 또는 규정 된 소득의 총액을 곱하여 계산하며, 일반적으로 수입 또는 수입은 해당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공제 항목에 의해 감소된다.

PPh21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다.

$PPH21 = \text{세율} \times (\text{소득} - \text{공제})$

NPWP가 아직 없는 소득 수령자의 경우, 총 납부 세금의 120%를 곱하여 계산.

$\text{소득세 21 미지급} = 120\% \times \text{소득세 21 미지급}$

<PPH21 계산의 예>

1. 고정 수입

Satria는 2018년 1월에 PT. Harapan Kreasi에서 일하기 시작하고 결혼하여 두 자녀를 둔 직원으로 Satria의 기본 급여는 월 IDR 10,000,000 이며 2018년 1월 회사에서 다음과 같이 추가 수당을 받는다.

- 초과 근무 수당 = IDR 1,000,000
- 통신비 = IDR 300,000
- 교통비 = IDR 500,000

또한, 회사는 BPJS Kesehatan 및 BPJS Ketenagakerjaan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여 다음과 같은 지불한다.

- 건강 보험 : 회사 4%, 임직원 1%
- 산재 보험 : 회사 0.24 %
- 사망 보장 : 회사 0.3 %
- 노령 연금 : 회사 3.7 %, 임직원 2 %
- 연금 보험 : 회사 2 %, 임직원 1 %

그러면 소득세 제 21 조의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8년 1월

- 기본급 = IDR 10,000,000
- 초과 근무 수당 = IDR 1,000,000
- 통신비 = IDR 300,000
- 교통비 = IDR 500,000
- 월 소득 = IDR 11,800,000

고용주가 지불 한 BPJS :

- 건강 보험 (4%) = IDR 320,000
- 산재 보험 (0.24%) = IDR 24,000
- 사망 보험 (0.3%) = IDR 30,000
- 월 총수익 (Penghasilan Bruto per Bulan) = IDR 12,174,000

공제 :

- 직책공제 (5% x Ph.Bruto) = IDR 500,000
- 노후연금 본인부담분 o / 직원 (2%) = IDR 200,000
- 연금 보험 본인부담분 o / 직원 (1%) = IDR 77,035
- 월별 순이익 = IDR 11,396,965
- 연간 순이익 = IDR 136,763,580
- 소득공제 (PTKP) K / 2 = IDR 67,500,000
- 과세표준 (PKP) = IDR 69,263,000 (과세표준(PKP)은 천단위 반올림)
- 연간 (12개월) PPh21 = IDR 5,389,450
- 월 납부 PPh21 = IDR 449,120.83

이는 2018년 1월 PT. Harapan Kreasi가 공제해야하는 PPh21이 IDR 449,120.83임을 의미 한다.

2. 가변 소득

Tania는 미혼 상태의 프리랜서이며 이미 NPWP가 있다. 수입은 주당 IDR 2,000,000 으 로 월 IDR 8,000,000이었다. 매주 임금이 지급되는 Tania의 세금 계산은 다음과 같다.

- $\text{IDR } 2,000,000 \times 4 = \text{IDR } 8,000,000$.
- 총 수입 = $\text{IDR } 8,000,000$.
- 직책공제 = $5\% \times \text{IDR } 8,000,000 = \text{IDR } 400,000$.
- 월간 순소득 = $\text{IDR } 7,600,000$.
- 연간 소득 환산 = $12 \times \text{IDR } 7,600,000 = \text{IDR } 91,200,000$.

미혼의 경우 본인 공제만 소득공제되어 연간 PTKP는 $\text{IDR } 54,000,000$
연간 과세표준 = $\text{IDR } 37,200,000$.

소득세 제 21 조는 $5\% \times \text{IDR } 37,200,000 = \text{IDR } 1,860,000$

따라서 Tania의 소득에 부과되는 한 달 동안의 PPh21는 $\text{IDR } 155,000$

<SPT PPh21 신고 방법>

SPT Masa PPh21는 인도네시아 직원의 [소득세 신고를 위한 세금 신고서](#)이다 . 납부 기한은 다음달 10일이며, 신고 기한은 20일이다. 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 히 알아 보려면 다음 단계를 알아야 한다.

1. aplikasi DJP Online <https://djponline.pajak.go.id/>에 로그인 후 NPWP와 암호 및 보안 코드를 입력한다.
2. e-Billing, e-Form 및 e-Filing과 같은 메뉴 옵션이 나타나면 e-Filing을 클릭하여 SPT PPh21을 보고 한다 .보고할 SPT Masa PPh Article 21 파일 (CSV 및 PDF 형식)을 선택하되 두 파일의 이름이 동일한지 확인한다. 그런 다음 "업로드 시작"을 클릭 하면 업로드 프로세스가 완료되었다는 메시지가 나타난다.
3. 다음으로 인증 코드를 요청해야 하는데. "확인"을 클릭하면 SPT 세부 정보 코드가 보고되고 인증 코드 열이 나타난다. 해당 링크 를 클릭하여 즉시 인증 코드를 받는다 . 이메일로 전송된 인증 코드를 복사하여 빈 필드에 입력 할 수 있다 . SPT 및 인증 코드가 올바른지 확인한 후 " SPT 보내기 "를 클릭 한다.
4. 또한 이메일로 온라인 또는 영수증 전자 장비 (BPE) 에서 SPT masa PPh21 신고에 대한 접수증을 확인 . SPT masa PPh21 Online을 성공적으로 보고했다는 표시로 저장한다.

8. PPh22 특정물품의 매매 및 물품의 수입에 관한 선납법인세 대한 이해

물품을 수입하거나 특정 물품을 구매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서 세무당국에서는 물품을 수입하여 판매를 통해 이익이 창출되므로 일정 세금을 선 징수하는 차원으로 선납법인세에 해당이 된다.

그런데 수입물품에 대한 선납법인세(PPh22)가 2018년 수입물품에 대한 선납법인세 (PPh22) 인상 (재무부 장관령 110호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110 / PMK. 010 /2018) 되었다. 2018년 9월 6일 재무부장관령 110호로 1,147개 품목에 대한 수입물품에 대한 선납법인세(PPh22)를 인상하였다.

수입물품에 대한 선납법인세(PPh22)가 종전 2.5% 또는 7.5% 에서 대부분 품목에 7.5% 또는 10% 인상된 건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선납법인세는 우선은 선납법인세로 처리 후 향후 연말 결산 후 그만큼 납부할 법인세가 없으면 환급이 되지만, 환급 시에는 법인세 세무 조사 등의 부담이 있다. 재무부장관령 39호 (No.39 / PMK 03. /2018)가 시행되어 요건만 갖추면 조기환급이 가능하지만 세무조사의 부담은 동일하다. 이와 별도로 SKB PPh22 (Surat Keterangan Bebas PPh Pasal 22) 제도가 있다.

이는 면세제도로 신설회사, 년매출 48억 루피아 이하, 또는 선납법인세를 납부할 경우 법인세 환급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예상 추정손익계산서, 예상 수입물품내역 등을 구비하여 신청하여 SKB PPh22 를 발급 받으면 수입 시 PPh22는 발생되지 않는다.

9. PPh23 원천세에 대한 이해

PPh23 은 Pajak Penghasilan Pasal 23으로 인도네시아 소득세법 23조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아래 언급한 금액을 지급할 경우에는 지급 총액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15% 원천징수 대상

- 배당
- 프리미엄, 디스카운트, 보증 수수료를 포함한 이자
- 로열티
- 포상금 및 상금

상기 내역을 지급할 경우 15%를 공제하여 익월 10일까지 납부 및 20일까지 신고를 하고 공제한 15%에 대해선 원천세공제내역서(Bukti potong PPh23)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전달하여 한다. 서비스를 제공한 업체는 15%에 대해서 선납법인세 처리 후 법인세 납부 시 차감할 수 있다.

2) 2% 원천징수 대상

상기 소제목 원천징수 대상 확대(PMK-141/ 2015)에 해당되는 것으로 아래에 해당되는 32가지의 서비스가 2% 원천징수 대상이다.

아래 서비스를 제공 받는 경우에는 대금의 2%를 원천징수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가 납부 및 신고를 하여야 한다.

- a. 감정 평가 서비스 (Jasa Penilai (appraisal))
- b. (보험)계리사서비스 (Jasa aktuaris)
- c. 회계, 장부정리, 및 재무제표 사실 입증 서비스
- d. 법률 서비스
- e. 건축 서비스
- f. 도시 계획 및 조경 설계 서비스
- g. 건축 설계 서비스 (Jasa Perancang (design))
- h. 고정사업 형태로 시행 하는 경우를 제외한 석유.가스 광산 굴착 서비스(Jasa Pengeboran (drilling))
- i. 지열,석유 및 천연 가스 개발 사업 분야에 지원 서비스.
- j. 지열, 석유 및 천연 가스 광산 개발 사업 외에 탄광 및 지원 서비스
- k. 항공 및 공항 분야 지원 서비스
- l. 산림 벌목 서비스 (Jasa penebangan hutan)
- m. 폐기물 처리 서비스 (jasa pengolahan limbah)
- n.노동 인력 및 전문인력 조달 서비스 (인력 외주 서비스/outsourcing services)
- o.중개인 또는 대리인 서비스 (Jasa perantara dan/atau keagenan)
- p.증권 거래소(Bursa Efek), 인도네시아 중앙 예탁기관(KSEI), 인도네시아 청산 보증 기관(KPEI) 이 시행하는 것 을 제외한, 증권거래 분야의 서비스
- q. 인도네시아 중앙 예탁 기관이 시행하는 것을 제외한 주식 예탁 서비스(Jasa custodian/penyimpanan/penitipan)
- r. 사운드 더빙 서비스 (Jasa pengisian suara(dubbing) dan/atau sulih suara)
- s. 필름 믹싱 서비스 (jasa mixing film)
- t. 영화 홍보 수단, 광고, 포스터, 사진, 슬라이드, 클리스(필름), 현수막, 팜플렛, 광고 게시판, 폴더 제작 서비스
- u. 관리, 유지 보수, 수리를 포함 안한 소프트 웨어, 하드 웨어, 컴퓨터 시스템 관련 서비스.

- v. 웹사이트 제작 관리 서비스
- w. 인터넷 접속을 포함한 인터넷 서비스
- x. 데이터, 정보 및 프로그램 저장,관리,분배 서비스
- y. 활동 범위가 건설 분야 이고, 건설 업자로서 허가와 자격증이 있는 납세 의무자가 시행하는 것 이외에 기계, 기구, 전기, 전화, 수도, 가스, 에어컨 및 텔레비전 케이블 설치 서비스
- z. 활동분야가 건설 분야이고, 건설 업자로서 허가와 자격증을 소지한 납세 의무자가 시행하는 것 이외에 기계, 장비, 전기, 전화, 수도, 가스, 에어컨, 케이블 텔레비전 및 건물 유지/수리/유지보수 서비스.
- aa. 차량 및 지상, 해상, 항공 운송수단 유지관리 서비스.
- ab. 임가공 (위탁가공) 용역(Jasa Maklon)
- ac. 검사 및 보안 서비스 (Jasa penyelidikan dan keamanan)
- ad. 이벤트 제공서비스 (Jasa penyelenggara kegiatan atau event organizer)
- ae. 대중 매체, 옥외 광고 매체 및 기타 매체에 정보 송출을 위해 장소 또는 시간 제공 및 광고
- af. 해충 방제 서비스(Jasa Pembasmian hama)
- ag. 청소 서비스,
- ah. 정화조 서비스(Jasa sedot /septic tank)
- ai. 연못/수영장 유지 관리 서비스 (Jasa pemeliharaan kolam)
- aj. 도시락 배달(케이타링) 서비스 (Jasa catering atau tata boga)
- ak. 화물 운송 서비스 (Jasa freight forwarding)
- al. 물류 서비스 (Jasa logistik)
- am. 문서 처리 서비스 (Jasa pengurusan dokumen)
- an. 포장 서비스
- ao. 적재 및 하역 서비스
- ap. 학술 연구를 위해 교육 제단 또는 교육기관이 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한 연구소 및 시험 서비스

- aq. 주차 관리 서비스
- ar. 다짐도 측정 (DCPT)시험 서비스 (Jasa penyondiran tanah)
- as. 토지 개간 서비스
- at. 종자 조립 서비스 (Jasa pembibitan dan/atau penanaman bibit)
- au. 식물 관리 서비스 (Jasa pemeliharaan tanaman)
- av. 수확 서비스 (Jasa pemanenan)
- aw. 농작물, 원예 작물, 어류, 축산물, 또는 산림 가공 서비스
- ax. 장식 서비스 (Jasa dekorasi)
- ay. 출판 서비스
- az. 번역 서비스
- ba. 소득세법 제15조 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한 운송/탐사 서비스
- bb. 항만 시설 서비스
- bc. 파이프 라인을 통한 운송 서비스
- bd. 육아 관리 서비스
- be. 훈련 및 교육과정 서비스.
- bf. 현금 자동 출납기를 통한 입출금 서비스
- bg. 자격증 서비스 (Jasa sertifikasi)
- bh. 현장 조사 서비스 (Jasa survey)
- bi. 테스터 서비스 (Jasa tester)
- bj. 상기의 해당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로 중앙 또는 지방 정부 예산에서 부담되는 서비스

상기 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에는 서비스금액에 2%를 공제하여 익월 10일까지 납부 및 20일까지 신고를 하고 공제한 2%에 대해선 원천세공제내역서(Bukti potongan PPh23)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전달하여 한다. 서비스를 제공한 업체는 2%에 대해서 선납법인세 처리 후 법인세 납부 시 차감할 수 있다.

10. PPh25 법인세 중간 예납에 대한 이해

납세자는 자진하여 중간 예납금액을 계산하여 매월 자진 납부하여야 한다. 익월 15일 납부하며 별도 신고가 없고, 납부한 것을 신고로 간주한다.

중간 예납 금액의 계산은, 전년도 법인세 신고 금액에서 전년도 원천징수 당한 선납세금(PPh21, 22, 23)을 차감하고, 24 조에 명시한 해외 선납세금도 차감 후 나머지 금액에서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매월 중간 예납 금액으로 납부한다.

결산신고서가 보고 되어지기 전까지의 법인세 중간 예납금액은 전 년도의 마지막 월과 같은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12월 결산일인 법인의 경우 법인세 신고기한은 4월말까지로 4월말 신고를 한다면 3월과세분(4월 15일 납부)까지 납부를 하여야 하고 4월과세분(5월 15일 납부)부터는 법인세 신고한 내역으로 위와 같이 중간 예납 금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법인세 신고를 앞당겨 1월말에 한다면 12월과세분(1월 15일 납부)까지 납부를 하고 동일하게 위에 언급한대로 중간 예납 금액을 계산하여 1월과세분(2월 15일 납부)부터는 새로 적용한 예납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회계기간 내에 세무조사로 인한 전년도의 과세 금액이 확정된 때에는 중간 예납금액을 재 계산하여 납세고지서가 확정 발급된 월 이후부터 납부하면 된다.

일반적으로는 중간 예납금액은 납세자가 자진 신고하지만, 다음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세무당국에서 중간 예납 금액을 확정할 수 있다.

- 납세자가 누적 결손금을 상계할 권한이 있는 경우
- 납세자에게 일상적이지 않는 특별 수익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결산 신고서가 신고 기한을 넘겼을 경우
- 결산신고서가 연장 신청에 의해 신고되었을 경우
- 결산신고서를 수정 신고하고, 중간 예납 금액이 늘어난 경우
- 납세자의 영업활동에 변화가 있을 경우

또한, 중간 예납의 감면 및 면제도 상기 예로 신청하여 세무당국 승인을 받으면 승인된 날짜부터 감면 금액을 납부할 수 있다.

11. PPh26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세에 대한 이해

인도네시아 소득세법 제 26 조는 인도네시아의 고정사업장(BUT)을 제외한 외국 납세자(비거주자)가 인도네시아로부터 받은 소득에 부과되는 소득세인데, 비거주자가 세금 납부 및 신고가 되지 않기 때문에 비거주자에게 서비스를 제공 받는 인도네시아 법인(거주자)가 서비스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하여 익월 10일까지 납부, 20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세 대상은 아래와 같다.

- 배당금
- 이자
- 로열티, 임대료, 자산운영에 대한 기타 소득
- 용역, 노동, 활동에 대한 대가
- 선물 및 보상
- 연금 및 기타 지출
- 활동 스왑(SWAP)과 보호거래(Transaksi lindung nilai lainnya)
- 채무 면제 이익

PPh26의 세율은 20%이지만, 국가별 조세협약 / 이중 과세 방지 및 회피 협정(P3B)을 따를 경우에는 해당국가간 조세협약을 따른다.

(조세협약과 관련하여서는 Form DGT 참조)

이와 별개로 인도네시아에 있는 자산을 매각함으로써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 해외 보험 회사로 지불하는 보험금액에 대해서 순 추정 소득 금액의 20%의 세금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고정사업장(BUT)로부터 세금이 차감된 과세 대상 소득은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한·인니 조세협약 적용시 10%). 단, 인도네시아에 재투자되는 소득은 제외되며 재무부장관 규정으로 규정하고 있다.

2020년 9월 1일부터 PKP(부가세과세등록) 및 non PKP(부가세 비과세) 납세자는 PPh23 및 PPh26에 e-Bupot을 사용하여야 한다. Non PKP 사업자의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전자인증을 받아야 e-Bupot PPh23/26 가능하다.

12. 법인세 계산

법인세 계산을 위해서는 회계처리(기장)를 우선 이해하여야 한다. 인도네시아에서 사업활동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는 개인 납세자 및 법인 납세 의무자에게는 경리 장부 기장의 의무가 있다.

기장이란 연간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의 모든 거래(수입, 지출)를 장부에 기록하는 것인데 최종 이익을 산출하는 과정으로 복식부기에 의해 처리가 되어야 하고, 장부는 최소한 자산, 부채, 자본, 수입과 비용 및 매출과 매입에 관한 기록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이로 하여금 과세 금액의 총액을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회계처리가 된 수입과 비용 항목에서 세법에서 규정된 익금불산입, 손금불산입 등 세무조정 후 이익에 법인세율 22%(2020, 2021년 적용/ 2022년부터 20% 적용/ 2019년 25% 적용) 세율을 곱하여 산출 세금을 계산한다.

산출세금에서 선납세금을 공제하고 차액 PPh29라고 하며 12월 결산 법인의 경우 익년 4월 25일까지 납부하여야 하고 4월 30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부득이 법인세 연장 신청을 할 경우에는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경우 2개월간 연장이 가능하다. 이 경우 미신고(지연신고)에 대한 가산세 1,000,000 루피아는 부과되지 않지만, 미납세금에 대한 월 2% 지연이자는 부과된다.

13. 국세청 서식 Form DGT

조세협약 (Persetujuan Penghindaran Pajak Berganda (P3B) 또는 tax treaty)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Form DGT를 작성하여야 한다.

국세청 서식 Form DGT는 Certificate of Domicile of Non Resident For Indonesia Withholding Tax 로 인도네시아 원천세에 대한 비거주자 증명서로서 몇차례 양식이 변경된 바 있다.

2018년 11월에 『알기 쉬운 인도네시아 세법 2018년판』을 출간할 때 최근 변경된 국세청 서식 Form DGT 라는 제목으로 2017년 6월 19일 국세청장령 10호/PJ/2017 (Peraturan Direktur Jenderal Pajak Nomor Per-10/PJ/2017)로 발표되어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규정이었는데 2018년 11월 21일에 국세청장령 25호 (Peraturan Direktur jenderal Pajak Nomor PER-25/PJ/2018) 공포되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종전 규정인 국세청규정 Nomor PER-10/PJ/2017과 비교한 주요 차이점은 기존 금융기관과 비금융기관으로 구분하였던 두 개의 서식(DGT-1 Form, DGT-2 Form)을 하나의 서식 DGT Form으로 통합하였고, 소득 유형과 관련 금액을 기재하는 란을 없애고, 유효기간(최장 12개월까지 가능) 내에서는 DGT Form을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간소화 되었으며 테스트 문항 추가 및 보완 등으로 법적 확실성 더하였고 조세협약의 남용을 보다 더 잘 막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Form DGT 는 비거주자(인도네시아가 거주국이 아닌 타국에 거주하는 납세자)가 인도네시아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인도네시아 세법을 적용 받지만, 이럴 경우 거주국(인도네시아가 아닌 타국)에서도 세금을 납부하여 2중으로 세금을 부담할 수도 있고, 양쪽 국가에서 신고를 모두 회피할 수도 있으므로 대부분 국가간 조세협약이 맺어져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 세법이 아닌 조세협약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Form DGT 를 자신의 거주국 관할세무서에 확인을 받아서 인도네시아에 제출하여야 조세협약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 비거주자와의 거래 즉, 국외 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인도네시아 소득세법 26 조 (PPh26)가 적용되지만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거주국가에서도 세금을 납부하고 또 비거주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인도네시아에도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되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모든 국가들이 비거주자에게는 높은 세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조세협약을 적용 받는 것이 상당히 유리하다고 하겠다.

또, 국가간 입장에서 볼 때 납세자가 타국에서도 세금을 부담하고 자국에서도 세금을 부담하거나 양국가에서 모두 세금을 회피할 수도 있으므로 이중과세 및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협정이 인도네시아와 대부분 국가간 조세협약으로 맺어져 있다. 조세협정이 맺어져 있지 않는 국가에는 인도네시아 세법을 따르지만 조세협정이 맺어져 있는 경우에는 조세협정이 우선된다. 단지 조세협정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거주국가의 관할 세무서로부터 Form DGT 의 확인을 받아서 제출하여야만 조세협약을 적용 받을 수 있다.

PPh26의 이해에서도 설명을 하였지만 국외간 거래에 대한 원천세는 20%이다. 그렇지만 조세협약을 따른다면 항목에 따라서 원천세는 0%, 10%, 15%, 20%가 적용된다.

14. 고정사업장 (BUT)

인도네시아에 지사를 설립할 경우 투자조정청(BKPM)에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대표이사의 확인서가 첨부되는데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납세의무가 없는 것은 아니다.

건설지사의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건설회사와 Joint Operation (JO) 형태로 건설업을 수행하여 JO 형태로 법인세를 납부하고 이익금에 대해서 지점 이윤세(Branch Office Tax) 를 납부하게 되어 있다.

상기에서 건설지사의 경우에는 JO 형태로 영업활동이 인도네시아내에서 이루어지지만 건설지사가 아닌 연락사무소, 대표사무소 등 시장 조사 등으로 지사를 설립하는 경우 인데 지사에서는 별도의 영업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본사에서 인도네시아에 거래가 있는 경우 고정 사업장 issue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PPh15의 이해 참조)

인도네시아 소득세법 2 조에 고정사업장에 대한 규정과 2A 조 3항에 조세의 발생 및 소멸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다.

고정사업장(BUT)이란?

가. 인도네시아에 거주하지 않은 개인에 의하여 운영되어지는 사업 형태 (사업장)

나. 인도네시아에 있지만 12개월 중 183일 이하 거주하는 개인에 의하여 운영되어지는 사업형태

다.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하거나, 활동을 하기 위하여 인도네시아에 회사를 설립하거나 거주하지 않은 채 사업을 행하는 법인으로 이와 같은 형태는 다음과 같다.

- a. 관리 사무소
- b. 지사
- c. 연락 사무소
- d. 사무실 건물
- e. 공장
- f. 정비소
- g. 창고
- h. 판촉이나 판매를 위한 전시장
- i. 자연 탐광, 채굴작업
- j. 천연 유전과 가스 채광 작업지역
- k. 어업, 축산업, 농업, 종묘, 임업
- l. 건설, 설치 공사, 텅키작업(Proyek Perakitan)
- m. 12개월 중 60일 이상, 직원이나 개인이 제공하는 모든 용역
- n. 활동이 제한된 대리점(Agen)을 운영하는 개인이나 법인
- o. 인도네시아에 설립되지 않고 거주하지 않는, 즉 국외 보험회사의 직원 또는 대리점 (인도네시아에 보험수익이 있거나 위험을 책임지는 보험회사)
- p. 컴퓨터, 전자대리점,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영업활동으로 전자결제로 이루어지는 소유, 임대, 사용되어지는 자동 장치

6) 개인 또는 법인의 사업장은 국세청장이 현실 상황에 의하여 정한다.

2A. 납세의무의 발생과 소멸

- 3) BUT를 통해 영업/활동을 시작할 때 납세 의무가 발생되며 BUT를 통해 영업 / 활동을 중지할 때 소멸된다.

상기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상기 규정에서 고정사업장 issue 가 되는 사례를 보면

한국에 본사를 둔 A업체가 인도네시아 B업체에 물건을 수출을 하였다.
그런데 A업체는 인도네시아에 지사를 두고 있다.

이럴 경우 한·인니 조세협정을 보면 건설업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기타의 경우에는 3개월 이상으로 영업활동을 할 경우 인도네시아에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 지사 설립을 하는 경우 최소 1년 이상 상주되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세무 당국에서는 한국의 A업체와 인도네시아 B업체가 직거래를 하였더라도 인도네시아 지사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고정사업장 issue에 대해 주의가 필요로 하겠다.

15. 영세, 중소기업장에 대한 최종분리과세

정부령 23호 (Peraturan Pemerintah Nomor 23 Tahun 2018)

Tax Treatment for Micro, Small, Medium Enterprises

Subject	Object	Tax Pay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dividual taxpayer Cooperative, CV, Firms Limited Company with annual turnover no more than Rp4.8billion Exemption: <ol style="list-style-type: none"> Taxpayers who opt-out (impose on non-final regime); Corporate taxpayers that receive tax incentives, such as: <i>Tax Holiday</i> and <i>Tax Allowance</i>; PE; or CV, Firms: <ul style="list-style-type: none"> Formed by several self-employed; and Provide services as same as the type of the skill. 	Annual turnover no more than Rp4.8billion Exemption: <ol style="list-style-type: none"> Income from self-employment Income from abroad Income that imposed on final regime regulated by Government Regulation Exempt from income tax 	Final tax = 0,5% X turnover
		Information Letter
		If Taxpayers opt-out
		Payment
		Self-paid; or Withholding tax mechanism
		Notice Letter
		If Taxpayers earn income from Withholders



영세, 중소기업자에 대한 최종분리과세 개정안이 2018년 6월 8일 정부령 23호 발표되어 동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종전 2013년 7월 1일 시행된 정부령 46호 (Peraturan Pemerintah Nomor 46 Tahun 2013)에 대한 개정안으로 이전에는 직전년도 매출액이 48억 루피아 이하인 경우 매출액의 1%의 세금만 납부함으로써 Final Tax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었는데 개정안에는 세율이 종전 1%에서 0.5%로 인하되었고 적용 기간에 대한 혜택이 추가되었다.

<제 2 조>

- (1) 일정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는 국내의 납세자가 수취 또는 획득하는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동안 소득세 최종 분리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 (2) 위 (1)의 최종 분리과세 세율은 0.5% 이다.
- (3) 위 (1)의 사업소득에 다음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a. 개인납세자가 자유직업 서비스로부터 수취 또는 획득하는 소득
 - b. 국외에서 수취 또는 획득된 소득으로 국외에서 과세되거나 납부된 경우
 - c. 다른 조세 법령에 따라 이미 최종 분리과세된 소득
 - d.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
- (4) 위 (3)의 자유직업 서비스는 다음을 포함한다.
 - a.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Arsitek), 의사, 컨설턴트, 공증인(notaris), 부동산중개사 (PPAT), 감정평가사(Penilai), 보험계리사(Aktuaris) 등 전문직 사업자
 - b. 연주가, 사회자, 가수, 코미디언, 영화 배우, 드라마 배우, 광고 배우, 연출가, 영화 감독, 사진 모델, 모델, 무용수
 - c. 체육인
 - d. 고문, 교사, 코치, 강사
 - e. 작사, 작곡가, 연구사, 통역사
 - f. 광고 에이전트
 - g. 프로젝트 감독, 관리자
 - h. 브로커
 - i. 물품 행사 (petugas penjaja barang dagangan)
 - j. 보험 에이전트
 - k. 다단계 마케팅 (distributor perusahaan pemasaran berjenjang) 또는 직접 판매 및 기타 유사한 활동

<제 3 조>

(1) 상기 2.(1)의 일정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여 최종 분리과세 적용이 가능한 납세자란

- a. 개인납세자
- b. 법인납세자(조합, 파트너십, 주식회사 등)

1 과세기간에 48억 루피아 이하의 소득을 수취 또는 획득한 납세자를 말한다.

(2) 다음의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a. 납세자가 소득세법 제 17 조 (1).a, 제 17 조 (2a), 또는 제31E의 세율 적용을 선택한 경우

b. 전문성을 가진 개인납세자 몇몇으로 구성된 파트너십 형태의 법인납세자가 상기 2.(4)의 자유직업 서비스와 같은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c. 법인납세자가 다음에 따른 세금 혜택을 받는 경우

1. 소득세법 제31A조

2. 과세소득 계산 및 소득세 납부에 관한 정부령 Peraturan Pemerintah Nomor 94 Tahun 2010 및 그 개정. 대체 규정

d. 고정사업장인 납세자

(3) 위 (2).a의 납세자는 국세청장에게 통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위 (3)의 납세자는 이후 과세연도에 동 정부령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5) 위 (3)의 통보서에 관하여는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제 4 조>

(1) 상기 3.(1)의 일정 매출액이란 직전 과세연도의 1년간의 매출액을 말하며 사업으로부터의 발생한 매출액 총액에 의해 결정되고 지점 매출액을 포함함

(2) 개인납세자가 부부관계이면

- a. 서면으로써 재산과 소득을 구분
- b. 부인이 독자적으로 세금에 관한 권리 의무를 이행하기로 한 경우
소득세법 8조 2항 b와 c 로 남편과 부인의 매출액을 합하여야 한다.

<제 5 조>

(1) 상기 2.(1)의 소득세 최종 분리과세 적용 기간은 다음과 같다.

- a. 개인납세자 최장 7년
- b. 법인납세자(조합, 파트너십 등) 최장 4년
- c. 법인납세자(주식회사) 최장 3년

(2) 위 (1)의 적용 기간은

- a. 동 정부령 시행 이후 등록한 납세자는 납세자 등록 과세연도부터
- b. 동 정부령 시행 이전 등록한 납세자는 동 정부령이 시행되는 과세연도부터 기산된다.

<제 6 조>

(1) 매 월의 사업소득 매출액이 소득세 최종 분리과세에 적용되는 과세표준이 된다.

(2) 과세표준이 되는 매출액은 사업으로부터 수취되거나 획득된 대가 및 현금 등의 가액을 말하며 매출할인, 현금할인 또는 이와 유사한 할인을 차감하기 전 금액

(3) 납부할 세액은 0.5%에 위 (1)의 과세표준을 곱하여 계산한다.

<제 7 조>

- (1) 요건을 충족했던 납세자가 진행 중인 과세연도에 매출액이 48억 루피아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 말까지는 0.5%의 세율이 적용된다.
- (2) 위 납세자가 이후 과세연도에 수취 또는 획득하는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 17 조 (1)a, 제 17 조 (2a), 또는 제 31E 조의 세율이 적용된다.

<제 8 조>

- (1) 상기 6.(3)의 납부할 세액은 다음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 a. 납세자 자진납부
 - b. 원천징수의무자로 지정된 상대방과 거래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 (2) 위 (1).a의 자진납부는 매월 이루어져야 한다.
- (3) 위 (1).b의 원천징수는 납세자와의 매 거래 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 (4) 위 자진납부 및 원천징수 방법에 관하여는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제 9 조>

- (1) 납세자가 상기 8.(1).b과 같이 원천징수의무자와 거래하는 경우 납세자는 신청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 국세청장은 위 (1)에 근거하여 해당 납세자가 동 정부령의 적용을 받는다는 증명서를 발행한다.
- (3) 위 (1), (2)의 신청서 제출과 증명서 발급 방법에 관하여는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제 10 조>

(1) 2018 과세연도 초부터 동 정부령이 시행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종전 규정인 Peraturan Pemerintah Nomor 46 Tahun 2013에 따른 요건은 충족하였으나 동 정부령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납세자의 경우에는 다음을 따른다.

1. 과세연도 초부터 동 정부령 시행 전까지 수취되거나 획득된 상기 2.(1)의 사업 소득에 대해서는 매월 매출액에 1%의 세율을 적용
2. 동 정부령 시행 시부터 2018 과세연도 말까지 수취되거나 획득된 상기 2.(1)의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매월 매출액에 0.5%의 세율을 적용
3. 2019 과세연도 시작부터 수취되거나 획득된 상기 2.(1)의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 17조 (1)a, 제 17 조 (2a), 또는 제 31E 조의 세율을 적용

<제 11 조>

종전 규정인 Peraturan Pemerintah Nomor 46 Tahun 2013은 동 정부령 시행과 함께 폐지한다.

<제 12 조>

동 정부령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6. Tax Holiday (재무부장관령 35호)



Tax facilities provided

100% reduction in corporate income tax liability for minimum investment of IDR 500 billion

Minimum 5 years to maximum 20 years tax holiday period

Tax Holiday is exercised at the starting point of commercial production stage

2018년 4월 4일 세금 면제 혜택을 담은 Tax Holiday 가 재무부장관령 35호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35 / PMK.010 /2018)로 공포되었다.

면제 기간(Tax Holiday)과 혜택은?

(2 조 2항) 법인세 100% 면제

(2 조 3항)

- a. 5,000억 ~ 1조 루피아 출자 시 5년간 법인세 면제
- b. 1조 ~ 5조 루피아 출자 시 7년간 법인세 면제
- c. 5조 ~ 15조 루피아 출자 시 10년간 법인세 면제
- d. 15조 ~ 30조 루피아 출자 시 15년간 법인세 면제
- e. 30조 루피아 이상 출자 시 20년간 법인세 면제

(2 조 4항) 상기 면제기간 완료 후 추가 2년간 법인세 50% 감면

해당 조건은?

(3 조 1항)

- a. 선도 산업(Industri Pionir)
- b. 신규 투자(penanaman modal baru)
- c. 최소 5,000억 루피아 이상의 출자 계획
- d. 법인세 산출 목적상 재무부장관령에 언급된 부채, 자본 비율에 관한 규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 e. 재무부장관이 법인 소득세 감면 거부 결정 또는 통고에 대한 결정을 받지 않아야 한다.
- f. 인도네시아의 법인체

그러면 3 조 1항에 언급한 선도산업이란?



(3 조 2항)

- a. 상류 기초 금속산업 (Industri logam dasar hulu) (비철 및 강철)
- b. 석유 및 가스의 정제 / 정유 산업
- c. 석유, 천연가스 또는 석탄을 기반으로 하는 석유 화학 산업
- d. 무기(anorganik)의 기초 화학 산업 (Industri kimia dasar anorganik)
- e. 농업, 농장 또는 임업에서 파생된 유기(organic) 기초 화학 산업
- f. 제약 원료 산업 (industry bahan baku farmasi)
- g. 컴퓨터 제조산업과 통합된 반도체 제조 산업 , 컴퓨터 주요 부품 제조 산업
(웨이퍼 반도체, 액정 디스플레이(LCD)용 백라이트, 전기 드라이버)
- h. 스마트폰 제조업과 관련한 통신 장비의 핵심 부품 제조 산업
- i. 보건장비 주요 부품 제조산업으로써 방사선, 전기치료, 또는 전기요법 장비 제조 산업
- j. 전기 모터, 내연 모터와 같은 산업기계 주요 부품 제조산업으로써 기계 제조산업

- k. 피스톤, 실린더 헤드, 실린더 블록과 같은 기계 주요 부품 제조산업으로 4륜 이상의 엔진을 장착한 차량 제조산업
- l. 로봇부품 제조산업으로써 생산기계 제조산업
- m. 선박 주요 부품 제조산업으로써 선박 제조산업
- n. 엔진, 프로펠러, 로우터, 구조적 부품과 같은 항공기 주요 부품 제조산업으로 항공기 제조산업
- o. 엔진, 트랜스미션 등과 같은 기차 주요 부품 제조산업으로써 기차 제조산업
- p. 전력 발전소 기계 산업으로 폐기물 발전소 기계 산업을 포함
- q. 경제 인프라 스트럭처

신청절차는?

(4 조 1항) 납세의무자는 신규 투자에 대한 상업 생산 시점 이전에 투자조정청장에게 법인 소득세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하며

- a. 투자 등록 신청과 함께 또는
- b. 투자 등록 허가로부터 늦어도 1년 이내 신청하여야 한다.

(4 조 2항) 신청 기준에 부합하는지는 투자조정청이 결정한다.

(4 조 3항) 납세의무자의 신청이 신청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투자조정청장은 법인 소득세 감면 승인 제안서에 다음을 첨부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한다.

- a. 납세의무자 신청서 사본
- b. 신규 투자 등록 및 투자 계획 상 고정 자본 세부사항 사본
- c. 주주의 재정 증명 서류

(4 조 4항) 납세의무자의 신청이 신청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투자조정청장은 그 사유를 달아 납세의무자에게 신청서를 반환한다.

처리 절차는?

(5 조 1항) 납세의무자가 위 3 조 2항에 열거 되지않은 산업에 대해 법인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으나 위 3 조 1항. B.~f.를 충족하였고 동 산업이 선도산업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경우에는 관련 부처간 토의를 한다.

(5 조 2항) 동 산업이 선도산업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토의는 투자조정청이 주재하며 최소한 재무부와 관련 부처를 포함시키도록 한다.

(5 조 3항) 관련 부처 토의를 통해 납세의무자의 산업 범위가 선도산업으로써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결정된 경우 투자조정청장은 재무부에 이를 제안할 수 있다.

결정절차는?

(6 조 1항) 법인 소득세 감면 승인은 4 조 3항 및 5 조 3항에 따른 투자조정청장의 제안을 고려하여 재무부가 결정한다.

(6 조 2항) 상기 재무부의 결정은 투자조정청장의 제안이 완벽하고 정확한 상태로 접수된 때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이루어진다.



현장 조사에 대해서 ?

(7 조 1항) 법인 소득세 감면 혜택은 상업 생산 시점의 과세연도부터 부여된다.

(7 조 2항) 상업 생산 시점은 현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세청이 정한다.

(7 조 3항) 현장 조사는 국세청이 투자조정청으로부터 서면 통지(납세의무자의 상업 생산 시점 결정 요청에 대한 통지)를 받은 후 실시된다.

(7 조 4항) 현장 조사는 다음을 포함한다

- a. 상업 생산 시작일
- b. 상업 생산 시작 시 신규 투자 실현 총액
- c. 주요 사업활동 계획과 투자 실현 간의 부합성

감면 취소

(9 조 1항) 다음의 경우 감면 결정이 취소된다.

- a. 상업 생산 시점에 투자 실현액이 5천억 루피아 미만인 경우
- b. 주요 사업활동 계획과 실재 현황이 부합하지 않는 경우
- c. 중고 자본재를 수입 또는 구입하는 경우. 단, 중고 자본재가 전체로써 재배치되는 경우로써 다른 국가로부터의 하나의 신규 투자 패키지에 해당하고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경우 및 납세의무자가 정부로부터 국가 전략 계획을 수행하는 임무를 부여 받은 경우는 제외
- d. 법인 소득세 감면 혜택 기간 중 주요 사업활동 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 e. 법인 소득세 감면 혜택 기간 중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단, 효율성 증진 목적이며 신규 투자 실현 총액이 신규 투자 계획보다 작아지지 않는 경우 제외
- f. 신규 투자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보고 의무는 ?

(10 조 1항) 재무부로부터 법인 소득세 감면 결정을 받은 납세의무자는 국세청장에게 매해 다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a. 재무부로부터 결정을 받은 때로부터 상업 생산 시점까지 투자 실현 보고서
- b. 상업 생산 시점의 과세연도부터 법인세 감면 혜택 종료시까지 생산 실현 보고서

(10 조 2항) 상기 보고서는 해당 과세연도가 종료한 날로부터 최대 30일 이내 제출되어야 한다.

적용 기간

(14 조) 동 재무부 장관령이 시행되는 때로부터 5년간 투자조정청장은 재무부에 대해 4.(3) 및 5.(3)의 제안을 할 수 있다

경과 조치

(16 조 1항) 종전 규정에 의해 법인 소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고 있는 납세의무자는 감면 기간이 종료되는 때까지 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6 조 3항) 2015년 8월 16일부터 동 재무부령이 시행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종전 규정에 의해 투자조정청장이 재무부에 제출한 제안으로써 아직 재무부의 결정이 나지 않은 경우는 동 재무부령에 따른다

법안 발효일

(18 조) 2018년 4월 4일

17. Mini Tax Holiday

앞에 언급한 Tax Holiday 는 5천억 루피아 이상의 신규투자에 대해서 혜택을 부여하는데 재무부령 Nomor 150/PMK.010/2018을 공포(시행일2018.11.27.)하여 1천억 루피아 1천억 루피아 이상 5천억 루피아 미만의 신규 투자에 대해서도 납부할 법인 소득세 총액의 50% 감면 혜택 부여(기존에는 5천억 루피아 이상의 신규 투자부터 혜택 부여)하게 되었다. 선도산업의 범위에 농업, 작물재배, 펄프 생산 임업 생산물에 기반한 가공 산업과 데이터 가공, 호스팅, 이와 연관된 활동을 포함하는 디지털 경제를 추가(총 18개)하였고 온라인 통합 인허가 시스템을 통한 처리절차 규정하고 있다.

세부 내용으로는

1. 정의

- (1) 선도산업(Pioneer Industry)이란 광범위한 연계성을 가지며 가치 창출과 높은 외부효과가 있고 신기술을 소개하며 국가경제에 전략적 가치를 지니는 산업을 말함
- (2) 주요 사업 활동이란 기본 허가, 투자 허가, 투자 등록, 또는 법인 소득세 감면 신청 시의 사업 허가에 기재된 사업영역과 생산분야를 말함
- (3) 상업생산 시점이란 주요 사업 활동으로부터의 최초 생산품이 시장에 판매되거나 계속 생산을 위하여 자가 사용되는 때를 말함
- (4) 온라인 통합 인허가(OSS)란 OSS 기관이 장관, 기관장, 주지사, 군수/구청장 명의로 통합 전자시스템을 통해 사업자에게 인허가를 발급하는 것을 말함
- (5) OSS 기관이란 투자 조정 분야에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부처 소속이 아닌 정부기관을 말함

2. 감면 혜택

- (1) 선도산업에 신규 투자하는 법인 납세자는 주요 사업 활동으로부터 수취 또는 획득되는 소득에 대한 법인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음
- (2) (1)의 신규 투자는 최소 1천억 루피아를 말함
- (3) (1)의 법인 소득세 감면은 다음과 같이 주어짐
 - a. 신규 투자 5천억 루피아 이상은 납부할 법인 소득세 총액의 100%
 - b. 신규 투자 1천억 루피아 이상 5천억 루피아 미만은 납부할 법인 소득세 총액의 50%
- (4) (3).a의 법인 소득세 감면기간은 다음과 같다
 - a. 신규 투자 계획 금액 5천억 루피아 이상 1조 루피아 미만 : 5년
 - b. 신규 투자 계획 금액 1조 루피아 이상 5조 루피아 미만 : 7년
 - c. 신규 투자 계획 금액 5조 루피아 이상 15조 루피아 미만 : 10년
 - d. 신규 투자 계획 금액 15조 루피아 이상 30조 루피아 미만 : 15년
 - e. 신규 투자 계획 금액 30조 루피아 이상 : 20년
- (5) (3).b의 법인 소득세 감면기간은 5년임
- (6) (4) 또는 (5)의 법인 소득세 감면기간이 끝난 후, 납세자는 다음과 같이 법인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음
 - a. (3).a의 신규 투자에 대해서는 이후 2년간 납부할 법인 소득세의 50%
 - b. (3).b의 신규 투자에 대해서는 이후 2년간 납부할 법인 소득세의 25%

3. 감면 요건

- (1) 법인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a. 선도산업일 것
- b. 인도네시아 법상의 법인일 것
- c. 법인 소득세 감면 결정 또는 거부 통보를 아직 받지 않은 신규 투자일 것
- d. 최소 1천억 루피아의 신규 투자 계획을 가질 것
- e. 소득세 계산 목적으로 재무부령으로 규정된 부채-자본 비율(현행 4:1)을 충족할 것

(2) 선도산업은 다음을 포함함

- a. 업스트림 기초 금속산업(철강 및 비철강)
- b. 석유 및 가스 정제, 정련산업
- c. 석유, 가스, 석탄에 기초한 석유화학산업
- d. 농업, 작물재배업, 임업에 기반한 유기 기초 화학산업
- e. 무기 기초 화학산업
- f. 제약 주요 원재료산업
- g. 방사선, 전기치료, 전기요법 장비 제조산업
- h. 반도체 웨이퍼, LCD 백라이트, 엘렉트로닉 드라이버, 디스플레이와 같은 전자.
컴퓨터통신장비 주요 부품 제조산업
- i. 기계 및 기계 주요 부품 제조산업
- j. 기계 제조산업을 뒷받침하는 로보틱스 부품 제조산업
- k. 발전기 주요 부품 제조산업
- l. 엔진 달린 차량 및 엔진 달린 차량의 주요 부품 제조산업
- m. 선박 주요 부품 제조산업
- n. 기차 주요 부품 제조산업
- o. 항공기 및 항공산업 지원 영역 주요 부품 제조산업
- p. 농업, 작물재배, 펄프 생산 임업 생산물에 기반한 가공산업
- q. 경제 인프라 스트럭처
- r. 데이터 가공, 호스팅, 이와 연관된 활동을 포함하는 디지털 경제

- (3) 선도산업의 사업분야와 유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경제조정부가 주관하는 회의 결과에 기초하여 투자조정청령으로 정한다.
- (4) 법인이 내국 납세자에 의해 직접 소유되고 (1)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인은 정관에 기재된 모든 주주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였음을 제시하여야 한다.
- (5) 주주가 변경된 경우 (4)의 납세의무 이행 요건은 가장 최근의 정관에 기재된 주주에게만 적용된다.
- (6) (4) 또는 (5)의 주주의 납세의무 이행은 재정증명서류를 통해 입증된다.
- (7) 재정증명서류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국세청이 발급한다.

4. 진행 절차

- (1) 3.(1)의 요건 충족 여부의 결정은 OSS 시스템을 통해 진행됨
- (2) 신규 투자에 있어
 - a. 3.(1)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OSS 시스템은 납세자에게 법인 소득세 감면 혜택의 요건을 충족함을 통보
 - b. 3.(1)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OSS 시스템은 납세자에게 법인 소득세 감면 혜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통보
- (3) 납세자가 (2).a의 통보를 받은 경우, 납세자가 다음의 형태로 3의 요건들을 제출하였다면 납세자는 법인 소득세 감면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됨
 - a. 투자 계획 상 고정재산 명세 및 부채-자본 비율에 대한 소프트카피
 - b. 모든 주주의 재정 증명서 소프트카피 또는 전자서류 신규 투자의 상업생산 시점 전에 OSS 시스템을 통해 제출
- (4) (3)의 법인 소득세 감면 신청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짐

- a. 신규 납세자는 사업기본번호(Nomor Induk Berusaha)를 받기 위한 등록과 함께
 - b. 신규 투자를 위한 사업 허가 발급 이후 늦어도 1년 이내
- (5) 완전하게 접수된 (3)의 소득세 감면 신청은 법인 소득세 감면 승인 제안으로써 OSS 시스템에 의해 국세청장을 거쳐 재무부장관에게 보내지며, OSS 시스템은 납세자에게 법인 소득세 감면 신청이 재무부장관에게 전달되었음을 통보함

5. 선도산업으로 열거되지 않은 경우

- (1) 납세자가 3.(2)의 선도산업에 포함되지 아니한 산업에 대해 법인 소득세 감면 신청을 하였으나 3.(1). b~e와 3.(6)을 충족하고 동 산업이 선도산업에 해당됨을 설명하는 경우에는 동 신청에 대해 관련 부처간 토의를 함
- (2) 동 산업이 선도산업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토의는 투자조정청이 주재하며 최소한 재무부와 관련 부처/기관을 포함함
- (3) 관련 부처 토의를 통해 납세자의 산업이 선도산업으로써 요건을 충족한다고 결정된 경우 투자조정청장은 국세청장을 거쳐 재무부장관에게 이를 제안할 수 있음
- (4) (3)의 투자조정청장의 제안은 OSS 시스템을 통해 진행됨

6. 감면 결정

- (1) 재무부장관은 4.(5) 및 5.(3)의 제안을 받은 후 법인 소득세 감면 승인 여부를 결정함
- (2) (1)의 법인 소득세 감면 승인은 재무부장관의 명의로 국세청장에게 위임됨
- (3) (2)의 결정은 완벽하고 정확한 형태로 법인 소득세 감면 제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5 영업일 이내 이루어짐

- (4) 재무부장관으로부터 (2)의 위임을 받은 국세청장은
 - a. 관련 법령에 주의하여야 하고
 - b. 권한의 집행에 실질적인 책임이 있으며
 - c. 위임받은 권한을 다른 자에게 위임할 수 없음

7. 현장조사

- (1) 법인 소득세 감면 혜택은 상업생산 시점의 과세연도부터 부여됨
- (2) 상업생산 시점은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세청장이 정함
- (3) 현장조사는 국세청장이 투자조정청장으로부터 납세자의 상업생산 시점 결정 신청과 관련한 통지를 받은 후 실시됨
- (4) 현장조사는 다음을 포함
 - a. 상업생산 시작일
 - b. 상업생산 시작 시 신규 투자 실현 총액
 - c. 주요 사업활동 계획과 투자 실현 간의 부합성
- (5) 현장조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장 규정으로 정함

8. 국가 전략계획 집행 관련 납세자

- (1) 국가 전략계획 집행 가속화(Percepatan Pelaksanaan Proyek Strategis Nasional)와 관련하여 법령에 따라 정부의 임무를 부여받은 납세자는 3의 요건을 충족하고 다음 조건에 따르는 경우 법인 소득세 감면 신청을 할 수 있음
 - a. 법인 소득세 감면 신청 시 4.(1)을 적용 받지 않음
 - b. 상업생산 시점을 충족하고 4.(3)의 문서에 부합하게 모든 투자 계획을 기 실현한 경우 납세자에게 법인 소득세 감면 이용이 시작됨

- c. b의 법인 소득세 감면 이용은 현장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국세청장이 결정함
- d. c의 현장조사는 국세청장이 투자조정청장으로부터 법인 소득세 감면 이용 신청에 관한 통지를 받은 후 실시됨
- e. c의 결정은 최소한 다음을 포함함

1. 상업생산 시작일과 전체 신규 투자 계획 실현일
2. 신규 투자 실현 총액
3. 주요 사업활동 계획과 투자 실현 간의 부합성

(2) (1)의 임무부여는 부령 또는 동급 기관령에 근거한 임무부여를 말함

(3) (1).c의 법인 소득세 감면 이용과 관련한 현장조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장 규정으로 정함

9. 감면 금액과 기간 조정

7.(2)와 8.(1).c의 현장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다음의 경우가 밝혀지는 경우 법인 소득세 감면 금액과 기간은 2.(3) 및 2.(4)에 따라 납세자에게 주어져야 하는 법인 소득세 감면 금액과 기간으로 조정됨

- a. 신규 투자 실현 총액이 신규 투자 계획 최소 기준보다 작은 경우
- b. 신규 투자 실현 총액이 1천억 루피야 또는 그 이상인 경우
- c. 주요 사업활동과 실현이 부합하는 경우

10. 보고의무

(1) 재무부장관으로부터 법인 소득세 감면 결정을 받은 납세자는 매해 국세청장과 재정정책국장에게 다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a. 재무부장관으로부터 법인 소득세 감면 결정을 받은 때로부터 상업생산 시점까지 투자 실현 보고서 (국가 전략계획 집행 가속화와 관련하여 법령에 따라 정부의 임무를 부여 받은 납세자의 경우는 전체 투자 계획이 실현된 시점까지)
- b. 상업생산 시점의 과세연도부터 법인 소득세 감면기간 종료시까지 생산 실현 보고서(국가 전략계획 집행 가속화와 관련하여 법령에 따라 정부의 임무를 부여 받은 납세자의 경우는 법인 소득세 감면 혜택 이행 과세연도부터 감면기간 종료 시까지)

(2) 상기 보고서는 해당 과세연도가 종료한 날로부터 최대 30일 이내 제출되어야 함

(3) 보고 절차에 관한 자세한 규정은 국세청장 규정으로 정함

11. 감면 취소

(1) 다음의 경우 감면 결정이 취소됨

- a. 7.(2) 또는 8.(1).c의 현장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신규 투자 실현액이 1천억 루피아 미만인 경우
- b. 7.(2) 또는 8.(1).c의 현장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주요 사업활동 계획과 실제 현황이 부합하지 않는 경우
- c. 중고 자본재를 수입 또는 구매하는 경우. 단, 중고 자본재가 전체로써 재배치되는 경우로써 다른 국가로부터의 하나의 신규 투자 패키지에 해당하고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경우 및 납세자가 국가 전략계획 수행 임무를 부여받은 경우는 제외
- d. 법인 소득세 감면기간 중 주요 사업활동 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 e. 법인 소득세 감면기간 중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단 효율성 증진 목적이며 신규 투자 실현 총액이 신규 투자 계획보다 작아지지 않는 경우는 제외
- f. 신규 투자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2) (1).a와 b의 감면 취소는 재무부장관의 명의로 국세청장이 결정함

- (3) (1).c~f의 감면 취소는 재정정책국의 의견을 받은 후 재무부장관의 명의로 국세청장이 결정함
- (4) (3)의 감면 취소의 경우 기 혜택을 받은 법인 소득세 감면분은 환수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를 받고 다시 법인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함
- (5) (2)및 (3)의 법인 소득세 감면 취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장 규정으로 정함

12. 기장과 원천징수

- (1) 법인 소득세 감면을 받은 납세자는
 - a. 법인 소득세 감면을 받은 소득과 그렇지 않은 소득을 구분하여 기장하여야 함
 - b. 관련 법령에 따라 상대방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2) (1).a의 납세자로서 과세소득 계산 시 구분되지 않는 공통비용이 있는 경우 비례적인 방법으로 구분함
- (3) 법인 소득세 감면기간 동안 주요 사업 활동으로부터 수취되거나 획득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원천징수 면제 증명서의 발급 없이도 원천징수를 하지 않음
- (4) 주요 사업활동 이외로부터 수취되거나 획득된 소득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가 이루어짐

13. 국세청장의 보고

국세청장은 매 분기 재무부장관에게 법인 소득세 감면 집행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14. 공지 및 평가

동 재무부령에 따른 법인 소득세 감면 혜택은 주기적으로 공지되고 평가됨

15. 중복 혜택 배제

- (1) 동 재무부령에 따라 법인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 신규 투자에 대해서는 정부령에 따른 특정 사업분야 및 특정 지역 투자에 대한 소득세 혜택은 적용되지 아니함
- (2) 동 재무부령에 따른 재무부장관의 법인 소득세 감면 혜택 결정을 받지 못한 신규 투자에 대해서는 정부령에 따른 특정 사업분야 및 특정 지역 투자에 대한 소득세 혜택의 적용이 가능함
- (3) 위 (1)과 (2)는 아래의 납세자에게도 적용됨
 - a. 법인 소득세 감면 또는 면제 혜택 부여에 관한 재무부령 Nomor 130/PMK.011/2011 및 그 개정령인 Nomor 192/PMK.011/2014을 근거로 법인 소득세 감면 또는 면제 혜택을 받은 납세자
 - b. 법인 소득세 감면 혜택 부여에 관한 재무부령 Nomor 159/PMK.010/2015 및 그 개정령인 Nomor 103/PMK.010/2016을 근거로 법인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납세자
 - c. 법인 소득세 감면 혜택 부여에 관한 재무부령 Nomor 35/PMK.010/2018을 근거로 법인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납세자

16. 적용기간

동 재무부령에 근거한 법인 소득세 감면은 동 재무부령이 발효된 때로부터 5년 내에 제출된 4.(5) 및 5.(3)의 제안에 대해서 주어짐

17. 경과규정

- (1)~(3) 종전 규정(재무부령 Nomor 130/PMK.011/2011, Nomor 192/PMK.011/2014, Nomor 159/PMK.010/2015, Nomor 103/PMK.010/2016, Nomor 35/PMK.010/

2018)에 의해 법인 소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고 있는 납세자는 그 법인 소득세 감면기간이 종료되는 때까지 감면 혜택을 계속 받음

- (4) 2018년 4월 4일부터 동 재무부령이 시행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종전 규정에 의해 투자조정청장이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한 제안으로써 아직 법인 소득세 감면 승인에 관한 재무부장관의 결정이 나지 않았거나 서면으로 거부 통보가 전달되지 않은 경우는 종전 규정인 재무부령 Nomor 35/PMK.010/2018을 따름
- (5) 종전 규정인 재무부령 Nomor 159/PMK.010/2015 및 그 개정령인 Nomor 103/PMK.010/2016이 발효된 이후부터 동 재무부령이 발효되기 전까지 투자조정청장으로부터 기본 허가, 투자 허가, 투자 등록 또는 사업 허가를 받은 납세자는 동 재무부령에 근거하여 투자조정청장에게 법인 소득세 감면 신청을 할 수 있음, 단, 직전 규정인 재무부령 Nomor 35/PMK.010/2018를 따르는 3.(2)의 선도산업 범위 충족 부분은 제외함.
- (6) (4)와 (5)의 법인 소득세 감면 혜택 제안을 위한 법인소득세 감면 혜택 신청 방법은 투자 혜택과 허가 방법 및 지침에 관한 투자조정청장령에 부합하게 실시됨
- (7) 9는 종전 규정인 재무부령 Nomor 35/PMK.010/2018에 근거하여 법인 소득세 감면을 받는 납세자에게도 적용됨

18. 종전 규정의 폐지

동 재무부령이 유효하게 된 때 재무부령 Nomor 35/PMK.010/2018은 폐지됨

19. 시행일

동 재무부령은 공포된 날(2018.11.27.)부터 유효함.

18. 특정 산업 분야 및 특정 지역에 투자 시 소득세 조세혜택(Tax Allowance) 개정 (정부령 78호(PP No.78 /2019))

투자활동의 실현 가속화 촉진, 경제 성장, 특정 지역의 개발 촉진, 균형발전, 산업구조 개선 등의 목적으로 소득세 조세혜택(Tax Allowance)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부령을 개정하였다.

정부령 78호는 지난 2019년 11월 13일 공포되었고 2019년 12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금번에 개정된 정부령 78호는 종전 정부령 9호(PP No.9 / 2017)의 주요 내용을 유지 하면서 조세혜택 대상이 종전 145개에서 183개 (lampiran I 166개, lampiran II 17개) 로 늘렸고 OSS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종전 정부령과의 다른점으로 볼 수 있다.

기준과 조건은 PP No.78/2019를 구글 등에서 검색하여 lampiran I, II 로 확인이 가능하며, 상기 I.II의 분류표로 업종, 업종분류번호, 제품범위, 지역 등이 규정되어 있다.

전제 조건은 대규모 투자 또는 수출 목적의 투자, 높은 수준의 고용 창출, 높은 수준의 로컬 콘텐츠 사용이 전제 조건이라 하겠다.

조세혜택은 아래와 같다.

- 종전 규정을 유지하여 토지를 포함한 유형 고정 자산 형태의 투자에 대해 총액의 30%까지 순 수익에서 감면, 생산초기부터 연간 5%씩 6년간 감면 받을 수 있다. 금번 개정령은 유형자산이 신규자산이고(다른 나라로부터 완전히 재배치 되는 경우 제외) 기본허가, 투자허가, 투자등록, 또는 사업허가에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납세자가 직접 소유하고 주요사업활동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되었다.
- 종전과 같이 감가상각은 가속상각이 인정된다.
- 종전과 같이 외국인 주주 배당 세율은 10% 또는 조세협정 세율 중 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 종전 규정을 유지하여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은 5년에서 최대 10년까지지만 적용 연장 기한에 대해서는 일부 개정되었다.

신청절차는 OSS 시스템에서 신청하며 상업생산 이전에 신청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납세자가 NIB(Nomor Induk Berusaha)를 신청하는 시점 또는 OSS에서 신규 사업허가를 발급받는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 또한 통합경제 개발구역(Kawasan Pengembangan Ekonomi Terpadu)에 대한 조세혜택, PP Nomor.45 2019에 따른 Tax Holiday혜택, PP Nomor.45 2019에 따른 노동집약산업에 대한 조세혜택과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

19. 퇴직급여 충당금

인도네시아 소득세법 (UU No36 / Tahun 2008) 제 9 조 3항에 충당금 설정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비용인정을 받을 수 없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예외규정으로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보험회사충당금, 예금보험기관의 충당금, 광업 회사의 복구충당금, 조림회사의 재투자 적립금, 산업폐기물 처리회사의 처리장 폐쇄 및 복구관련 충당금만 인정이 된다.

따라서 퇴직급여 충당금은 법인세법상 비용인정을 받지 못하는 항목으로 회계처리시 퇴직급여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였다면 충당금으로 설정한 퇴직급여에 대한 비용은 세무조정하여 손금 불산입하여야 한다.

회계처리와 관련하여서는 인도네시아 기업회계기준 (PSAK) 24 조에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하여 연금계리사를 통하여 퇴직급여에 대하여 충당금을 설정하게 되어 있으나 중소기업 회계기준(ETAP)에는 퇴직충당금 적용의무가 없다. 또한, 회계 처리시 PSAK를 적용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였더라도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인니 세법에는 실제로 지급이 되었을 때 비용인정이 되므로 충당금으로 설정한 퇴직급여는 비용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세무조정하여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

20. 기부금의 손금산입(법인세 비용인정) 규정

I. 소득세법 (UU No.36 / 2008) 제 6 조 (1)항 i, j, k, l 및 m에서 기부금 및 총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비용은 아래와 같다.

- 국가 재난 관리의 맥락에서 기부
- 연구 및 개발의 맥락에서 기부
- 교육 시설에 대한 기부
- 스포츠 발전의 맥락에서 기부
- 사회 기반 시설 구축 비용

II. 다음은 2010년 정부령 (PP 93)에서 총소득에서 공제 할 수 있는 비용의 유형이다.

a. 국가 재난 관리의 맥락에서 기부

납세자는 국가 재난 피해자에게 기부하는 것과 관련하여 재난 관리 기관을 통해 직접 제출하거나 재난 구호 기금을 모금하기 위해 허가 된 기관 / 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기관이나 당사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2010 년 PP 93에서는 "국가 재난"이 의미하는 것은 자연적 요인 또는 비 자연적 요인 및 인명 피해를 초래하는 인적 요인으로 인해 생겨난 사람들의 삶과 생계를 위협하고 중단시키는 일련의 사건으로 환경 피해, 재산 손실, 심리적 영향 등이 포함된다.

한편, "재난 관리 기관"이란 의미는 재난 관리와 관련하여 2007년 법률 번호 24에 언급 된 국가 재해 관련 기부금을 수용, 배포 및 관리하도록 정부가 결정한 기관이다.

b. 연구 및 개발의 맥락에서 기부

법인 납세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수행하는 연구 개발을 위한 기부금은 인도네시아 공화국 영토 내에서 수행되어야 하며 납세자는 연구 개발 기관을 통해 이러한 기부금을 지급한다.

2010년 PP 93에서 "연구"가 의미하는 것은 과학 분야의 가정 및 가설의 진실 또는 가상 사실에 대한 이해 및 증거에 관한 정보, 데이터 및 정보를 얻기 위해 과학적 원리 및 방법에 따라 체계적으로 수행되는 활동으로 과학 기술의 진보와 예술 및 문화 분야의 연구를 포함하는 과학적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다.

"개발"은 기존 과학 기술의 기능, 이익 및 응용을 개선하거나 기술을 생산하는 데 올바른 것으로 입증된 과학 원리 및 이론을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과학 및 기술 활동으로 정의된다.

"연구 개발 기관"이란 공인 된 대학을 포함하여 인도네시아에서 연구 개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 된 기관을 의미한다.

c. 교육 시설에 대한 기부

교육 시설의 형태로 기부금을 제공하는 것은 교육 기관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교육 시설"은 예술 및 국가 문화의 교육, 스포츠 및 교육 프로그램 정착을 비롯한 교육 활동에 사용되는 인프라와 시설을 의미한다.

"교육 기관"이라는 용어가 스포츠, 예술 및 문화 교육을 포함한 교육 분야에 종사하는 기관인 반면, 초·중등 교육은 공인 된 교육 및 고등 교육 기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d. 스포츠 발전의 맥락에서 기부

스포츠 발전의 맥락에서 기부는 스포츠 코칭 기관을 통해 전달되는 지회 또는 공동 조직 / 유형의 성취 스포츠를 육성, 개발 및 조정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스포츠 코칭 기관" 이 의미하는 것은 지점 또는 공동 조직 / 유형의 스포츠 업적을 육성, 개발 및 조정하는 스포츠 조직이다.

"성취 스포츠"는 스포츠 과학 및 기술 지원을 통해 업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쟁을 통해 계획적이고 계층 적이며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선수를 양성하고 개발하는 스포츠이다.

e. 사회 기반 시설 구축 비용

사회 기반 시설을 개발하는데 드는 비용은 공공 및 비영리 목적의 시설 및 기반 시설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납세자가 1년 동안 총소득에서 공제 할 수 있는 기부금 및 비용 지출은 한도 금액으로 제한한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회 기반 시설 건설 비용은 사회 기반 시설의 과세 연도가 활용 될 수 있는 총소득에서 공제 될 수 있다. 1명 이상의 납세자가 사회 기반 시설을 개발하는 경우 총소득에서 공제 할 수 있는 사회 기반 시설을 개발하는 비용은 각 납세자가 부담하는 실제 비용이다. 사회 기반 시설을 개발하는 비용의 가치는 건물 시설 또는 기반 시설에 소요된 실제 금액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III. 기부금 총소득에서 공제 할 수 있는 조건

- 총소득에서 공제 할 수 있는 기부금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납세자는 전년도 연간 소득 신고서에 근거하여 순이익이 있어야 한다.
- 기부 및 수수료를 제공해도 연간 소득이 손실이 되면 안 된다.
- 유효한 증거 및 기부금 또는 수수료를 받는 기관은 소득세 법에 규정 된 세금 대상으로 제외된 단체를 제외하고는 납세자 식별 번호가 있어야 한다.

<사례 >

2014년 PT. Gunung Raya의 재정 순이익은 IDR 1,000,000,000.00 (10억 루피아)였고 2015년에 납세자는 IDR 40,000,000.00 (40,000,000 루피아)의 금액으로 스포츠 코칭 기관을 통해 스포츠 개발의 맥락에서 기부하였다. 2015년에 납세자는 IDR 30,000,000.00 (3천만 루피아)의 회계 순이익이 있다. 납세자는 2015년에 IDR 10,000,000.00 (천만 루피아)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부금을 총소득에서 공제 할 수 없다.

IV. 총소득에서 공제 할 수 있는 기부액 한도

위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조건 외에도 기부금의 가치 또는 총소득에서 공제 할 수 있는 사회 기반 시설 구축 비용과 관련된 다른 요구 사항이 있다.

<사례 >

2014년 납세자의 재정 순이익은 IDR 60,000,000,000.00 (600억 루피아)이므로 2015년 총소득에서 공제 할 수 있는 기부액의 최대 금액은 5 %인 IDR 3,000,000,000.00 (30억 루피아).

납세자가 2015년에 IDR 5,000,000,000.00 (50억 루피아)에 기부하였다면 총소득에서 공제 할 수 있는 금액은 IDR 3,000,000,000.00 (30억 루피아)에 불과하다.

IDR 2,000,000,000.00 (20억 루피아)의 차이에 대해 납세자에 대한 과세 소득 산정에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

V. 총소득에서 공제 받기 위한 기부금 양식

2010 년의 정부 규제 (PP) 번호 PP 93의 설명에서 “기부금”이 의미하는 것은 납세자가 수행하는 지원 조항이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국가 재해 관리의 맥락에서 기부
- 연구 개발의 맥락에서 기부
- 교육 시설 기증
- 스포츠 발전의 틀에서 기부
- 사회 기반 시설 구축 비용
- 기부금

VI. 기부금 수락을 증명하는 서류

기부금 및 수수료 수령증은 재무부 장관 규정 PMK 76 / PMK.03 / 2011 표본 형식에 따라 기부 양식을 사용하여 연간 소득세 신고 시 납세자가 첨부해야 한다.

<기부양식>

LAMPIRAN II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 76/PMK.03/2011
 TENTANG : TATA CARA PENCATATAN DAN
 PELAPORAN SUMBANGAN
 PENANGGULANGAN BENCANA
 NASIONAL, SUMBANGAN PENELITIAN
 DAN PENGEMBANGAN, SUMBANGAN
 FASILITAS PENDIDIKAN, SUMBANGAN
 PEMBINAAN OLAHRAGA, DAN BIAYA
 PEMBANGUNAN INFRASTRUKTUR
 SOSIAL YANG DAPAT DIKURANGKAN
 DARI PENGHASILAN BRUTO

TANDA BUKTI PENERIMAAN SUMBANGAN DAN/ATAU BIAYA

- A. Identitas Pemberi Sumbangan
1. Nama :
 2. Alamat :
 3. NPWP :
- B. Rincian Sumbangan
1. Jenis Sumbangan : Sumbangan Bencana Nasional, Sumbangan Pembinaan Olahraga, Sumbangan Fasilitas Pendidikan, Sumbangan Penelitian dan Pengembangan*)
 2. Bentuk sumbangan : Uang / Barang*)
 3. Nilai Sumbangan :
 4. Tanggal diterima :
- C. Identitas Penerima sumbangan
1. Nama Lembaga / Badan :
 2. NPWP :
 3. Alamat :
 4. No. Telp. Dan Faksimili :
- D. Khusus Infrastruktur Sosial*** :
1. Sarana / Prasarana Yang Diberikan :
 2. Lokasi***) :
 3. Biaya Pembangunan Infrastruktur Sosial :
 4. Ijin Mendirikan Bangunan :

Keterangan;

*) coret yang tidak perlu.

**) khusus infrastruktur sosial pemberi biaya infrastruktur sosial cukup mengisi bagian A dan D.

***) alamat lengkap lokasi sarana dan prasarana tersebut.

21. 노동집약산업에 대한 투자 소득공제, 교육 훈련비 및 연구개발비 비용공제 정부령 (정부령 45호)

과세대상 소득 계산 및 당해 연도 소득세 납부에 관한 정부령 94호(PP Nomor 94 tahun 2010)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되었다.

정부령 45호 (Peraturan Pemerintah nomor 45 tahun 2019)

<제 1 조>

2010년 정부령 94호중 일부 규정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1. 제 8장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8장) 법인소득세 감면 혜택, 자본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특정활동에 대한 비용공제 혜택

2. 제 29 조 (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9 조)

(1) 선도산업(Industri Pionir)에 신규 투자하는 납세자로서 소득세법 제31A조의 혜택을 받지 아니한 자는 투자법(Undang-Undang Nomor 25 2007) 제18조 (5)에 따른 법인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1)항에 언급한 선도산업이란 광범위한 연계성을 가지며 부가가치 창출과 외부 효과가 있으며 신기술을 소개하고 국가경제에 전략적 가치를 지니는 산업을 말한다.

3. 제 29 조와 제 30 조 사이에 29A, 29B, 29C의 3개 조항을 넣어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9A 조)

(1) 다음의 내국 법인납세자로서 신규 투자 또는 특정 사업분야에 사업확장을 하는 경우

- a. 노동집약적인 산업 및
- b. 소득세법 제 31A 조 또는 제 29 조 (1)의 혜택을 받지 아니할 것

주요 사업활동에 사용되는 토지를 포함한 유형고정자산 형태의 총 투자금액의 60%를 특정 기간 동안 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제 29B 조)

(1) 내국 법인납세자로서 특정 역량에 관하여 실무훈련, 인턴쉽, 또는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교육을 실시 하는 경우, 이에 지출된 총 비용의 최대 200%까지 총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2) (1)의 특정 역량이란 실무훈련, 인턴쉽, 또는 전략적 교육을 통해 노동력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인적자원 투자의 일부로써 노동력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실현 하고 사업, 산업이 필요로 하는 노동 수요 구조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제 29C 조)

(1) 내국 법인납세자로서 인도네시아에서 특정 연구, 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이에 지출된 총 비용의 최대 300%까지 특정기간 동안 총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2) (1)의 특정 연구. 개발 활동이란 발명, 혁신, 신기술 획득, 또는 기술 이전을 위해 인도네시아에서 행하여지는 연구. 개발 활동으로써 국가 산업경쟁력 향상과 산업 발전을 위한 것을 말한다.

(제 30 조)

상기 제 29 조 (1), 제 29A 조, 제 29B 조, 제 29C 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향후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제 2 조>

동 정부령은 공포된 날로부터 유효함

2019.6.25. 공포

자세한 사항은 향후 재무부장관령이 발효되어야 하겠지만 상기 정부령의 주요 내용은

- 1)노동집약산업에 투자 시 총 투자금액의 60%를 순이익에서 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 2)교육 훈련비 지출의 경우에는 최대 200%까지 총소득에서 비용으로 차감하고,
- 3)연구개발비 지출액의 경우 최대 300%까지 총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 하겠다.

22.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하는 세무 사항

PPh 및 Bea Perolehan Hak atas Tanah Dan Bangungan (UU BPHTB)

<과세대상>

토지 및 건물 소유권 이전

가. 소유권 이전

- 1) 매매
- 2) 교환
- 3) 증여
- 4) 유산
- 5) 상속
- 6) 주식회사법 등에 귀속
- 7) 변경에 의한 소유권 분할
- 8) 경매
- 9) 법원 판결에 의한 이행
- 10) 합병
- 11) 통합
- 12) 확장
- 13) 선물

나. 소유권 신규 구매

언급한 소유권(Hak)은

- 1) Hak Milik
- 2) Hak Guna Usaha (HGU)

- 3) Hak Guna Bangunan (HGB)
- 4) Hak Pakai
- 5) Hak Milik atas satuan rumah susun
- 6) Hak Pengelolaan

<세율>

양도인 : 예전에는 매매금액 및 공시지가(NJOP)중 높은 금액의 0%, 1%, 5%였으나 2016년 8월 8일 정부령 (Peraturan Pemerintah No.34/2016)이 공포되어 2016년 9월 7일부터 매매금액의 0%, 1%, 2.5%로 변경됨.

- 0%는 정부 토지 목적 또는 공익 건물 등의 거래 시
- 1%는 토지/건물이전을 사업(부동산업체)으로 하는 경우로 부가세 면제를 받는 소형 국민주택 혹은 소형 아파트 거래 시
- 2.5%는 0% 또는 1%에 해당되지 않는 거래 시

양수인 : 매매금액 및 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에서 지역별 공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5%이지만 서울은 지역별로 변경될 수 있음.

한국은 매도인이 부동산 매각 시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만, 인도네시아는 매매차익과 관계없이 매매금액의 2.5%를 납부하면 납세의무가 종료된다. 장단점은 있지만 한국의 경우 양도차익이 없고 손실일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지만, 인도네시아는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매매금액의 2.5%를 납부하여야 한다.

양수인이 취득 시 납부하는 5%의 세금은 취득세로 지방세에 해당이 되며,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지역별 공제 금액이나 서울에 차이가 있다.

23. 상속 및 증여세

한국은 상속 및 증여세법을 별도로 두어 상속과 증여에 대하여 높은 세율을 과세하는데, 인도네시아는 별도의 상속 및 증여세법을 두지 않고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된다.

소득세법 4조 3항은 비과세 소득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직계 1촌 내의 가족으로부터 증여 및 유산에 대해서는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직계 1촌 즉,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를 할 경우에는 비과세 소득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소득으로 증여 받는 납세자가 다른 소득과 합산하게 된다.

24. 자동차에 부과되는 특소세(PPnBM) 개정

정부는 에너지 절약 및 환경 친화적 차량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자동차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PPnBM)와 관련한 정부령 73호(Peraturan Pemerintah No.73 / 2019 (PP-73/2019))를 발표했다. 이번 정부령 73호는 2019년 10월 16일 발표되었지만 2021년 10월 16일부터 시행된다.

1. 특별소비세율 결정 사양

새로운 결정 사양은 연비, 이산화탄소 배출 수준 및 전력 기능으로 특별소비세(PPnBM) 세율도 차등화 하였고 승객 수, 배기량 및 기계 유형과 같은 기존 결정 사양 중 일부는 그대로 유지된다.

2. 특별소비세율(PPnBM) : 배기량 3000cc 이하

1. 이산화탄소 배출 수준

Motor Bakar Cetus Api & Motor Bakar Diesel atau Semi Diesel

- CO2 150 gram / km 배출 : 15%
- CO2 150gram ~ 200gram / km 배출 : 20%
- CO2 200gram ~ 250gram / km 배출 : 25%
- CO2 250gram 초과/ km 배출 : 40%

2. 연비기준

Motor Bakar Cetus Api

- 15.5km/liter 이상 : 15%
- 11.5km/liter~ 15.5km/liter : 20%
- 9.3km/liter~11.5km/liter : 25%
- 9.3km/lite 미만 : 40%

Moter Bakar Nyala Kompresi(Diesel atau Semi Diesel)

- 17.5km/liter : 15%
- 13km/liter ~17.5km/liter : 20%
- 10.5km/liter~13km/liter : 25%
- 10.5km/liter 미만 : 40%

Kriteria Kendaraan Bermotor yang Dikenai PPnBM dengan Kapasitas Isi Silinder s.d 3000 cc

Motor Bakar Cetus Api

- Tarif 15% untuk tingkat emisi CO₂ < 150 gram/km
- Tarif 20% untuk tingkat emisi CO₂ mulai dari 150 gram/km s.d 200 gram/km
- Tarif 25% untuk tingkat emisi CO₂ > 200 gram/km s.d 250 gram/km
- Tarif 40% untuk tingkat emisi CO₂ > 250 gram/km

Motor Bakar Nyala Kompresi (Diesel atau Semi Diesel)

- Tarif 15% untuk tingkat emisi CO₂ < 150 gram/km
- Tarif 20% untuk tingkat emisi CO₂ mulai dari 150 gram/km s.d 200 gram/km
- Tarif 25% untuk tingkat emisi CO₂ > 200 gram/km s.d 250 gram/km
- Tarif 40% untuk tingkat emisi CO₂ > 250 gram/km

Motor Bakar Cetus Api

- Tarif 15% untuk BBM > 15,5 km/liter
- Tarif 20% untuk BBM > 11,5 km/liter s.d 15,5 km/liter
- Tarif 25% untuk BBM mulai dari 9,3 km/liter s.d 11,5 km/liter
- Tarif 40% untuk BBM < 9,3 km/liter

Motor Bakar Nyala Kompresi (Diesel atau Semi Diesel)

- Tarif 15% untuk BBM > 17,5 km/liter
- Tarif 20% untuk BBM > 13 km/liter s.d 17,5 km/liter
- Tarif 25% untuk BBM mulai dari 10,5 km/liter s.d 13 km/liter
- Tarif 40% untuk BBM < 10,5 km/liter

*Berlaku Mulai 16 Oktober 2021



25. 고급주택 등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PPN BM) 및 소득세(PPh22) 관련 재무부장관령 개정안

I. 고급 주택 등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PPn BM) 관련 재무부장관령 개정안 (PERATURAN MENTERI KEU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86/PMK. 010/2019)

중전과 세율은 20%로 동일하지만 특소세 해당 대상은 중전에는 층별 소유권이 구분되지 않는(Non strata title) 주택 및 타운하우스는 2백억 루피아 이상, 층별 소유권이 구분되는(Strata title) 아파트, 콘도미니엄. 타운하우스는 1백억 루피아 이상 적용되는 규정에서 Non strata title 및 strata title 구분없이 고급 주택, 아파트, 콘도미니엄, 타운하우스 및 이와 같은 고급 주거건물로써 판매 가격 3백억 루피아 이상으로 변경됨.

2019년 6월 11일 발효

II. 수입물품 및 특정 물품에 부과되는 소득세 원천징수 (PPh22) 와 관련하여 재무부장관령 개정안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92/PMK.03/2019)

< 1 조 >

(2항) 고급 사치품이란

- a. 개인 비행기와 개인 헬리콥터
- b. 크루즈, 요트 및 이와 같은 것
- c. 주택 및 토지로써 판매. 교환 가격이 3백억 루피아 이상 또는 건축면적이 400m² 이상인 것

d. 아파트, 콘도미니엄 및 이와 같은 것으로써 판매. 교환 가격이 3백억 루피아 이상 또는 건축면적이 150m² 이상인 것
e. Sedan, Jeep, Sport Utility Vehicle(SUV), Multi-Purpose Vehicle(MPV) 형태의 10인 이하 4륜 자동차로써 판매 가격이 20억 루피아 이상 또는 3,000 CC 이상인 것

f. 이륜 및 삼륜 자동차로써 판매 가격이 3억 루피아 이상 또는 250 CC 이상인 것

(3항) 소득세법 제22조 (1). C.의 원천징수자란 고급 사치품으로 분류된 재화를 판매하는 법인 납세자이다.

< 2 조 >

(1항) 상기 1 조.의 원천징수자는 고급 사치품을 판매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항) 원천징수 소득세는

- 상기 1조 2항 c 및 d는 부가가치세(PPN)와 특별소비세(PPnBM)를 포함하지 않은 판매 가격의 1%
- 상기 1조 2항 a, b, e 및 f는 부가가치세(PPN)와 특별소비세(PPnBM)를 포함하지 않은 판매 가격의 5%

(3항) 상기 (2항)의 원천징수 소득세는 고급 사치품을 구매한 납세자의 당해 연도 소득세 납부액으로 계산한다.

2019년 6월 19일 발효

26. 법인세 신고 시 확인해야 할 사항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은 익년 4월말까지 이다.

법인세 신고 시 결산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첨부하게 되는데 여기서 매월 신고해 온 갑근세, 원천세, 부가세 등 신고내역과 결산서 상 숫자는 일반적으로 일치하게 되어 있다.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결산 시 원인을 찾아 봐야 하겠다.

일반적으로 손익계산서 항목에서 매출은 매월 신고된 부가세 신고서 상 금액 합계액과 손익계산서의 매출 금액이 일치하는지를 우선 확인하여야 한다. 부가세 과세 등록 업체가 아니고 년 매출액이 48억 루피아 이하인 경우에는 매월 매출액의 0.5% (2018년 상반기는 1%)를 납부한 PPh4(2) 금액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겠다.

인건비는 12월 갑근세 신고분과 확인을 하여야 한다. 복리후생비등 개인용도의 지출에 대하여 갑근세를 납부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차이에 대해서는 원인을 확인하여야 한다.

그 외 회계처리상 부동산 임차료로 처리가 되어 있다면 발생한 시점에 원천세 (PPh4(2)) 신고 금액과 확인을 하여야 한다.

기타 컨설팅, 자문료, 사용료(로열티), 이자비용, 기타 용역비(서비스대금)에 대해서도 발생한 시점에 원천세(PPh23/PPh26) 신고 금액과 확인을 하여야 한다.

기타 비용계정이나 수익항목에 특이한 금액들이 있는지도 확인을 하여야 한다. 대차대조표 항목에서도 채권, 채무, 재고자산, 고정자산, 선납부가세, 예수금 등 확인을 하여야 하겠다.

상기와 같이 회계처리와 매월 세무신고된 내역과 cross check 을 한 후 세무조정을 하여야 한다.

회계처리는 회계기준에 따라 처리된 것이지만 세금은 회계처리상으로 수익을 잡았는데 수익에서 제외할 것도 있고, 비용으로 처리를 하였는데 비용으로 인정이 되지 않거나 유보(이월)시켜야 하는 항목들이 있다. 따라서 회계처리된 사항에 대해서 세법 규정에 맞게 세무조정을 별도로 하여야 한다.

익금불산입(수익에서 제외) 항목으로는 PPh4(2)로 징수된 수익은 세무조정을 통해서 수익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은행에서 받은 이자 수익의 경우에는 이미 Final Tax 로 PPh4(2)를 원천징수 당하였기 때문에 회계처리상 이자 수익으로 처리하였더라도 세무조정을 하여 익금불산입하여야 하고, 부동산을 매각하여 양도 차익이 발생하였더라도 매도시 PPh4(2)로 2.5%를 납부하였기 때문에 수익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직전년도 48억 루피아 이하 영세사업자의 경우 PPh4(2)를 매월 납부하였기 때문에 매출 전액을 수익에서 제외하고, 비용도 전액 제외하여야 한다. 건설업의 경우에도 PPh4(2) 적용이 되기 때문에 동일한 방법으로 조정을 하여야 한다.

손금불산입(비용에서 제외)항목으로는 소득세법 9 조 1항에 언급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판단 기준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비용 또는 소득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비용은 비용인정이 되고 그렇지 않는 경우 비용인정이 되지 않는다. 또한 비용의 효율기간이 1년을 넘을 경우에는 한꺼번에 비용처리를 할 수 없고 감가상각의 경우에도 정율, 정액법만 인정되기 때문에 달리 처리할 때에는 조정을 하여야 한다. 접대비의 경우에는 법인세 신고 시 접대비 명세서 (Daftar Nominatif Biaya Entertainment)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세, 법인세 및 과태료 등도 비용인정이 되지 않는다.

증여, 기부금, 총당금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용인정이 되지 않는다.

특히, 롬복, 슬라웨시 팔루 지진 등 재해 성금을 지출하였다면 비용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손금불산입 하여야 한다. 또한 최근 SKB 야반도주 사건으로 퇴직급여총당금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사내에 설정하는 퇴직급여총당금은 비용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 재무부장관령 규정을 충족하여 퇴직보험으로 실제 지출이 된 경우 또는 퇴직급여가 실제 지급되는 경우에만 비용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회계처리상 퇴직급여총당금을 설정을 하였다고 지출이 되지 않았다면 손금불산입 하여야 한다.

이런 조정 과정을 거칠 경우 회계 기준으로 작성된 손익과 세무조정 후 손익은 상당한 차이가 발생되고 법인세는 세무조정 후 손익을 기준으로 과세되며, 이를 근거로 법인세를 산출하고 선납법인세가 있으면 차감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초과 납부가 되었다면 조기 환급 요건(재무부장관령 39호 (PERATURAN MENTERI KEU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39/PMK.03/2018)을 충족하지 못하면 법인세 세무조사 후 환급이 진행된다.

27. 개인 소득세 신고와 주의 사항

개인(Orang Pribadi) 의 경우 연간 소득세 신고를 익년 3월말까지 납부,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인도네시아 소득세법 UU No.36/2008 에는 인도네시아에 거주하거나, 12개월 중 183일 이상 국내에 있는 자, 과세 기간내에 국내에 있으면서 국내에 거주할 의사(Niat)를 가지고 있는 자의 경우에는 국내(인도네시아) 납세 의무자로 구분되며 국내 납세의무자의 경우에는 국내 및 해외의 소득, 재산 및 채무 내역을 신고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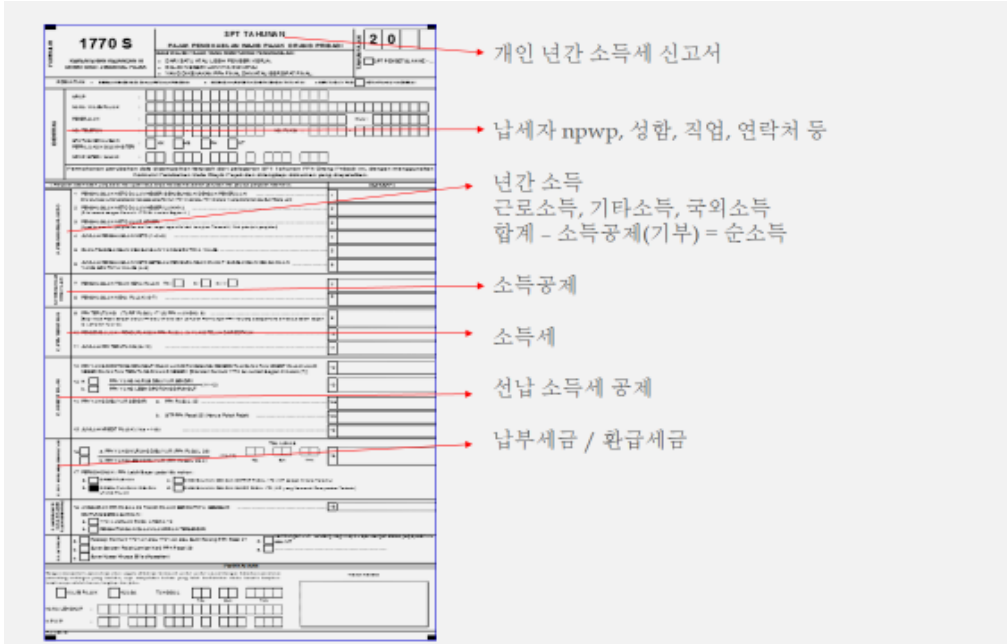
실질적으로 12개월 중 183일을 거주하지 않더라도, KITAS(6개월/1년) 를 보유하고 있다면, 거주할 의사(Niat)를 가지고 있는 자로 분류되어 인도네시아에 납세의무가 발생된다.

개인소득세 신고서식은 Formulir 1770, Form 1770S, Form 1770SS 로

- 1770은 자영업을 하는 개인
- 1770S 는 급여 소득자 또는 자영업을 하지 않는 개인
- 1770 SS 는 연간 소득이 IDR 60,000,000 이하인 개인으로 예금이자나 다른 소득이 없는 개인

대부분이 1770S 에 해당이 되기에 1770S 서식에 대해 설명하면

<개인소득세 신고서식(1770S) 1페이지>



첫 페이지는 개인 연간 소득세 신고서로써 납세자의 납세등록번호, 성함, 연락처 등 인적사항과 연간 소득, 소득 공제, 소득세를 산출하고 미리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공제 후 납부세금 또는 환급세금을 산출하여 신고하게 되어 있다.

급료 소득만 있다면, 급료 받을 때 갑근세(PPh21)를 납부하였으므로 납부한 갑근세가 선납 소득세로 12번에 기입하고 bukti pemotongan PPh21 (갑근세 공제내역 확인서) Formulir 1721-A1 첨부하면 되겠다. 물론 제대로 갑근세를 공제하였다면 추가로 납부하지는 않는다.

<개인소득세 신고서식(1770S) 2페이지>

The image shows a portion of the Indonesian tax form 1770S-1. It is divided into three main sections, each with a table for reporting income items. Red arrows point from text labels to the corresponding sections:

- Bagian A**: Points to the first table, which is for domestic income other than final withholding tax (PPH Final). The text lists items like interest, royalties, lease income, dividends, and capital gains.
- Bagian B**: Points to the second table, which is for non-taxable income. The text lists items like interest, dividends, insurance premiums, and scholarships.
- Bagian c**: Points to the third table, which is for the advance payment of tax (Wajib Pajak). The text indicates it is for the advance payment of tax.

2 페이지는 첨부서류로써 Bagian A는 최종분리과세 되지않는 국내 기타 소득으로 1 페이지 신고서 2번 항목에 대한 세부 내역을 기재한다.

Bagian B는 비과세 소득을 기재하고, Bagian C는 1 페이지 신고서 12번 항목의 세부 내역을 기재한다.

<개인소득세 신고서식(1770S) 3페이지>

The image shows the third page of the Indonesian Individual Income Tax Return Form (1770S). The form is divided into several sections, each with a red arrow pointing to a label:

- Bagian A : 최종분리과세 소득 (PPh Final)**: Points to the top section of the form, which is used for reporting final separated tax income.
- Bagian B : 연말 재산 내역**: Points to the section for reporting year-end assets.
- Bagian C : 연말 채무 내역**: Points to the section for reporting year-end liabilities.
- Bagian D : 가족 사항**: Points to the section for reporting family status.

3 페이지 Bagian A는 최종분리과세 소득으로 PPh4(2)에 해당되는 소득을 기재한다. 소득세법 4조 2항(PPh4(2)) 항목은 최종분리과세분으로 예금이자, 토지나 건물 임대료, 건설 시공비, 설계비, 감리비, 복권당첨금 등 원천징수분 이외에도 년매출액 48억 루피아 이하의 영세, 중소기업의 법인세, 부동산 매매 시 양도소득세 등이 해당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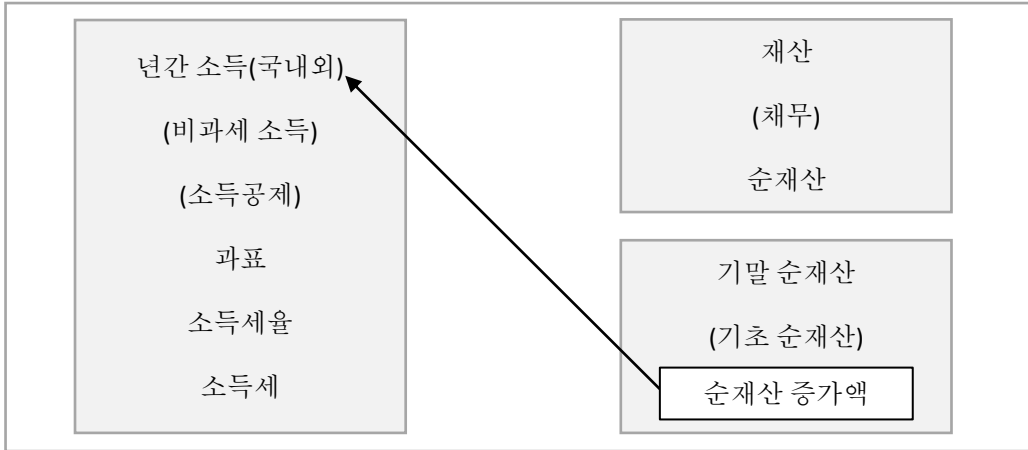
예를 들어 토지나 건물에 대한 임대료가 100이라고 했을 때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임대료 100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원천징수 의무자로서 임대료에 대해 10%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건물주에게는 90을 지급하였다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100의 임대수익에 대해서 임차인이 원천세 10을 납부하고 90만 받았는데, 임대수익 100은 타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계산 후 선납세금으로 원천징수 당한 10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PPh4(2)로 10을 최종분리과세(Final Tax)로 납부하였기 때문에 타소득과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100을 타소득에 산입하지 않고 Final로 납세의무는 종료된다.

다른 예로, 부동산을 100에 매입한 후 200에 매각을 했다면 양도소득이 100이 발생하지만, 인도네시아는 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서는 매매금액 또는 공시지가의 높은 금액의 2.5%를 PPh4(2)로 납부하기 때문에 200에 대해서 2.5%만 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는 종료된다 하겠다. 물론, 100에 매입하여 50에 매각하였다면 손실이 50이 발생되지만 세목자체가 final tax 인 PPh4(2)로 50에 대하여 2.5%를 납부하여야 한다.

PPh4(2)에 관련한 더 구체적인 내용은 『알기 쉬운 인도네시아 세법 2015년판』에 있으므로 참조할 수 있겠다.

Bagian B와 C는 직접적인 소득세와는 관계가 없지만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며, 특히 Tax Amnesty 이후에 세무당국에서 중점 관리하는 point 이기도 하다.

<개인 소득세 신고서 요약>



소득세 요약표에서처럼 Bagian B, C는 재산, 채무 내역으로 재산에서 채무를 뺀 금액이 순재산이며 작년에 신고된 순재산을 빼면 순재산 증가액이 된다.

이 순재산 증가액이 연간소득을 초과한다면 탈루 소득으로 볼 수 있으며 또 재산 내역을 누락했다면, 세무당국에서 누락된 재산을 발견하여도 상기 틀에 따라 탈루 소득으로 간주된다.

28. DAFTAR BIAYA 란?

대표사무소(R/O)의 경우에는 수익활동이 없으므로 법인세 신고의무는 없지만 원천세의무는 있기 때문에 12월 갑근세 신고 시 아래 양식과 같이 비용집계표(DAFTAR BIAYA)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 및 고정사업장(건설지사 등)의 경우에는 법인세 신고 시 결산서가 첨부되어 매월 신고된 내역의 합산과 결산서상 금액과의 확인이 가능하지만 대표사무소(RO)의 경우에는 아래 신고서로 확인이 가능하다. 아래 신고서 작성시 주의할 사항은 매월 신고한 원천세 항목들 합산 금액과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GAJI, UPAH, BONUS, GRATIFKASI, HONORARIUM, TUNJANGAN HARI RAYA, DLL 의 경우에는 PPh21 신고서상 총액과 일치하는 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불일치하는 경우 신고가 누락되었는지, 다른 사유가 있는지 확인을 하여야 한다.

Lapor SPT PPh 21 Masa Desember, Perusahaan Cabang Wajib Isi dan Laporkan Formulir Ini

DAFTAR BIAYA

FORMULIR 1721 - V
Lembar No.1 : UPLK PPh
Lembar No.2 : UPLK Pemotong

KEMENTERIAN KEUANGAN RI
DIREKTORAT JENDERAL PAJAK

Formulir ini hanya disampaikan pada masa pajak Desember oleh Wajib Pajak yang tidak wajib menyampaikan SPT Tahunan

MASA PAJAK :
Des - 2017

NPWP PEMOTONG : 500

No.	PERINCIAN	JUMLAH (Rp)
1.	GAJI UPAH BONUS, GRATIFIKASI, HONORARIUM, TUNJANGAN HUKUM, DLL	
2.	BIAYA TRANSPORTASI	
3.	BIAYA PENYUSUTAN DAN AMORTISASI	
4.	BIAYA SEWA	
5.	BIAYA RINGAN PRIMUM	
6.	BIAYA SEMBUKAN DENGAN JASA	
7.	BIAYA HUTANG TAK TERGAGH	
8.	BIAYA ROYALTI	
9.	BIAYA PEMASARAN/PROMOSI	
10.	BIAYA LAINNYA	
JUMLAH PERUSAHAAN CABANG (10.000.000.000)		

Sumber: Peraturan Direktur Jenderal Pajak Nomor PER-14/PJ/2013

<http://ortax.org/mobile/>

Ortax
Your Center of Excellence in Taxation.

29. 접대비의 손금 산입 시 주의사항

지출 경비에 대해 비용 인정 여부는 인도네시아 세법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소득 창출 또는 유지를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손금산입(비용으로 인정)이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별도로 소득세법 9조에 손금불산입(비용 불인정)항목이 규정되어 있다.

이와 별도로 접대비는 국세청 회람 (SE-27/PJ.22/1986) 에 언급되어 있는데 비용 인정 여부에 대한 규정이 아니라, 자진 신고 시 접대비에 대해 손금부인(비용으로 인정 받지 않음)을 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접대비 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접대비 명세는 접대 받는 날짜, 장소, 주소, 업종, 금액과 접대 받는 자의 성명, 직위, 회사명, 업종 을 기록하여 법인세 신고 시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상기 명세서를 제출하였다고 반드시 비용으로 인정을 받는다고는 아니다. 세무공무원의 판단(재량)하에 상기 비용을 개인 용도의 비용으로 부인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진 신고시에는 접대비를 손금산입(비용으로 처리) 하였는데 세무조사시 접대비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 금액만큼 비용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이익이 증가하게 될 것으로 이로 인하여 추가 납부할 법인세가 발생된다면 추가 납부할 세금에 다시 10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대부분이 자진 신고 시 접대비에 대해서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유는 상기와 같은 이유 때문으로 볼 수 있겠다.

30. PAS Final 이란?

재무부장관령 165호 (PAS Final)

2017년 11월 20일 재무부장관령 No. 165/PMK.03/2017이 발효되었다.

동 법령은 2017년 3월 31일로 종료된 조세사면(Tax Amnesty)에 대한 벌금 감면에 관한 재무부장관령이라 하겠다.

조세사면제도는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 11호 (UU No.11 / 2016) 로 2016년 7월 18일 발효되어 2017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어 현재로서는 완료된 법안이다.

2017년 11월 20일 발효된 재무부장관령 No. 165/PMK/03/2017 은 Perubahan kedua atas No.118/PMK.03/2016 tentang UU No.11 Tahun 2016 Tentang Pengampuan Pajak 으로 되어 있어 Tax Amnesty 수정안 또는 개정안 등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발표된 장관령은 Tax Amnesty를 시행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Tax Amnesty 신고 당시 미 신고하거나 과소 신고된 재산에 대해서는 200%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있는데 금번 장관령은 자진해서 누락된 재산을 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골자이고, 조세사면을 받지 않은 납세자도 누락 신고된 재산에 대하여 신고를 하면 지연 이자(매월 2%, 최대 48%)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대상은 Tax Amnesty 신고 당시에 Tax Amnesty를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과소 신고한 납세자로 재산가액의 기준은 지난번 Tax Amnesty 와 동일하게 2015년 12월 31일 기준이다.

또한 지난번 보다는 더 구체적으로 재산 가액 산정 지침이 포함되어 있다.

- 현금 및 현금 등가물(예금 등)은 액면가액
- 토지 및 건물은 공시지가(NJOP)
- 금,은의 경우에는 PT. Aneka Tambang Tbk 에서 고시한 금액
- 주식의 경우에는 PT. Bursa Efek Indonesia 에서 고시한 금액
- 국채, 회사채 등의 경우 PT. Penilai Harga Efek Indonesia 에서 최근 과세년도 기준으로 산정하거나 고시된 금액
- 재산가액 산정지침이 없는 경우에는 공인감정평가사가 산정한 금액 또는 납세의무자가 재산가액평가를 요청하여 국세청이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지난 법령에는 재산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상기와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다.

또한 재무부장관령과 동일한 날짜에 국세청장령 Nomor 23/PJ/2017 로 신고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다.

구비서류로 납세의무자 신분증, 재산 상세목록표(서식), 부채 상세목록표(서식), 소득세법에 정해진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계산, 관계 기관의 재산 평가 결과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소득세 계산은 재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재산금액에서 세율 법인 25%, 개인 30%, 특정납세의무자의 경우 12.5%를 곱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재산평가 결과서 발급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1. 부채비율 (PMK No. 169/PMK.010/2015)

소득세법(UU No.36 /2008) 18조 1항에 “재무부장관(Menteri Keuangan)은 소득세 계산에 필요한 부채에 대한 자본 비율의 크기를 확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로 규정 되어 있고 1984년 10월 8일 재무부장관규정 (KMK No.1002/KMK.04/1984) 으로 부채에 대한 자본 비율을 3 : 1 로 발표하였으나 최근까지 별도의 시행령이 없어 상기 부채 비율에 대한 규정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규정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세무 시행령을 2015년 9월 9일 재무부장관령(PMK No.169/PMK.010/2015)으로 발효하여 2016년 사업년도부터 적용되고 있다.

신 규정을 골자는 “부채 및 자본 비율을 4:1로 규정하고 있으며 세법상 동 비율은 부채금액을 자본금액의 4배까지로 제한하여 4배를 초과하는 부채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금융비용은 손금불산입(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음)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부채는 장기 차입금, 단기 차입금과 이자를 지급해야하는 매입채무를 말하며 과세년도 기간 동안의 월별 평균 부채 잔액을 기준으로 한다.

자본은 인도네시아 회계기준상 자본으로 분류되는 항목과 특수관계자로부터 차입한 무이자 부채를 포함하며 과세년도 기간 동안의 월별 평균 잔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이렇게 산출된 부채와 자본 비율이 4:1을 초과할 경우 초과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아래 금융비용에 대하여 손금(비용)이 부인된다.

부채비율 계산 시 금융비용의 범위

- 대출이자
- 대출금 관련 프리미엄, 디스카운트 금액
- 대출과 관련하여 발생된 비용
- 리스관련 금융비용
- 채무변제 보증에 따른 비용
- 상기 항목과 관련된 외환환산 금액

부채와 자본비율이 4:1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분에 해당하는 상기 금융비용은 손금부인되며, 완전자본잠식과 같이 자본이 0이거나 0보다 이하인 경우에는 모든 금융비용이 손금부인될 수 있다.

예외 조항으로

- 은행(Bank)/금융기관(Lembaga Pembiayaan)/보험 및 재보험사(Asuransi dan reasuransi)
- KK(Kontrak Karya), CoW, Mining Cooperation Agreements과 부채 및 자본비율의 조항을 포함한 관련 agreement에 따라 운영되는 Oil and Gas Mining, General Mining 및 기타 Mining 회사 (단, 계약서/협약서의 부채 및 자본 규정이 만료된 경우, 4:1 ratio를 따름)
- 100% Final Tax를 적용받는 납세의무자
- Infrastructure 산업을 영위하는 납세의무자

<사례 >

A 기업은 누적 적자로 자본잠식이 되어 있고 차입금이 상당히 많은 상태로 자산 100억 부채 200억 자본 (100억) 인 상태인데 이자비용으로 5억이 지출되었고 법인세 신고서에 적자 2억으로 신고를 하였는데 향후 세무조사시 5억이 손금불산입(비용부인)되어 순이익 3억으로 법인세 추정됨.

32. 특정 외국법인 유보소득에 대한 간주배당 제도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107/PMK.03/2017

2017년 7월 27일 재무부장관령으로 특정 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간주배당 제도 (CFC rule)이 발효되었다.

해외 자회사의 세전이익을 배당으로 간주하여 법인세를 납부하고 이후 실제 배당이 이루어지면 상기 납부한 법인세를 차감하는 제도이다.

제 2 조 1항에 대상 법인을 규정하고 있다.

간주배당에 해당되는 국내납세자(인니납세자)는 아래의 경우로

- a) 인니 납세자가 증권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않는 외국법인의 최소한 지분의 50% 이상을 직접 소유
- b) 인니 납세자가 증권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않는 외국법인의 최소한 지분의 50% 이상을 공동 소유 하거나 직접 지배하는 경우

제 4 조 1항, 2항, 9항의 내용을 보면

직접지배의 해외비상장회사(BULN)의 간주배당 계산은 간주배당에 지분율만큼을 곱하여 계산하며, 간주배당의 기초되는 이익(과세표준)은 BULN의 당기순이익(EAT)을 의미한다.

BULN의 당기순이익이란 그 국가/관할권에서 공식적으로 허용되는 회계기준에 기초하여 작성된 회계감사보고서에 맞는 사업적 수입 및 기타 수입을 포함한 사업 이익을 형성하는 세후이익을 의미하겠다. BULN이란 주식거래소에서 거래하는 상장사가 아닌 해외 법인을 의미한다.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회계 감사 보고서상 당기 순이익을 기초로 계산되며, 손실법인/이익법인간 상계는 안되며 간주배당후 5년간 실제배당에 대해서는 익금불산입(간주배당액 한도)

제 7 조 5항

2 개국/관할권 이상에서 배당을 받는 경우, 간주배당 과 실제배당간의 차이가 발생하면 각각의 국가/관할권으로 구분하여 (2)항과 (4)항에 의미하는 것과 같이 계산하여 세액공제(tax credit)를 받을 수 있다.(per country limitation)

(2)항 : 실제배당이 간주배당 미만인 경우의 계산에 대한 내용

(4)항 : 실제배당이 간주배당 초과인 경우의 계산에 대한 내용

■ 예제

A사 2017년 TAX YEAR 법인세 신고 시 2016년 해외 자회사들의 회계 감사보고서에 기초하여 간주배당 계산을 해야 함.

2016년 각 국가별/관할권별의 당사 직접지배 해외 자회사(B, C, D)를 고려하면 아래와 같이 계산됨

<단위 : USD>

구분	자회사 B	자회사 C	자회사 D
보유지분(%)	99.99%	100%	80%
세전손실(이익)	10,000,000	6,000,000	(30,000,000)
법인세	-	(1,200,000)	6,000,000
세후손실(이익)	10,000,000	4,208,403	(24,000,000)
Deemed Dividend	-	-	(19,200,000)

자회사 C 간주 배당 법인세 효과 : 19.2백만불 X 25% = 4.8백만불
 (2018년 4월 법인세 신고 시 4.8백만불 법인세 추가 납부해야 함)

33. 자회사가 모회사로부터 차입 시 이자

어떤 회사가 자회사에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할 경우에 대하여 문의하였고 국세청에 서신으로 (SURAT DIREKTUR JENDERAL PAJAK NOMOR S-165/PJ.312/1992) 문의를 하였는데 자회사가 모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다.로 회신하였다.

- a. 대출은 다른 당사자가 아닌 주주가 소유한 자금이어야 한다.
- b. 모회사는 대출을 받는 자회사의 자본금이 완전히 납입되어야 한다.
- c. 모회사는 손실이 없어야 한다
- d. 대출을 받는 자회사는 사업 유지에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있어야 한다.

위의 네 가지 요소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대출은 공정한 이자율로 책정하여야 한다.

34. 인도네시아 업체가 한국으로부터 물품(재화)을 수입한 경우 한국업체와 인도네시아 업체의 세무사항

수입하는 인도네시아 업체는 수입물품에 대한 선납법인세(PPh22) 2.5% ~7.5%, 수입 물품에 대한 부가세(PPN Impor) 10%, 관세(BM) 등이 발생을 한다.

부가세는 수출하는 한국업체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하는 인도네시아 업체가 수입 시 수입부가세 10%를 인도네시아 정부에 납부하며, 인도네시아 업체가 부가세 과세등록(PKP) 업체인 경우에는 상기 수입부가세를 매입부가세에 포함하여 환급 또는 매출세액과 상계처리 된다.

한국업체가 재화(Goods)를 인도네시아에 수출할 경우에는 인도네시아에 납부하는 세금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는다. (인도네시아에 고정사업장이 없음). 원천세의 20%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자주 문의를 받지만 재화(Goods)에 대해서는 원천세가 해당 되지 않는다.

재화가 아니고 Service(용역)인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법인에서 한국에 있는 업체로부터 service 를 제공 받고 대금을 송금할 경우에는 PPh26(국외간 거래에 대한 원천세) 적용되어 대금의 20%를 원천 징수하여 익월 10일까지 납부 및 20일까지 신고하게 되어 있다. .

그렇지만 국외 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각 나라별로 조세협약이 맺어져 있고, 한국과 인도네시아간 service 대금에 대해서는 한-인니 조세협약이 우선하고 Service 제공 기간, 계약 내용 등에 따라 원천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조세협약과 관련하여는 다음에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로 함).

물론, 조세협약이 적용되어 과세권이 한국에 있어 인니에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고 하더라도 Form DGT COR(인니국세청서식 거주지 확인서)을 한국 관할세무서에서
받아서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만 조세협약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주의할 사항은
Form DGT는 반드시 거래일 이전 날짜이어야 한다.

수입부가세는 재화나 용역이나 관계없이 동일하게 발생을 한다.

35. 부가세 환급 시 유의사항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해서는 유보(이월)시켜 이후 과세기간에서 차감할 수도 있고 환급도 가능하다.

매월 부가세 신고 시 Dikompensasikan 또는 Dikembalikan (Restitusi)가 있는데 Dikompensasikan에 체크를 하면 다음달로 이월 되어 향후 발생될 매출세액과 차감이 가능하며 Dikembalikan (Restitusi)에 체크를 하면 환급 신청이 진행이 된다.

Dikompensasikan 와 Restitusi 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설명을 하면 어떤 업체가 아래 표와 같이 1월에는 매출이 없고, 매입부가세만 300이 있었고 2월에는 매출부가세 100에 매입부가세가 없고, 3월에는 매출부가세 200에 매입부가세 100, 4월에는 매출부가세 200, 매입부가세 50이 발생되었다고 가정하자.

구분	1월	2월	3월	4월
매출부가세	0	100	200	200
매입부가세	300	0	100	50
차액	(300)	100	100	150
차액누계	(300)	(200)	(100)	50

1월 부가세 신고 시 초과 납부된 매입부가세 300에 대해서 부가세 신고 시 Dikompensasikan로 체크를 하여 신고를 하였다면 300은 그 다음 2월로 이월되어 매출 부가세 100이 있고 2월에 발생한 매입부가세는 없지만 300이 이월되어 왔으므로

2월에 납부할 부가세는 발생하지 않는다. 2월에도 200만큼 초과 납부한 매입부가세가 있는데 신고 시 Dikompensasikan로 체크를 하였다면 3월에 이월되어 매출 200이 발생되고 매입 100이 발생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월된 누적 매입부가세가 있으므로 납부할 금액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듯 Dikompensasikan는 초과 납부한 매입부가세를 돈으로 환급되는 것이 아니라 적립해 두었다가 향후 납부할 부가세와 상계해 가는 것이라 하겠다.

반면 Restitusi는 환급 신청으로 상기 표에서 2월 부가세 신고 시 초과납부액 200에 대해서 Dikompensasikan이 아닌 Restitusi 로 표시를 했다고 하면 200에 대해서 환급 신청을 하는 것이 되며 3월 부가세 신고시에는 200 이월 금액이 없으므로 매출 부가세 200, 매입부가세 100이 발생하였으므로 100만큼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환급신청한 200은 환급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환급이 되지 않았지만 이월 누적금액이 환급신청으로 없으므로 결국 100만큼 3월에 부가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그럼 2월에 환급 신청한 200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후 환급이 진행되므로 환급까지는 최소 1년 이상 소요된다.

36. 수출 용역에 대한 부가세

재화와 용역의 수출에 대해서는 부가세법상 0세율이 적용된다.

수출 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을 통하여야 하기에 수출면장 등 명확한 증빙 자료가 있을 수 있으나 수출 용역에 대해서는 국외에서 용역 등을 제공함으로써 판단하는 사람의 차이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자주 발생되어 왔다.

용역의 수출에 대해서는 국세청회람(SE 49/PJ/2011)에 규정되어 있는데 “인도네시아 과세 지역 내에서 행해지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공급된 것으로 간주하여 10%의 부가세율을 적용하며, 이와 반대로 용역이 인도네시아 과세 지역 외에서 수행된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법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가세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라고 설명되어 있다.

예를 들어보자. 인도네시아에 있는 A업체가 한국에 있는 B업체와 인도네시아에서 판매되는 물량에 따라 커미션을 받는 계약을 하였다고 할 경우, 인도네시아 A업체가 마케팅을 하여 인니의 C업체에서 한국 B업체 물품을 수입하였다고 할 경우 A업체는 계약에 따라 수입금액의 일정 금액에 대해 커미션을 B업체에게 받았다고 하자. 이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A업체가 한국의 B업체에게 커미션을 지급받지만 이는 수출 용역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A업체가 한국의 B업체에 판촉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용역의 행위는 인도네시아 국내에서 이루어진 행위로 수출용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사급용역(Jasa Maklon)에 대해서는 재무부장관령에 규정된 바 요건을 충족할 경우 용역 수출로 인정되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용역에 대한 수출면장 등 작성 규정을 잘못 이해하여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

우선 여기서 언급한 사급용역이라 하면 원부자재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가공비만 받는 형태라 하겠다. 흔히 섬유업종에서 국제 CMT라는 표현을 쓰는데 봉제공장의 예로 들면 원단과 실, 단추 등 원, 부자재를 무상으로 공급 받아서 원단을 재단(cutting) 하고 옷을 만들고(making) 포장하여 선적지까지 운반(Transfer)하는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cutting, making transfer 약자를 따서 CMT 라고 한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옷이라는 것은 물품 즉, 재화(Barang)로서 원단 등 원부자재를 직접 구매하여 옷을 만들어 옷을 수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앞에서 언급했듯이 원부자재를 무상으로 공급받아 옷을 만드는 용역에 대한 임가공비는 용역(Jasa)에 해당이 된다.

공장에서 옷이 출고되어 선적 시 수익의 형태는 용역이라고 하더라도 수출면장인 PEB (Pemberitahuan Ekspor Barang Kena Pajak)를 작성하여 물품이 수출되게 된다. 그렇지만 부가세법상상의 관점에서 거래 형태는 엄연히 Jasa maklon 즉, 사급 용역으로 재화(Barang)가 아닌 용역(Jasa)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반드시 용역수출면장 (Pemberitahuan Ekspor Jasa kena Pajak)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일부 기업들이 용역수출면장을 작성하지 않거나 잘못 작성하여 공급가액의 2%의 가산세를 부과 받는 사례가 자주 발생되고 있는데 용역수출면장은 반드시 서명권자의 수기 서명을 요하며, 세금계산서 오류 기재와 동일하게 수출면장 오류 기재 시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를 요하겠다.

흔히 발생하는 오류가 용역수출면장 서명권자가 수기 서명하지 않고 서명 도장을 만들어서 찍는다든지 서명권자가 아닌 사람이 서명을 한다든지 사소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 공급가액의 2%에 해당되는 엄청난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아주 사소하지만 규정을 숙지하여 이행하여야 하겠다.

그리고 사급용역에서 직접 수출을 하는 원청업체에 대해서 0세율이 적용되지 하청 용역에까지 0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한국의 A업체로부터 인도네시아 봉제 공장 B가 사급용역을 받았는데 생산 일정 등이 부족하여 일부 수량을 봉제공장 C업체에게 하청 생산을 맡긴 경우 C업체는 0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결제 대금을 A업체에 직접 받는다고 하더라도 수출용역 업체는 B이므로 C업체는 부가세 10%를 청구하여야 한다.

또 다른 예로 한국의 A업체에서 인니의 봉제 공장 B업체에 사급용역을 주고 자수 업체 C, 나염 업체 D, Washing 업체 E에게 각각 부분 용역을 맡긴 경우에도 자수 업체 C, 나염 업체 D, Washing 업체 E는 0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출하는 원청업체 B만 0세율이 적용된다. 이런 경우 C, D, E업체는 한국 A업체와 계약을 하고 대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인도네시아 국내에서 수행되는 용역으로 수출 용역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가세 10%를 청구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37. 수출 용역에 대한 신고서

현행 인도네시아 부가가치세법(UU No.42/2009)이 시행되기 전에는 수출에 대한 재화만 영세율로 인정이 되어 과거 많은 국제 CMT 공장(임가공 공장)등이 어려움을 겪었고, 이후 2009년 수출에 대한 재화와 용역에 대해 영세율로 개정되어 2010년 시행령이 발효되어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인니 재무부는 용역 수출을 장려하고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용역 수출의 종류와 활동 범위에 관한 새로운 재무부장관령을 발표하였다. (Nomor 32/PMK.010/2019, 시행일 2019.3.29.)

종전에는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용역 수출의 범위를 기존의 세 가지(사급용역, 국외 이용 동산 관련 수선, 유지 용역, 국외 소재 부동산 관련 건설 용역) 만 해당이 되었는데 개정안에는 상기 세가지 이외에도 수출 목적 재화의 운송관리 용역, 정보 및 기술 용역, 연구 및 개발 용역, 국제 항행 항공기 및 선박 렌탈 용역, 전문 컨설팅 용역(경영, 법률, 마케팅, 회계, 세무 등) 등을 추가 되었다.

봉제공장의 경우 대부분이 FOB 공장보다는 국제 CMT 공장인데, FOB 공장은 원부자재를 직접 구매해서 옷이라는 재화를 수출하는 공장이며, 국제 CMT 공장은 원부자재를 사급 받아 임가공비만 받는 형태로서 용역 수출에 해당된다.

흔히 재화가 수출이 될 경우에는 재화수출면장인 PEB (Pemberitahuan Ekspor Barang)을 작성하지만 용역의 경우에는 용역수출면장인 PEJ (Pemberitahuan Ekspor Jasa)를 작성하여야 한다.

수출면장도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기 때문에 작성 오류의 경우 공급가액의 2%에 해당되는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로 한다. 전자 세금계산서가 시행되기 전에는 수기로 작성되었을 때에도 작성 오류, 서명권자 서명 오류 등 사소한 실수가 많았지만 현재 수출면장의 경우도 수기로 작성되기 때문에 과거 세금계산산서 발행 지침과 아래 용역수출신고서 작성 지침을 확인하여 한다.

<용역수출에 대한 면장 기재 지침>

- 과세용역의 수출
- 무형 과세물품의 수출

◆ 코드 번호

- 과세용역 수출에 대하여는 EJKP로 기재
- 무형 과세물품 수출에 대하여는 EBKP로 기재

◆ 일련번호

- 무형과세물품 / 과세용역의 수출 날짜 순으로 기재

◎ A. 부분 : 무형과세물품 / 과세용역의 수출자

- 납세번호(NPWP) : 납세번호카드에 명기된 것과 같이 납세번호를 기재
- 납세자명 : 납세번호카드에 명기된 것과 같이 납세자명을 기재
- 주소, 동/읍, 도시 / 우편번호 : 납세번호카드에 명기된 것과 같이 주소를 기재
- 전화번호 : 납세자 거주지의 전화번호를 기재

◎ B. 부분 : 무형과세물품 / 과세용역을 공급 받는 자 / 발주자

- 성명 : 인보이스 및 계약상에 명기된 무형과세물품 / 과세용역을 공급 받는 자의 성명을 기재
- 외국-주소, 국가 / 도시 / 우편번호 : 인보이스 및 계약상에 명기된 무형과세물품 / 과세용역의 수출 대상 국가에 용역을 받는 자의 주소를 기재
- 전화번호 : 인보이스 및 계약상에 명기된 대로 용역 수출 대상 국가에 무형과세물품 / 과세용역을 받는 자의 전화번호를 기재

◎ C. 부분 : 수출하는 무형과세물품 / 과세용역의 종류

• C.I. 과세용역의 수출

- 과세용역 명 : 인보이스 및 계약상에 명기되고 수출하는 과세용역 명을 기재
- 임가공용역(Jasa Maklon)의 경우:
 - PEB No. : 과세용역 수출 활동하는 물품 종류 또는 수출면장(PEB) 번호를 기재
 - NPE No. : 과세용역 수출 활동하는 물품 종류 또는 수출서비스노따(NPE) 번호를 기재
- 용역의 내용 : 관련 과세용역 수출 활동하는 물품 종류 및 수출하는 과세용역 종류의 설명 대로 선택한 임가공용역 外 사항을 기재
- 보상 금액 : 인보이스 및 계약상에 명기된 수출할 과세용역에 대한 보상 금액을 기재
- 계약 일자 : 과세용역 수출에 대하여 계약 체결 일자를 기재
- 인보이스 번호 및 일자 : 실행하는 과세용역 수출에 대하여 인보이스 일자 및 인보이스 번호를 기재

• C.II. 무형과세물품의 수출

- 무형과세물품명 : 인보이스 및 계약상에 명기되고 수출하는 무형과세물품 명을 기재
- 보상 금액 : 인보이스 및 계약상에 명기된 수출하는 무형과세물품에 대한 보상 금액을 기재
- 계약일 : 무형과세물품 수출에 대하여 계약의 체결 일자를 기재
- 인보이스 번호 및 일자 : 실행하는 무형과세물품 수출에 대한 인보이스 일자 및 인보이스 번호를 기재

◆ 확약(Pernyataan)

- 본 확약서의 취지는 무형과세물품 수출 / 과세용역 수출 양식 기재 완벽 및 정확성에 대하여 보증을 하기 위함이다. 납세자가 미완벽하게 기재하거나 및 또는 부정확하게 기재하였을 시, 현행 법규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될 것

◆ 통지 일자

- 일자는 인보이스 일자를 기재

◆ 서명

- 세무서에게 사전 통보된 세금계산서(Faktur Pajak) 서명과 동일하게 서명

38. 세금계산서 범칙 조사

최근 세금계산서 범칙 조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서 세금계산서 범칙이라고 하면 어떤 납세자는 이익이 너무 많이 발생한다든지 매입자료가 부족하여 자료상(브로커)을 통해서 매입자료를 사거나, 어떤 납세자는 거래 구조상 매출 세금계산서를 끊지 못하여 매출자료를 구하는 사례로써 이러한 행위가 자료상(브로커)이 세무당국에 포착되든지 또는 이러한 내용의 투서가 세무당국에 들어 간다든지 어떠한 형태로 세무당국에서 확인이 되면 세무 조사가 아닌 초등 증거조사, 조세법 위반자(Penyidikan tidak pidana di Bidang Perpajakan)에 대한 조사로 진행하게 된다.

조세법 위반자에 대한 조사(Penyidikan tidak pidana di Bidang Perpajakan)란 조세관련법 위반 혐의자에 대한 형사조치를 위한 증거를 찾고 수집하기 위한 행위로서 조사를 통해서 행위가 확정이 되면 최소 2년에서 최대 6년의 징역 및 세금계산서에 명시된 과세 금액의 최소 2배에서 최대 6배의 벌금을 받게 된다. 거래 질서와 조세 절차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조세당국에서는 엄중하게 다루고 있다.

이는 대부분 국가가 동일한데 한국도 마찬가지로 징역과 벌금을 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세금계산서 관련법으로 조세범처벌법(한국 세법)에 세금계산서관련범 중 재화·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또는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나 매출, 매입처별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처벌법 10조3항),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처벌법3조2항, 10조5항)

징역 3년 이하 매출-매입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도네시아는 국세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은 행위를 저지른 자는 최소 2년에서 최대 6년의 징역 및 세금계산서, 세금 징수 증명서, 세금 감면 증명서 및/또는 세금 납부영수증에 명시된 과세 금액의 최소 2배에서 최대 6배까지의 벌과금에 처한다. (국세기본법 39A조)

요약하면 매입, 매출 자료를 사고 파는 행위는 세금계산서 부정 발급/수급으로 상기 법규정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조세범칙으로 엄중한 처벌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있다면 신속히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초등증거조사 중이라면 추징금 등을 합의해서 최대한 신속히 해결을 하여야 하겠다.

39. 이전 가격에 대한 문서화 규정

OECD 의 BEPS(Base Erosion & Profit Shifting) Action Plan 15개 중에서 Action 13이 전세계적으로 법제화가 되어 인니 재무부에서도 신규 규정 No. 213/PMK.03/2016 (PMK -213) 을 발표하였다.

이전가격 문서화는 수년전부터 hot issue 로 부각되고 있고, 세법이나 시행령에 언급되어 있지만 BEPS Action 13은 마스터파일(Dokumen Induk), 로컬파일(Dokumen Lokal), 국가별보고서(laporan per Negara) 의 3단계 이전가격문서화를 규정하고 제출 대상, 이행시기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우선 이전가격에 대한 기본 전제는 특수관계에 의한 거래가 이루어 질 경우에는 시장 가격으로 계산한다는 것이 기본 전제라 하겠다.

특수관계(Hubungan Istimewa) 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18 조 4항 (Pasal 18 ayat(4) UU PPh) 및 부가세법 2 조 2항 (Pasal 2 ayat(2) UU PPN) 에 규정되어 있고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25% 이상의 출자 관계
2. 직/간접으로 지배 관계에 있는 경우
3. 가족 관계

상기 3가지 중 하나에 해당이 된다면 특수 관계에 해당이 되는데, 거래 시 거래 가격은 반드시 시장 가격이어야 하며, 시장 가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이전가격 문서(Dokumen Penentuan Harga Transfer 줄여서 TP Doc 이라고 함) 로 특수 관계간 거래 규모에 따라 마스터파일(Master File / Dokumen Induk), 로컬파일(Local file / Dokumen Lokal), 국가별보고서(CbCR / Laporan per Negara)를 갖추어야 한다.

이전가격에 대한 문서 종류(Jenis TP Doc)는 Master File (Dokumen Induk), Local File (Dokumen Lokal), CbCR (Country by Country Report, Laporan per Negara) 로 구성되며, Master File 과 Local file 에 대해서 우선 언급하겠다.

특수관계자거래가 있는 인니 납세자는 하기 조건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Master File , Local File 작성 및 구비를 하여야 한다. (제 2 조 2항)

- a) 전 연도 연간 총 매출이 500억 루피아를 초과하는 기업
- b) 전 연도 특수관계자 거래 금액이 하기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
 - 1. 유형자산거래 금액이 200억 루피아를 초과하는 기업 또는
 - 2. 기타 거래 (무형자산거래, 용역거래, 금융거래 등) 50억 루피아를 초과하는 기업
- c) 인도네시아에 비해 저세율 국가에 소재하는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하는 기업

상기에 해당 되는 기업은 Master file, local file 을 작성하여 구비하여야 하며, 포함되는 내용은 하기 사항들이며,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Master File 에 포함해야 하는 내용은 하기와 같다, (제 8 조 1항)

- a. 조직구조, 지배구조, 전체 법인의 국가 또는 관할구역
- b. 비즈니스 활동의 유형
- c. 무형자산 보유 현황
- d. 재무현황 및 자본 조달
- e. 모회사의 연결재무제표 및 특수관계자 거래와 관련한 세무정보

Local File 에 포함해야 하는 내용은 하기와 같음 (제 9 조 1항)

- a. 비즈니스 활동의 설명 및 내용
- b. 특수관계자 거래와 비 특수관계자 거래의 정보
- c. 정상가격 산출방법
- d. 재무정보
- e. 가격 결정 및 이익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비재무적인 사항 또는 우발사건

제 2 조 2항 기준에 따라 Master File 및 Local File 준비가 필요한 납세자는 세무 연도 종료 후 4개월까지 준비를 완료할 것이 필수 요구 사항이다. (제 4 조 1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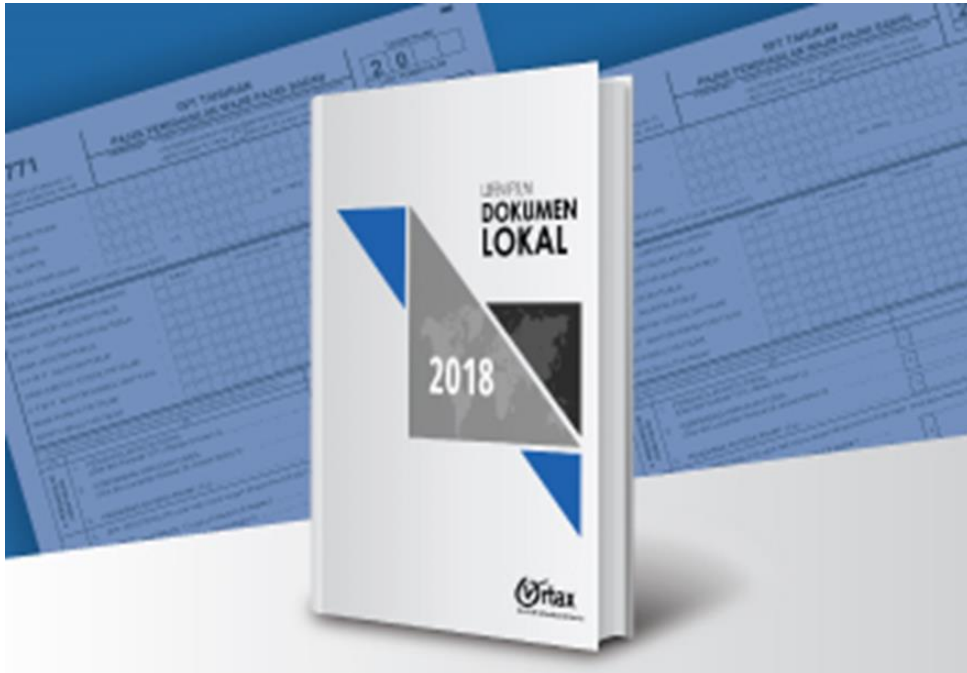
예를 들어, 2016년 12월말 결산하는 법인은 2017년 4월말까지 양 보고서 작성하여 구비하여야 하겠다.

Master File 및 Local File을 세무신고서에 첨부해서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각 문서가 작성된 날짜를 기재한 증명서류를 준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 4 조 3항)

또한, Master File 및 Local File에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납세자가 확인하는 양식과 각 문서가 작성된 날짜와 서명란으로 구성된 양식이 세무신고서식에 추가되어 있다. (제 7 조 4항)

Master File 및 Local File 제출이 필요한 상황은 납세자 세법 준수 확인, 일반 세무조사, 특별세무조사 및 이의신청 등 세법 규정에 따라서 기한 안에 요구된 문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 (제 5 조, 제 6 조)

TP Doc Diminta Kantor Pajak? Ini yang Harus Dilakukan Perusahaan



재무부 장관령 213 / PMK.03 / 2016 ("PMK 213")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은 TP 문서를 납세자에게 일정 기간 내에 TP Doc (양도 가격 문서) 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TP 문서 요청, 특히 마스터 파일 및 로컬 파일로써 납세자의 준수 사항에 대한 세무조사 예비 증거 조사 또는 조사를 수행하는데 필요로 한다.

마스터파일 및 로컬 파일을 세무서에 제출시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한 주의를 요한다.

1. 기한내 TP Doc 준비를 완료하여야 한다

PMK 213에는 마스터파일과 로컬 파일은 결산 종료 후 4개월 이내 준비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세무서에서는 기간이 만료된 후 요청을 시작하며, 회사에서는 TP 문서를 제 시간에 제공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2. TP Doc 요청 조건 확인

세무서에서는 TP 문서요청을 아래 조건에 따라 이루어진다.

No.	Kondisi	Ketentuan
1	Pengawasan kepatuhan 준수감독	SE-39/PI/2015
2	Pemeriksaan 세무조사	PMK-17/PMK.03/2013 sttd. PMK-184/PMK.03/2015
3	Pemeriksaan Bukper	PMK-239/PMK.03/2014
4	Penyidikan 조사	KUHAP

위에 언급된 조건에 따라 TP Doc 기간이 결정된다.

3. TP Doc TP Doc 의 제출기간 확인

TP 문서 제출 기간은 일반적으로 1 지점에 언급 된 조건에 따라 세무서에서 귀사에 보낸 TP 문서 요청서에 기록됩니다. TP 문서 제출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No.	Kondisi	Waktu Penyampaian
1	Pengawasan kepatuhan	14 hari dari surat permintaan
2	Pemeriksaan	1 bulan dari permintaan
3	Pemeriksaan Bukper	14 hari dari tanggal kirim surat peminjaman
4	Penyidikan	diatur dalam KUHAP

TP 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회사는 TP 문서를 보유 및 유지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한편, TP Doc 이 제출되었지만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TP Doc 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40. RPMK APA (이전가격 사전 합의에 대한 재무부장관령 수정안)

지난해 2019년 11월 8일 국세청에서 이전가격 사전합의(APA)에 대한 재무부장관령 수정안(RPMK)에 대한 공청회(Rpat Audiensi Publik)가 있었다.

BEPS Action 14 발효로 기존 재무부장관령 7호 (PMK 7/2015) 에 대한 개정이 불가피하여 공청회를 통하여 의견 수렴 후 수정을 통해 2020년도에 발효될 예정이다.

BEPS는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세원 잠식과 소득이전이란 뜻인데, 경제 주체인 기업들이 글로벌화하고 빠르게 변경되면서 재정비되지 못한 각국의 조세체계와 조세조약의 사각지대를 경제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소득을 이전하고(Profit Shifting) 절세에 노력함에 따라 과세당국의 세원기반이 감소되거나 소멸하는 것(Base Erosion)을 말한다.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OECD는 2014년 9월 BEPS Action Plan 중 7개의 실행 계획을 발표 후 2015년 10월에 총 15개의 Action Plan으로 최종 보고서가 작성되었고 G20에 제출되어 승인되었다.

현재 OECD 회원국뿐만 아니라 비회원국도 광범위하게 참여하여 자국의 세법 개정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2019년 3월 기준 129개국인 BEPS Action Plan에 참여하고 있다.

현행 규정과 수정안의 차이점은

<현행 규정과 수정안의 차이점>

PMK 07 / 2015	RPMK APA
· 신청절차가 2단계로 복잡	· 신청서 하나로 신청 완료
· Timeline이 완료시까지 불명확	· Timeline이 단계별로 규정됨
· 관할세무서에서 관여하지 않음	· 관할세무서에서 시작됨
· Roll Back 없음	· Roll Back 규정 존재
· 적용기간 (UAPA 3년, BAPA 4년)	· 적용기간 (UAPA, BAPA 모두 4년)

아직 재무부장관령 개정안은 공포가 안 되었지만, 조만간 공포되어 이전자격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 적극 활용되기를 기대해 본다.

Ⅲ

부록편



1. 일자리 창출법 (UU No.11 /2020 일명 Omnibus Law) 중 세법 규정

2020년 10월 5일 RANCANGAN UNDANG-UNDANG TENTANG CIPTA KERJA (일자리 창출법안 RUU)이 국회를 통과한 후 마침내 정부는 2020년 11월 2일 법령 11호 (UU No.11 /2020)로 제정하였다.

이번에 공포된 일자리 창출법(UU Cipta Kerja) 은 15개장과 18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187페이지에 달한다. 조세와 관련된 규정은 VI장 Kemudahan Berusaha 의 Part 7 Bagian Ketujuh Perpajakan에 포함되어 있다.

2020년 법령 제 11호의 핵심은 여러 법률의 다양한 문제를 하나의 법률인 UU No.11에 개정하여 종합적으로 모아 놓았다는 것이다.

그 중 조세와 관련한 규정은 제 111 조부터 114 조까지로 나누어진 4개의 법률에 대한 개정을 포함하고 있다.

제 111조 에는 소득세법(PPh), 112 조에는 부가세법(PPN), 113 조에는 국세기본법 (KUP)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어 있고, 제 114 조는 지방세법을 포함하고 있다.

I. 제 111 조 소득세법 (UU PPh) 일부 개정

배당에 대한 비과세 규정과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대한 규정, 일부 비과세 규정이 개정 /추가 되었다.

1. 배당금 비과세

- 개인 또는 법인 납세자가 획득 한 국내 또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배당 소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조건은 배당금이 인도네시아에 투자된다는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2. 저금리 소득 세율

- 소득세에 관한 제 26 조, (1b)항이 추가되었다. 부채 상환 보증과 관련된 보험료, 할인 및 보상을 포함하여 이자를 지불해야 하는 당사자의 총액의 20 % 비율은 정부 규정 (PP)에 의해 감소 될 수 있다.

3. 인도네시아 시민 및 외국인에 대한 과세 조건

- 이 조항은 소득세법 제 2 조 (2)항 국내납세의무자와 2조(4)항 국외 납세 의무자에 대한 규정이 개정되었다.

제 2 조 (2항) 국내 납세의무자란

1. 인도네시아에 거주
2. 인도네시아에서 12개월동안 183일 이상 체류
3. 과세기간내 인도네시아 거주하거나 거주할 의사(Niat)이 있는 경우로 변경되었다.

제 2 조 (4)항 국외 납세의무자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외 납세의무자란

- a. 인도네시아에 거주하지 않는 개인
- b. 12개월 중 183일 이상 인도네시아에 체류하지 않는 외국인

c. 12개월 중 183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인도네시아인으로 다음을 충족하는 자

1. 주거지
2. 주요활동 중심지
3. 일상적 거소
4. 과세대상의 지위
5. 기타 특정 요건으로 재무부장관 규정에 정함

d. 법인은 인도네시아에 설립되지 않거나, 거주하지 않은 법인으로서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하거나 활동을 하는 법인

4. 외국인 비과세 규정

- 이는 국내 과세 대상 외국인이 규정에 따른 특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조세 대상에서 면제되거나 소득세 대상에서 제외됨을 의미한다. 소득세법 제 4 조에 추가된 규정이다.

제 4 조 (1a)에서 국내 납세자가 된 외국인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도네시아로부터 받거나 얻은 소득에 대해서만 PPh의 적용을 받는다.

1. 특정 기술 보유
2. 국내 납세자가 된 시점부터 계산된 과세 연도 4년 동안 유효
단, 인도네시아와 국가 간의 이중 과세 방지 및 회피 협정 (P3B)을 적용하는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5. Haji 금융상품 등에 관한 비과세 추가

- 소득세에 관한 제 4 조(3)항 o와 p 조항이 추가되었다.

"o. Hajj행정원가 (BPIH) 및 / 또는 특별 BPIH를 위해 예치된 자금 및 특정 분야 또는 금융 상품에서 Haji 금융 개발로 인한 수입은 Badan Pengelola Keuangan Haji (BPKH)에 의해 수령되며, 그 조항은 재무부 장관의 규정에 따라 정한다."

"p. 잉여금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대 4 년 이내에 사회 및 종교 시설 및 기반 시설의 형태로 재투자 조항은 재무부 장관의 규정에 정한다."

II. 제 112 조 부가세법(UU PPN) 일부 개정

종전 부가세과세등록(PKP)이전에 발생된 매입부가세, 생산이전 단계에서 발생된 매입부가세 등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에 관해서 상당히 완화되었고, 소매업 유통업자의 세금계산서 발행 규정도 추가되었다.

1. 매입 부가세 공제에 대한 완화

- 생산전에 발생된 매입부가세, 부가세 과세등록(PKP) 이전에 발생된 매입부가세 등에 전액 불공제 되었으나 매입세액액이 공제될 수 있도록 완화되었다.

"(2a)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확정되기 전으로써 과세 재화 및 과세 용역의 획득,과세 재화수입, 과세지역 밖으로부터 과세 지역내로의 무체 과세 재화의 이용 또는 과세 용역의 이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동법에 따른 공제 요건을 준수하는 한 공제될 수 있다 "

"(9a)PKP로 확인되기 전에 BKP / JKP를 획득하거나 영외에서 무형 BKP 또는 JKP를 활용하여 징수해야 하는 매입부가세의 80 %를 매출부가세에 공제 할 수 있다."

2. 매입 세액 공제 기간

"(9)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때의 납세기간 종료일로부터 3 납세기간 내에 공제 가능한데, 비용으로 처리되었거나 과세 재화 또는 과세 용역의 취득가액으로 자본화 되지 아니 하였어야 하고 부가가치세 및 사치품판매세법과 동 법의 공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3. 구매자의 신원이 없는 세금 계산서 작성 규정 추가

- 소매상 PKP의 세금 계산서 작성을 규정하는 것으로 제 13 조 (5a)항으로 추가되었다.

"(5a) PKP 소매상은 과세 상품 (BKP) 및 / 또는 과세 서비스 (JKP)를 최종 소비자 특성을 가진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구매자의 신원과 판매자의 이름 및 서명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고 세금 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다."

III. 제 113 조 국세기본법(KUP) 일부 개정

1. 수정 신고로 인하여 부족 납세액이 발생할 경우 이자 경감

- 기준금리에 5%를 더한 다음 12로 나누어 월 이자율 산출 (중전 월 2%)

2.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위반에 대해 검찰조사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과태료는 과소 납부세액의 100% 부과 (중전 150%)

3. 납부기한을 초과한 지연 납부에 대한 이자 경감

- 기준금리에 5%를 더한 다음 12로 나누어 월 이자율 산출 (중전 월 2%)

4. 과납 세금에 대한 환급이 한달이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부는 환급지연 이자를 기준금리에 12로 나눈 값을 월 이자율로 적용한다 (중전 월 2%)

5. 추정결정서(SKPKB)에 의해 확정된 과부족 세금에 대한 이자율은 기준금리에 15%를 더한 후 12개월로 나눈 이자율을 월 이자율로 계산한다. (중전 월 2%)

6. 세금계산서 미발행 또는 지연발행 가산세

- 공급 가액 (DPP)의 1%의 벌금이 부과된다. (중전 2%)

7. 조사 종료

- 국가 수입의 이익을 위해, 검찰 총장은 재무부 장관의 요청에 의해 요청서의 일자로부터 6(육)개월 이내에 조세 관련 형사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상기의 경우 조세 관련 형사 조사의 중지는 납세 의무자가 미지급 또는 부분 지급한 과세액, 또는 잘못 지급된 환급세액과 그에 대한 행정 벌과금을 모두 납부한 이후에만 이루어 질 수 있다. 이때 부과되는 행정 벌과금은 미지급 또는 부분 지급한 과세 총액, 또는 잘못 지급된 환급세액 총액의 최대 3배에 달한다. (중전 최대 4배)

2. 소득세법 개정 (Pasal 111)

인도네시아 소득세법은 1983년 UU No.7/1993 제정되어 4차에 걸쳐 개정되었고 최근 소득세법은 2008 UU No.36/2008 개정되었고 몇몇 조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No	UU Pajak Penghasilan (소득세법 개정 전)	UU Cipta Kerja (소득세법 개정 후)	비고
1	<p>Pasal 2</p> <p>(1) 과세 주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a. 개인 b. 분배되지 않는 상속재산(Warisan) c. 법인(Badan) d. 고정사업장(Bentuk Usaha Tetap) <p>(1a) 고정사업장은 국내 과세대상 법인과 동일한 세법 적용을 받는다</p> <p>(2) 과세주체는 국내 납세의무자와 국외 납세의무자로 구분된다</p> <p>(3) 국내 납세의무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a. 개인은 인도네시아에 거주하거나, 12개월중 183일 이상 국내에 있는자, 과세 기간내에 국내에 있으면서 국내에 거주할 의사(Niat)를 가지고 있는자 b. 법인은 인도네시아에서 설립 또는 거주하고 있는 법인으로 아래의 법인은 제외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2. 국가(APBN) 또는 지방(APBND)의 예산을 사용하는 법인 3. 주정부나 지방정부의 예산을 수령하는 법인 4. 국가 직무 감독기관의 감독을 받는 법인 c. 상속재산은 개개인에게 분배되지 않고, 권리 이전이 되지 않는 재산 <p>(4) 국외 납세의무자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a. 개인은 인도네시아에 거주하지 않는자 12개월중 183일 이상 국외에 있는자 인도네시아에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하거나 활동을 하는자 법인은 인도네시아에 설립되지 않거나, 거주하지 않은 법인으로서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하거나 활동을 하는 법인 	<p>Pasal 2</p> <p>(1) 과세 주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a. 개인 b. 분배되지 않는 상속재산(Warisan) c. 법인(Badan) d. 고정사업장(Bentuk Usaha Tetap) <p>(1a) 고정사업장은 국내 과세대상 법인과 동일한 세법 적용을 받는다</p> <p>(2) 과세주체는 국내 납세의무자와 국외 납세의무자로 구분된다</p> <p>(3) 국내 납세의무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a. 개인은 인도네시아인이든 외국인이든 관계 없이 다음과 같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도네시아에 거주 2. 인도네시아에서 12개월동안 183일 이상 체류 3. 과세기간내 인도네시아 거주하거나 거주할 의사가 있는 경우 b. 법인은 인도네시아에서 설립 또는 거주하고 있는 법인으로 아래의 법인은 제외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2. 국가(APBN) 또는 지방(APBND)의 예산을 사용하는 법인 3. 주정부나 지방정부의 예산을 수령하는 법인 4. 국가 직무 감독기관의 감독을 받는 법인 c. 상속재산은 개개인에게 분배되지 않고, 권리 이전이 되지 않는 재산 <p>(4) 국외 납세의무자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a. 인도네시아에 거주하지 않는 개인 b. 12개월중 183일 이상 인도네시아에 체류하지 않는 외국인 c. 12개월중 183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인도네시아인으로 다음을 충족하는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거지 2. 주요활동의 중심지 3. 일상적 거소 	<p>변경</p> <p>변경</p>

III. 부록편

No	UU Pajak Penghasilan (소득세법 개정 전)	UU Cipta Kerja (소득세법 개정 후)	비고
	<p>b. 개인은 인도네시아에 거주하지 않거나, 12개월 중 183일 이상 국외에 있는자로서 인도네시아에 있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인도네시아에 소득이 있는 자 법인은 인도네시아에 설립되지 않거나, 거주하지 않는 법인으로서 인도네시아에 있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인도네시아로부터 소득이 있는 법인</p> <p>(5) 고정사업장은 인도네시아에 거주하지 않은 개인에 의해 운영되어지는 사업장, 인도네시아에 있지만 12개월중 183일 이하 거주하는 개인에 의하여 운영되어지는 사업형태,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하거나, 활동을 하기 위하여 인도네시아에 회사를 설립하거나 거주하지 않은 채 사업을 행하는 법인으로 이와 같은 형태는 다음과 같다:</p> <p>a. 관리사무소 b. 지사 c. 연락사무소 d. 사무실 건물 e. 공장 f. 정비소 g. 창고 h. 판촉이나 판매를 위한 전시장 i. 자연 탐광, 채굴작업 j. 천연 유전과 가스 채광 작업지역 k. 어업, 축산업, 농업, 종묘, 임업 l. 건설, 서치공사, 텅키작업(Proyek Perakitan) m. 12개월중 60일 이상, 직원이나 개인이 제공하는 모든 용역 n. 활동이 제한된 대리점(Agen)을 운영하는 개인이나 기업 o. 인도네시아에 설립되지 않고 거주하지 않는 즉 국외 보험회사의 직원 또는 대리점 p. 컴퓨터, 전자대리점,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영업활동으로 전자 결제로 이루어지는 소유, 임대, 사용되어지는 자동장치</p> <p>(6) 개인 또는 법인의 사업장은 국제청장이 현실 상황에 의하여 정한다.</p>	<p>4. 과세대상의 지위 5. 기타 특정 요건으로 재무부장관 규정에 정함</p> <p>d. 법인은 인도네시아에 설립되지 않거나, 거주하지 않은 법인으로서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하거나 활동을 하는 법인</p> <p>(5) 고정사업장은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운영하거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4)a,b,c 조에 언급된 개인과 (4)d조에된법인으로 이와 같은 형태는 아래와 같다 :</p> <p>a. 관리사무소 b. 지사 c. 연락사무소 d. 사무실 건물 e. 공장 f. 정비소 g. 창고 h. 판촉이나 판매를 위한 전시장 i. 자연 탐광, 채굴작업 j. 천연 유전과 가스 채광 작업지역 k. 어업, 축산업, 농업, 종묘, 임업 l. 건설, 서치공사, 텅키작업(Proyek Perakitan) m. 12개월중 60일 이상, 직원이나 개인이 제공하는 모든 용역 n. 활동이 제한된 대리점(Agen)을 운영하는 개인이나 기업 o. 인도네시아에 설립되지 않고 거주하지 않는 즉 국외 보험회사의 직원 또는 대리점 p. 컴퓨터, 전자대리점,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영업활동으로 전자 결제로 이루어지는 소유, 임대, 사용되어지는 자동장치</p> <p>(6) 개인 또는 법인의 사업장은 국제청장이 현실 상황에 의하여 정한다.</p>	<p>변경</p>
2	<p>Pasal 4 (1) 과세대상이란 소득(Penghasilan)을 말한다. 즉 납세의무자(WP)가 국내/국외에서 취득한 경제적 효용의 증가 분으로 납세의무자가 사용 가능하고 납세의무자의 부를 증가시켜 주는 것으로 아래를 포함한다.</p> <p>a. 노동이나 요역에 대한 반대 급부로서 급여, 임금, 상여금, 커미션, 보너스, 포상금, 연금 등 b. 추천, 노동, 활동로부터의 선물과 대가 c. 영업이익 d. 자산의 양도 또는 매매이익으로 아래를 포함한다.</p>	<p>Pasal 4 (1) 과세대상이란 소득(Penghasilan)을 말한다. 즉 납세의무자(WP)가 국내/국외에서 취득한 경제적 효용의 증가 분으로 납세의무자가 사용 가능하고 납세의무자의 부를 증가시켜 주는 것으로 아래를 포함한다.</p> <p>a. 노동이나 요역에 대한 반대 급부로서 급여, 임금, 상여금, 커미션, 보너스, 포상금, 연금 등 b. 추천, 노동, 활동로부터의 선물과 대가 c. 영업이익 d. 자산의 양도 또는 매매이익으로 아래를 포함한다.</p>	

No	UU Pajak Penghasilan (소득세법 개정 전)	UU Cipta Kerja (소득세법 개정 후)	비고
	<p>1. 주주나 출자자가 기업, 조합, 기타법인에게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인한 이익</p> <p>2. 기업, 기타법인이 주주, 조합원, 회원들에게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이익</p> <p>3. 청산, 합병, 해산, 신설합병, 분리, 영업인수로 인한 이익</p> <p>4. 선물, 기증품 등과 같은 자산의 양도 이익 단, 당사자 간의 영업, 노동, 사업과 관계가 없는 직계 가족, 종교단체, 교육기관, 사회단체 재무부장관이 정한 조항을 포함한 영세업자에게 제공으로 발생하는 이익은 제외한다.</p> <p>5. 광산회사의 자본금과 지출 경비를 포함한 광산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 또는 양도함으로써 인한 이익</p> <p>e. 비용처리된 납부세금의 환급</p> <p>f. 할증금, 할인금액, 채움증에 대한 보상을 포함한 이자</p> <p>g. 어떤 명목, 형태의 배당금, 보험가입자에게 보험회사의 배당금, 협동조합의 잔여 소득 배분</p> <p>h. 로열티 또는 지적재산권의 사용료</p> <p>i. 임대수익 및 재산의 이용과 관련한 기타수익</p> <p>j. 특정기간내에 지급 또는 받는 생활부양금</p> <p>k. 채무면제 수익 단.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금액을 제외한 수익</p> <p>l. 환차이익</p> <p>m. 자산재평가 이익</p> <p>n. 보험 보상금(Premi asuransi)</p> <p>o. 영업 또는 자유업을 하는 납세자로 구성된 조직으로부터 받은 기금/연금</p> <p>p. 세전 순이익 증가분</p> <p>q. Syariah로부터 발생된 이익</p> <p>r. 국세기본법에 의한 공탁된 금액에 대한 환급액에 대한 이자</p> <p>s. Surplus Bank indonesia (중앙은행이자)</p>	<p>1. 주주나 출자자가 기업, 조합, 기타법인에게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인한 이익</p> <p>2. 기업, 기타법인이 주주, 조합원, 회원들에게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이익</p> <p>3. 청산, 합병, 해산, 신설합병, 분리, 영업인수로 인한 이익</p> <p>4. 선물, 기증품 등과 같은 자산의 양도 이익 단, 당사자 간의 영업, 노동, 사업과 관계가 없는 직계 가족, 종교단체, 교육기관, 사회단체 재무부장관이 정한 조항을 포함한 영세업자에게 제공으로 발생하는 이익은 제외한다.</p> <p>5. 광산회사의 자본금과 지출 경비를 포함한 광산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 또는 양도함으로써 인한 이익</p> <p>e. 비용처리된 납부세금의 환급</p> <p>f. 할증금, 할인금액, 채움증에 대한 보상을 포함한 이자</p> <p>g. 어떤 명목, 어떤 형태의 배당금으로 보험회사에서 보험계약자에 대한 배당금을 포함한다.</p> <p>h. 로열티 또는 지적재산권의 사용료</p> <p>i. 임대수익 및 재산의 이용과 관련한 기타수익</p> <p>j. 특정기간내에 지급 또는 받는 생활부양금</p> <p>k. 채무면제 수익 단.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금액을 제외한 수익</p> <p>l. 환차이익</p> <p>m. 자산재평가 이익</p> <p>n. 보험 보상금(Premi asuransi)</p> <p>o. 영업 또는 자유업을 하는 납세자로 구성된 조직으로부터 받은 기금/연금</p> <p>p. 세전 순이익 증가분</p> <p>q. Syariah로부터 발생된 이익</p> <p>r. 국세기본법에 의한 공탁된 금액에 대한 환급액에 대한 이자</p> <p>s. Surplus Bank indonesia (중앙은행이자)</p> <p>(1a) 1항의 외국인인 아래의 조항을 전제로 인도네시아에서 수취 또는 획득한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 대상이 된다</p> <p>a. 특정 전문성 보유</p> <p>b. (1)항의 국내납세자가 된 이후부터 계산하여 4과세기간동안 적용된다</p> <p>(1b) 1a 항의 인도네시아에서 수취 또는 획득한 소득의 정의에는 외국인이 인도네시아 내에서의 노동, 용역 또는 활동과 관련하여 수취 또는 획득한 소득으로써 인도네시아 밖에서 지급 받는 소득도 포함된다</p> <p>(1c) (1a)조항은외국인이 인도네시아 밖에서 획득한 소득이 발생한 국가 또는 관할권과 인도네시아 간의 이중과세방지협약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p> <p>(1d) (1a)조항의 특정 전문성의 기준과 외국인에 대한 소득세 적용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재무부장관령에 정한다</p>	<p>변경</p> <p>추가</p> <p>추가</p> <p>추가</p> <p>추가</p>

III. 부록편

No	UU Pajak Penghasilan (소득세법 개정 전)	UU Cipta Kerja (소득세법 개정 후)	비고
	<p>(3) 세금대상에 제외되는 것은 아래와 같다</p> <p>a. 비영리단체의 기부금, Zakat 정부에 의해 인정된 기관의 현금, 재무부장관이 지정한 종교, 교육, 사회 또는 영세업에 의한 증여재산 단,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 한함</p> <p>b. 상속재산(Warisan)</p> <p>c. 법인의 현금, 현물 출자 재산</p> <p>d. 노동/용역의 대가로 지불되는 현물 즉, 쌀, 설탕, 차량, 주택, 의료혜택 등으로 15조에 언급하는 특별 계산 방법을 적용 받는 납세자 최종분리과세를 적용받는 납세자는 제외</p> <p>e. 보험회사가 개인에게 지불하는 건강보험, 상해보험, 생명 보험, 장학보험등의 보험금</p> <p>f. 인도네시아 납세의무자인 유한회사, 협동조합, 국영기업, 인도네시아 설립되고 소재한 사업체에 대한 지분 참여로 발생하는 배당 또는 이익금중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p> <p>1. 배당은 이익잉여금에서 발생되어야 하고</p> <p>2. 배당을 받는 회사의 지분이 25% 이상</p>	<p>(3) 세금대상에 제외되는 것은 아래와 같다</p> <p>a. 비영리단체의 기부금, Zakat 정부에 의해 인정된 기관의 현금, 재무부장관이 지정한 종교, 교육, 사회 또는 영세업에 의한 증여재산 단,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 한함</p> <p>b. 상속재산(Warisan)</p> <p>c. 법인의 현금, 현물 출자 재산</p> <p>d. 노동/용역의 대가로 지불되는 현물 즉, 쌀, 설탕, 차량, 주택, 의료혜택 등으로 15조에 언급하는 특별 계산 방법을 적용 받는 납세자 최종분리과세를 적용받는 납세자는 제외</p> <p>e. 피보험자의 사고, 질병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 및 장학보험금</p> <p>f.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배당금 또는 기타소득 :</p> <p>1. 납세자가 수령하거나 수령한 국내 배당금으로</p> <p>a) 배당금이 일정기간내에 인도네시아 영내에 투자되는 국내 개인 및</p> <p>b) 국내법인</p> <p>2. 해외에서 발생하는 배당금과 국내 법인 납세자 또는 개인 거주 납세자가 수령하거나 획득한 해외 고정사업장에서 얻은 세후 소득이 인도네시아 영토내에서 다른 사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투자되거나 사용되는 경우 일정 기간내에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p> <p>a) 투자되는 세후소득과 배당금은 세후이익의 30%이상이어야 한다.</p> <p>b)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외국법인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은 동 법 제 18조(2)항 적용과 관련하여 국제청장이 배당에 대한 세금을 확정하기전에 투자되어야 한다.</p> <p>3. 2항에 언급된 해외에서 발생한 배당금은 다음과 같다.</p> <p>a)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해외법인의 배당금</p> <p>b)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해외법인에서 배당금</p> <p>4. (3b)에 언급된 배당금과 (2b)항의 외국 고정사업장으로부터의 세후 소득이 세후 이익의 30% 미만으로 인도네시아에 투자되는 경우에는 다음 조항이 적용된다.</p> <p>a. 그 투자된 배당과 세후 이익은 소득세 적용으로부터 면제됨</p> <p>b. 세후 이익의 30%와 a항의 투자된 배당 및 세후 소득과의 차이는 소득세 과세된다.</p> <p>c. 세후 이익의 나머지 70%에는 소득세가 적용되지 않는다.</p> <p>5. (2).b.의 배당과 (3).a.의 외국 고정사업장으로부터의 세후 소득이 세후 이익의 30% 이상 인도네시아에 투자되는 경우에는 다음 조항이 적용된다.</p> <p>a. 그 투자된 배당과 세후 이익은 소득세 적용으로부터 면제된다</p> <p>b. a.의 투자된 배당 및 세후 이익을 차감한 나머지 세후 이익에는 소득세가 적용되지 않는다</p>	<p>변경</p> <p>변경</p>

No	UU Pajak Penghasilan (소득세법 개정 전)	UU Cipta Kerja (소득세법 개정 후)	비고
	<p>g. 재무부 장관의 허가에 의해 설립된 퇴직기금으로 운영되는 회사에서 지급되는 연금</p> <p>h. 재무부 장관이 정한 특종업종의 g 항에서 언급한 퇴직, 노후연금으로 된 자금으로 발생된 수익</p> <p>i. 주식회사가 아닌 합명, 합자회사로부터의 수익의 배분</p> <p>j. 삭제</p> <p>k. 인도네시아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벤처회사 출자자에 대한 소득으로 아래에 해당되는 것</p> <p>1. 재무부장관이 정한 특수 업종의 영세, 중소기업</p> <p>2. 자본금이 증권거래소에 거래되지 않는 회사</p> <p>l. 재무부장관의 규정에 충족되는 장학금</p> <p>m. 해당기관에 등록된 비영리(Nirlaba)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기관, 시험연구 개발기관이나 법인의 잉여금으로 4년 이내에 동일 목적으로 재 투자될 잉여금으로 재무부장관 규정으로 정한다</p> <p>n. 재난이나 천재지변에 의해 어려움에 처해있는 납세자에게 BPJS 가 지급한 지원금으로 재무부 장관 규정으로 정한다.</p>	<p>6. (2b)항의 증권거래소에서 주식이 거래되지 않는 외국 법인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이 국세청장이 소득세법 제18조 (2)를 적용하여 그 배당에 대해 세액확정서를 발급한 이후 인도네시아에 투자된 경우에는 (2)항의 소득세 적용으로부터의 면제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p> <p>7. 고정사업장을 통하지 않은 외국 사업활동으로부터의 소득으로써 내국 법인 납세자 또는 내국 개인 납세자가 수취 또는 획득한 소득은 특정 기간 내에 인도네시아에 투자되고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세 적용으로부터 면제된다.</p> <p>a. 국외의 활동 중인(active) 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일 것</p> <p>b. 외국 소유 기업으로부터의 소득이 아닐 것</p> <p>8. 7)항과 (12)항의 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기 납부된 소득세에 대해서는 다음 조항을 적용한다.</p> <p>a. 납부할 소득세로 계산되지 아니한다.</p> <p>b. 비용 또는 소득공제 될 수 없다</p> <p>c. 초과 납부에 대한 환급 신청을 할 수 없다</p> <p>9. 납세자가 (7)항과 (12)항의 특정 기간 안에 소득을 투자하지 않는 경우 다음 조항을 적용한다.</p> <p>a. 그 국외로부터의 소득은 획득된 과세연도의 소득이 된다.</p> <p>b. 그 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기 납부된 소득세는 동법 제24조의 공제 대상이 된다</p> <p>10. 다음의 세부 규정은 재무부령으로 정함</p> <p>a. 기준, 방법, (5) (7) (12)항의 특정 기간</p> <p>b. (5) (7) (12)항의 소득세 적용 면제 방법</p> <p>c. (8), (9)항의 배당 한도에 관한 변경</p> <p>g. 재무부 장관의 허가에 의해 설립된 퇴직기금으로 운영되는 회사에서 지급되는 연금</p> <p>h. 재무부 장관이 정한 특종업종의 g 항에서 언급한 퇴직, 노후연금으로 된 자금으로 발생된 수익</p> <p>i. 주식회사가 아닌 조합, 합명, 합자회사로부터의 수익의 배분</p> <p>j. 삭제</p> <p>k. 인도네시아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벤처회사 출자자에 대한 소득으로 아래에 해당되는 것</p> <p>1. 재무부장관이 정한 특수 업종의 영세, 중소기업</p> <p>2. 자본금이 증권거래소에 거래되지 않는 회사</p> <p>l. 재무부장관의 규정에 충족되는 장학금</p> <p>m. 해당기관에 등록된 비영리(Nirlaba)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기관, 시험연구 개발기관이나 법인의 잉여금으로 4년 이내에 동일 목적으로 재 투자될 잉여금으로 재무부장관 규정으로 정한다</p> <p>n. 재난이나 천재지변에 의해 어려움에 처해있는 납세자에게 BPJS 가 지급한 지원금으로 재무부 장관 규정으로 정한다.</p>	

Ⅲ. 부록편

No	UU Pajak Penghasilan (소득세법 개정 전)	UU Cipta Kerja (소득세법 개정 후)	비고
		o. Hajj 행정원가 (BPIH) 및 / 또는 특별 BPIH를 위해 예치된 자금 및 특정 분야 또는 금융 상품에서 Hajj 금융 개발로 인한 수입은 Badan Pengelola Keuangan Haji (BPKH)에 의해 수령되며, 그 조항은 재무부 장관의 규정에 따라 정한다.	추가
		잉여금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대 4년 이내에 사회 및 종교 시설 및 기반 시설의 형태로 재투자 조항은 재무부 장관의 규정에 정한다.	추가
3	<p>Pasal 26</p> <p>(1) 인도네시아에 있는 법인이 해외법인에게 지급하는 다음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과세로써 총액의 20% 원천징수한다.</p> <p>a. 배당금</p> <p>b. 이자</p> <p>c. 로열티, 임대료, 자산운영에 대한 기타소득</p> <p>d. 용역, 노동, 활동에 대한 대가</p> <p>e. 선물 및 보상</p> <p>f. 연금 및 기타 지출</p> <p>g. 할증스와과 보호거래</p> <p>h. 채무면제 이익</p> <p>(1a) 1항에 명시한 해외 납세자의 주소지는 상기소득의 수혜를 받는 지역이 해외이다.</p> <p>이하 동일</p>	<p>Pasal 26</p> <p>(1) 인도네시아에 있는 법인이 해외법인에게 지급하는 다음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과세로써 총액의 20% 원천징수한다.</p> <p>a. 배당금</p> <p>b. 이자</p> <p>c. 로열티, 임대료, 자산운영에 대한 기타소득</p> <p>d. 용역, 노동, 활동에 대한 대가</p> <p>e. 선물 및 보상</p> <p>f. 연금 및 기타 지출</p> <p>g. 할증스와과 보호거래</p> <p>h. 채무면제 이익</p> <p>(1a) 1항에 명시한 해외 납세자의 주소지는 상기소득의 수혜를 받는 지역이 해외이다.</p> <p>(1b) 1항 b 호에 언급된 부채 상환 보증과 관련하여 보험료, 할인 및 보상을 포함하여 이자를 지불 할 의무가있는 당사자의 총액의 20% 비율은 정부 규정에 의해 감소될 수 있다.</p> <p>이하 동일</p>	추가

3. 부가세법 개정 (Pasal 112)

인도네시아 부가세법은 1983년 UU No.8/1983 제정되어 3차에 걸쳐 개정되어 최근 개정된 부가세법은 2009년 개정된 UU No.42/2009 이며, 이에 몇몇 조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No	UU PPN (부가세법 개정 전)	UU Cipta Kerja (부가세법 개정 후)	비고
1	<p>Pasal 1A</p> <p>(1) 과세 대상 물건의 양도에 대한 정의</p> <p>a. 어떠한 계약으로 인한 과세 대상 물건의 권리 양도</p> <p>b. 임차에 대한 계약이나 또는 리스에 대한 계약으로 인한 과세 대상 물건의 양도</p> <p>c. 중개상이나 경매에 의한 과세 대상 물건의 양도</p> <p>d. 과세대상 물건에 대한 자가 소비 또는 무상 제공</p> <p>e. 처음부터 매매 목적이 아닌 자산이나 저장품이 청산 때에 남아 있을 경우 이의 매매는 과세 대상 물건의 양도로 간주 환급 가능</p> <p>f. 본지점간의 거래, 지점간의 거래간 과세 대상 물건의 양도</p> <p>g. 위탁품으로서 과세 대상 물건의 양도</p> <p>h. 과세 대상 기업이 양도하는 과세 대상 물건으로서 이슬람 원칙에 의거한 금융 계약을 목적으로 과세 대상 기업에서 과세 대상 물건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양도인이 직접 양도</p> <p>(2) 과세 대상 물건의 양도로 간주하지 않는 것</p> <p>a. 상법에서 의미하는 중개상에게 하는 과세대상물건의 양도</p> <p>b. 채권 또는 채무의 보증으로 과세대상 물건의 양도</p> <p>c. 제1조 f항의 경우로 본사 관할 세무신고 허가를 득한 과세 대상 물건의 양도</p> <p>d. 결합, 통합, 확장, 해결과 인수하는 기업과 인계하는 기업이 과세 대상 기업이어야 한다는 조건으로한 기업 인수를 목적으로한 과세 대상 물건의 전환</p>	<p>Pasal 1A</p> <p>(1) 과세 대상 물건의 양도에 대한 정의</p> <p>a. 어떠한 계약으로 인한 과세 대상 물건의 권리 양도</p> <p>b. 임차에 대한 계약이나 또는 리스에 대한 계약으로 인한 과세 대상 물건의 양도</p> <p>c. 중개상이나 경매에 의한 과세 대상 물건의 양도</p> <p>d. 과세대상 물건에 대한 자가 소비 또는 무상 제공</p> <p>e. 처음부터 매매 목적이 아닌 자산이나 저장품이 청산 때에 남아 있을 경우 이의 매매는 과세 대상 물건의 양도로 간주 환급 가능</p> <p>f. 본지점간의 거래, 지점간의 거래간 과세 대상 물건의 양도</p> <p>g. 삭제</p> <p>h. 과세 대상 기업이 양도하는 과세 대상 물건으로서 이슬람 원칙에 의거한 금융 계약을 목적으로 과세 대상 기업에서 과세 대상 물건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양도인이 직접 양도</p> <p>(2) 과세 대상 물건의 양도로 간주하지 않는 것</p> <p>a. 상법에서 의미하는 중개상에게 하는 과세대상물건의 양도</p> <p>b. 채권 또는 채무의 보증으로 과세대상 물건의 양도</p> <p>c. 제1조 f항의 경우로 본사 관할 세무신고 허가를 득한 과세 대상 물건의 양도</p> <p>d. 결합, 통합, 확장, 해결과 인수하는 기업과 인계하는 기업이 과세 대상 기업이어야 한다는 조건으로한 기업 인수를 목적으로 주식에 대한 자본금을 지불할 목적인 과세 대상 물건의 전환</p>	<p>변경</p> <p>변경</p>

Ⅲ. 부록편

No	UU PPN (부가세법 개정 전)	UU Cipta Kerja (부가세법 개정 후)	비고
	e. 거래를 조건으로 하지 않은 초기 목적으로 회사의 해산시 남은 것은 제9조 8항의 b와 c에 의거하여 적립할 수 없는 과세 대상 물건	e. 거래를 조건으로 하지 않은 초기 목적으로 회사의 해산시 남은 것은 제9조 8항의 b와 c에 의거하여 적립할 수 없는 과세 대상 물건	
2	<p>Pasal 4A</p> <p>(1) 삭제됨</p> <p>(2)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종류의 비과세 대상 물건은 다음과 같은 분류에 속하는 특정 물건을 말한다.</p> <p>a. 자연 원천에서 채취한 광산물이나 탐사물</p> <p>b. 국민이 필요로 하는 생필품</p> <p>c. 급식사업이나 케atering이 제공하는 음식과 음료나 길거리 음식 또는 길거리 음식이 아닌 음식과 음료를 포함한 호텔, 식당, 음식점, 포장마차등에서 준비된 음식이나 음료</p> <p>d. 현금, 금과와 유가증권</p> <p>(3)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종류의 비과세 대상 영역은 다음과 같은 분류에 속하는 특정 영역을 말한다.</p> <p>a. 의료 서비스</p> <p>b. 사회 복지 서비스</p> <p>c. 우편 배달 서비스</p> <p>d. 금융 서비스</p> <p>e. 보험</p> <p>f. 종교 관련 서비스</p> <p>g. 교육</p> <p>h.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p> <p>i. 광고용이 아닌 방송 서비스</p> <p>j. 해외 항공 운송 서비스에서 분리될 수 없는 국내의 육상, 해상, 및 항공 운송 서비스</p> <p>k. 인력 용역</p> <p>l. 호텔업</p> <p>m. 대중적으로 정부 사업 실행을 목적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용역</p> <p>n. 주차장 제공 서비스</p> <p>o. 동전을 사용하는 공중 전화 서비스</p> <p>p. 송금 서비스</p> <p>q. 케atering 서비스</p>	<p>Pasal 4A</p> <p>(1) 삭제됨</p> <p>(2)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종류의 비과세 대상 물건은 다음과 같은 분류에 속하는 특정 물건을 말한다.</p> <p>a. 석탄광산에서 채취한 것을 제외한 자연 원천에서 채취한 광산물이나 탐사물</p> <p>b. 국민이 필요로 하는 생필품</p> <p>c. 급식사업이나 케atering이 제공하는 음식과 음료나 길거리 음식 또는 길거리 음식이 아닌 음식과 음료를 포함한 호텔, 식당, 음식점, 포장마차등에서 준비된 음식이나 음료</p> <p>d. 현금, 금과와 유가증권</p> <p>(3)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종류의 비과세 대상 영역은 다음과 같은 분류에 속하는 특정 영역을 말한다.</p> <p>a. 의료 서비스</p> <p>b. 사회 복지 서비스</p> <p>c. 우편 배달 서비스</p> <p>d. 금융 서비스</p> <p>e. 보험</p> <p>f. 종교 관련 서비스</p> <p>g. 교육</p> <p>h.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p> <p>i. 광고용이 아닌 방송 서비스</p> <p>j. 해외 항공 운송 서비스에서 분리될 수 없는 국내의 육상, 해상, 및 항공 운송 서비스</p> <p>k. 인력 용역</p> <p>l. 호텔업</p> <p>m. 대중적으로 정부 사업 실행을 목적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용역</p> <p>n. 주차장 제공 서비스</p> <p>o. 동전을 사용하는 공중 전화 서비스</p> <p>p. 송금 서비스</p> <p>q. 케atering 서비스</p>	
3	<p>Pasal 9</p> <p>(1) 삭제됨</p>	<p>Pasal 9</p> <p>(1) 삭제됨</p>	

	UU PPN (부가세법 개정 전)	UU Cipta Kerja (부가세법 개정 후)	비고
	<p>(2) 어떠한 과세 기간내에 발생한 매입 부가세는 동일한 과세 기간 내의 매출 부가세와 상계처리한다.</p> <p>(2a) 아직 생산을 하지 않아 내야 할 세금 취득한 물품에 대한 매입부가세 및/또는 자본 물품의 수입에 대한 양도를 아직 하지 않은 과세 대상 기업은 공제가 가능하다</p> <p>(2b) 공제된 매입부가세는 반드시 제13조 5항과 9항에서 명시한 규정들을 충족한 세금계산서를 사용해야 한다.</p> <p>(3) 만일 매출부가세가 매입부가세보다 클 경우 그 차액은 과세대상 기업이 납부하여야 한다</p> <p>(4) 만일 매입부가세가 매출부가세보다 클 경우 그 차액은 환급 또는 익월로 이월 상계처리 가능하다</p> <p>(4a) 4조항이 의미하는 매입부가세가 초과될 경우 회계연도 말에 환급을 요청할 수 있다</p> <p>(4b) 상기 제4조와 제 4a조가 의미하는 규정을 제외한 초과 매입부가세에 대하여 매 세금정산시에 환급을 요청할 수 있다</p> <p>a. 유형의 과세 대상 물건 수출을 하는 과세대상 기업</p> <p>b. 부가세 징수 업체에게 과세대상 물건 및 과세 대상 영역의 양도를 하는 과세 대상 기업</p> <p>c. 부가세가 징수되지 않는 과세 대상 물건 및 과세 대상 영역의 양도를 하는 과세대상 기업</p> <p>d. 무형의 과세 대상 물건을 수출하는 과세 대상 기업</p> <p>e. 과세 대상 영역을 수출하는 과세 대상 기업</p> <p>f. 상기 제2a조가 의미하는 생산단계에 이르지 아니한 과세 대상 기업</p>	<p>(2) 어떠한 과세 기간내에 발생한 매입 부가세는 동일한 과세 기간 내의 매출 부가세와 상계처리한다.</p> <p>(2a)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확정되기 전으로써 과세 재화 및 과세 영역의 획득, 과세 재화 수입, 과세지역 밖으로부터 과세지역내로의 무체 과세 재화의 이용 또는 과세 영역의 이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동법에 따른 공제 요건을 준수하는 한 공제될 수 있다</p> <p>(2b) 공제된 매입부가세는 반드시 제13조 5항과 9항에서 명시한 규정들을 충족한 세금계산서를 사용해야 한다.</p> <p>(3) 만일 매출부가세가 매입부가세보다 클 경우 그 차액은 과세대상 기업이 납부하여야 한다</p> <p>(4) 만일 매입부가세가 매출부가세보다 클 경우 그 차액은 환급 또는 익월로 이월 상계처리 가능하다</p> <p>(4a) 4조항이 의미하는 매입부가세가 초과될 경우 회계연도 말에 환급을 요청할 수 있다</p> <p>(4b) 상기 제4조와 제 4a조가 의미하는 규정을 제외한 초과 매입부가세에 대하여 매 세금정산시에 환급을 요청할 수 있다</p> <p>a. 유형의 과세 대상 물건 수출을 하는 과세대상 기업</p> <p>b. 부가세 징수 업체에게 과세대상 물건 및 과세 대상 영역의 양도를 하는 과세 대상 기업</p> <p>c. 부가세가 징수되지 않는 과세 대상 물건 및 과세 대상 영역의 양도를 하는 과세대상 기업</p> <p>d. 무형의 과세 대상 물건을 수출하는 과세 대상 기업</p> <p>e. 과세 대상 영역을 수출하는 과세 대상 기업</p> <p>f. 삭제됨</p>	<p>변경</p> <p>변경</p>

Ⅲ. 부록편

	UU PPN (부가세법 개정 전)	UU Cipta Kerja (부가세법 개정 후)	비고
	<p>(4c) 낮은 위험율의 과세 대상 기업으로 분류되는, 상기 제 4b항 a에서 f까지의 규정이 명시하는 과세 대상 기업에 대한 초과 매입 부가세 환급은, 기본 조세법에 관한 규정을 다룬 UU No.6 Thn 1983과 그 개정안의 제17C조 1항에 명시된 규정에 따른 과오납세의 선환급으로 이루어진다.</p> <p>(4d) 상기 제4c항이 의미하는 과오납세의 선환급을 받은 낮은 위험율의 과세 대상 기업에 관한 규율은 재무부 장관법에 의거하여 규제한다.</p> <p>(4e) 국세청장은 제4c항에 명시된 과세 대상 기업에 대하여 세무 조사를 실시하고 과세 결정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이는 과오납세에 대한 선환급이 이루어진 이후에 시행 가능하다.</p> <p>(4f) 상기 제4e항에 명시된 세무 조사의 결과에 의거하여 국세청장이 추정 결정서 (SKPKB)를 발급할 경우, 미지급 세금 총액에 기본 조세법에 대한 법규 UU N0.6 THN 1983과 그 개정안의 제13조 2항에 명시된 행정 과태료 이자를 합하여 청구한다.</p> <p>(5) 특정 과세 기간에 과세 대상 기업이 미납세금의 양도 뿐만이 아니라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경우의 양도도 이행하고, 또 한 해당 미납세금의 양도에 대한 매입 부가세를 장부를 통해 확실히 알 수 있는 경우, 징수 될 수 있는 매입 부가세의 금액은 납부할 세금의 양도와 관련된 매입 부가세이다.</p> <p>(6) 특정 과세 기간에 과세 대상 기업이 미납세금의 양도 뿐만이 아니라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경우의 양도도 이행하고, 또한 해당 미납세금의 양도에 대한 매입 부가세를 확실히 알 수 없는 경우, 미납세금의 양도에 대하여 환급 받을 수 있는 매입 부가세의 금액은 재무부 장관 규정에 근거하여 산출 되어진다.</p>	<p>(4c) 낮은 위험율의 과세 대상 기업으로 분류되는, 상기 제 4b항 a에서 f까지의 규정이 명시하는 과세 대상 기업에 대한 초과 매입 부가세 환급은, 기본 조세법에 관한 규정을 다룬 UU No.6 Thn 1983과 그 개정안의 제17C조 1항에 명시된 규정에 따른 과오납세의 선환급으로 이루어진다.</p> <p>(4d) 상기 제4c항이 의미하는 과오납세의 선환급을 받은 낮은 위험율의 과세 대상 기업에 관한 규율은 재무부 장관법에 의거하여 규제한다.</p> <p>(4e) 국세청장은 제4c항에 명시된 과세 대상 기업에 대하여 세무 조사를 실시하고 과세 결정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이는 과오납세에 대한 선환급이 이루어진 이후에 시행 가능하다.</p> <p>(4f) 상기 제4e항에 명시된 세무 조사의 결과에 의거하여 국세청장이 추정 결정서 (SKPKB)를 발급할 경우, 미지급 세금 총액에 기본 조세법에 대한 법규 UU N0.6 THN 1983과 그 개정안의 제13조 2항에 명시된 행정 과태료 이자를 합하여 청구한다.</p> <p>(5) 특정 과세 기간에 과세 대상 기업이 미납세금의 양도 뿐만이 아니라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경우의 양도도 이행하고, 또 한 해당 미납세금의 양도에 대한 매입 부가세를 장부를 통해 확실히 알 수 있는 경우, 징수 될 수 있는 매입 부가세의 금액은 납부할 세금의 양도와 관련된 매입 부가세이다.</p> <p>(6) 특정 과세 기간에 과세 대상 기업이 미납세금의 양도 뿐만이 아니라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경우의 양도도 이행하고, 또한 해당 미납세금의 양도에 대한 매입 부가세를 확실히 알 수 없는 경우, 미납세금의 양도에 대하여 환급 받을 수 있는 매입 부가세의 금액은 재무부 장관 규정에 근거하여 산출 되어진다.</p>	

	UU PPN (부가세법 개정 전)	UU Cipta Kerja (부가세법 개정 후)	비고
	<p>(6a) 상기 제 2a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미 공제되어지고, 또 이미 환급되어진 매입부가세는 해당 과세 대상 기업이 매입 부가세의 공제가 시작된 과세 기간으로부터 최대 3년의 기간동안 과세 대상 기업이 생산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과세 대상 기업에 의해 환급되어야만 한다.</p> <p>(6b) 상기 제6a항에 명시된 기간, 계산, 및 환급 방법에 대한 규정은 재무부 장관 규정에 의거하여 정한다</p>	<p>(6a) 상기 제2a항에 매입세액으로써 최초 공제를 받은 납세기간 이후부터 3년까지 과세 재화나 과세 용역의 제공 또는 과세 재화나 과세 용역의 수출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3년 간 공제를 받았던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한다.</p> <p>(6b) 삭제됨</p> <p>(6c) (6a)항의 기간은 특정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3년 이상으로 정해 질 수 있다.</p> <p>(6d) (6a)항은 해산(폐업)이나 일반과세자 포기 또는 직권 철회의 경우에는 최초 매입세액 공제이후 3년 이내에도 적용될 수 있다</p> <p>(6e) (6a)의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은 다음과 같다 a. 아래의 경우에는 국고로 귀속된다. 1. 일반과세자가 그 매입세액에 대해 기 환급을 받은 경우 2. 일반과세자가 어떤 납세기간에 매출세액에서 그 매입세액을 기 공제한 경우 b. (8)의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은 (6a)항의 3년이라는 기간이 경과하거나, 해산(폐업)한 때, 또는 납세자가 일반과세자를 포기한 때 다음 납세기간으로 이월될 수 없고 환급신청을 할 수 없다.</p> <p>(6f). (6a)항의 매입세액 환급액의 납부는 늦어도 다음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a. (6a)항의 3년 기간 종료일 이후 달의 말일 b. (6c)항의 다른 기간 종료일 이후 달의 말일 c. (6d)항의 해산(폐업)일 또는 일반과세자 취소일 이후 달의 말일</p> <p>(6g) 일반과세자가 (6f)항의 기간에 따라 환급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장은 (6e)항에 따라 납부되었어야 할 세액에 대한 과소납부 세액확정서를 발급하며 국세기본법 13조(2a)항의 행정제재가 더해진다</p>	<p>변경</p> <p>변경</p> <p>추가</p> <p>추가</p> <p>추가</p> <p>추가</p> <p>추가</p>

Ⅲ. 부록편

	UU PPN (부가세법 개정 전)	UU Cipta Kerja (부가세법 개정 후)	비고
	<p>(7) 1년 이내의 총소득이 특정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과세 대상 기업으로부터 공제될 수 있는 매입 부가세의 금액은, 제7a항에 명시된 과세 대상 기업을 제외하고는 매입 부가세 공제액을 계산하기 위한 지침을 이용하여 산출할 수 있다.</p> <p>(7a) 특정 사업 활동을 하고 있는 과세 대상 기업으로부터 공제 받은 매입 부가세의 금액은 매입 부가세 공제액을 계산하기 위한 지침을 이용하여 산출할 수 있다.</p> <p>(7b) 상기 제7항에 명시된 총소득, 제7a항의 특정 사업 활동, 및 7항과 7a항에 명시된 매입 부가세 공제액을 계산하기 위한 지침에 대한 규정은 재무부 장관 규정에 의거하여 규제한다.</p> <p>(8) 상기 제 2항에 명시된 매입부가세의 공제는 다음의 경우에는 유효하지 않다</p> <p>a. 부가세 과세등록(PKP) 지정받기 이전에 발생한 과세 대상 물품 또는 과세 대상 용역의 취득</p> <p>b. 사업 활동과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과세 대상 물품 또는 과세 대상 용역의 취득</p> <p>c. 거래 또는 임대 물품을 제외한 세단(Sedan)과 스테이션 왜건(Station wagon) 형태의 차량의 취득 및 유지</p> <p>d. 기업이 부가세 신고 업제모 확인되기 이전에 발생한 무형의 과세 대상 물건의 이용 또는 비과세 대상 지역에서의 과세 대상 용역의 이용</p> <p>e. 삭제됨</p> <p>f. 제 13조 5항 또는 9항에 명시된 규정을 충족시키지 않았거나, 과세 대상 물품 구매자가 또는 과세 대상 용역의 수혜자의 이름, 주소 및 납세자 번호를 기입하지 않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과세 대상 물품 또는 과세 대상 용역의 취득</p> <p>g.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제 13조 6항의 규정을 충족시키지 않은 무형의 과세 대상 물건의 이용 또는 비과세 대상 지역에서의 과세 대상 용역의 이용</p>	<p>(7) 1년 이내의 총소득이 특정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과세 대상 기업으로부터 공제될 수 있는 매입 부가세의 금액은, 제7a항에 명시된 과세 대상 기업을 제외하고는 매입 부가세 공제액을 계산하기 위한 지침을 이용하여 산출할 수 있다.</p> <p>(7a) 특정 사업 활동을 하고 있는 과세 대상 기업으로부터 공제 받은 매입 부가세의 금액은 매입 부가세 공제액을 계산하기 위한 지침을 이용하여 산출할 수 있다.</p> <p>(7b) 상기 제7항에 명시된 총소득, 제7a항의 특정 사업 활동, 및 7항과 7a항에 명시된 매입 부가세 공제액을 계산하기 위한 지침에 대한 규정은 재무부 장관 규정에 의거하여 규제한다.</p> <p>(8) 상기 제 2항에 명시된 매입부가세의 공제는 다음의 경우에는 유효하지 않다</p> <p>a. 삭제됨</p> <p>b. 사업 활동과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과세 대상 물품 또는 과세 대상 용역의 취득</p> <p>c. 거래 또는 임대 물품을 제외한 세단(Sedan)과 스테이션 왜건(Station wagon) 형태의 차량의 취득 및 유지</p> <p>d. 삭제됨</p> <p>e. 삭제됨</p> <p>f. 제 13조 5항 또는 9항에 명시된 규정을 충족시키지 않았거나, 과세 대상 물품 구매자가 또는 과세 대상 용역의 수혜자의 이름, 주소 및 납세자 번호를 기입하지 않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과세 대상 물품 또는 과세 대상 용역의 취득</p> <p>g.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제 13조 6항의 규정을 충족시키지 않은 무형의 과세 대상 물건의 이용 또는 비과세 대상 지역에서의 과세 대상 용역의 이용</p>	

	UU PPN (부가세법 개정 전)	UU Cipta Kerja (부가세법 개정 후)	비고
	<p>h. 매입부가세가 과세 결정서의 발급과 함께 청구된 과세 대상 물품 또는 과세 대상 영역의 취득</p> <p>i. 매입부가세가 부가세에 대한 기간 세금 신고서에 기입되어 있지 않고 그 사실이 세무 감사 이행중에 발견된 과세 대상 물품 또는 과세 대상 영역의 취득</p> <p>j. 과세 대상 기업이 상기 제 2a항에 명시된 것과 같이 생산하기 이전에 취득한 과세대상 물품. 단 자본재나 과세 대상 영역은 제외 된다.</p> <p>(9) 매입부가세가 발생된 시점에 상계 또는 환급되지 않은 매입부가세는 늦어도 발생일자로부터 3개월 이내 에 환급 또는 상계처리하여야 한다.</p> <p>(10) 삭제됨</p> <p>(11) 삭제됨</p> <p>(12) 삭제됨</p> <p>(13) 상기 제 4a항과 4b, 및 4c항에 명시된 초과 매입 부가세의 계산 및 환급 방법에 대한 규정은 재무부 장관 규정에 의거하여 규제한다.</p>	<p>h. 삭제됨</p> <p>i. 삭제됨</p> <p>j. 삭제됨</p> <p>(9)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때의 납세기간 종료일로부터 3 납세기간 내에 공제 가능한데, 비용으로 처리되었거나 과세 재화 또는 과세 영역의 취득가액으로 자본화되지 아니 하였어야 하고 부가가치세 및 사치품판매세법과 동 법의 공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p> <p>(9a) PKP로 확인되기 전에 BKP/JKP를 획득하거나 영외에서 무형 BKP 또는 JKP를 활용하여 징수해야하는 매입부가세의 80%를 매출부가세에서 공제 할 수 있다.</p> <p>(9b) 매입세액은 일반과세자에게 가능한데, 부가가치세법 및 사치품판매세법의 공제 요건과 동 법의 공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p> <p>(9c) 매입세액은 일반과세자에게 가능한데 세액 확정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이 납부 되었어야 하고 법적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아야 하며 부가가치세법 및 사치품판매세법과 동 법의 공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p> <p>(10) 삭제됨</p> <p>(11) 삭제됨</p> <p>(12) 삭제됨</p> <p>(13) 아래에 추가 규정은 재무부 장관 규정에 의거하여 규제한다.</p>	<p>변경</p>

Ⅲ. 부록편

	UU PPN (부가세법 개정 전)	UU Cipta Kerja (부가세법 개정 후)	비고
	<p>(14) 사업의 통합, 합병, 확장, 분리, 및 인수의 과정에서 과세 대상 물품의 전환이 이루어진 경우, 전환된 과세 대상 물품에 대한 매입 부가세 중 아직 원래의 과세 대상 기업으로부터 공제되지 않은 매입 부가세는 세금 계산서를 전환이 이루어진 이후에 발급받았고, 또한 해당 매입 부가세가 아직 비용 처리되거나 자본화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전환을 받은 과세 대상 기업으로부터 공제 받을 수 있다.</p>	<p>a. (2a)항의 재화 및 용역의 제공 또는 재화 및 용역의 수출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는 기준 b. (4a), (4b), (4c)항의 환급 및 계산 c. (6c)항의 특정 사업 분야의 결정 d. (6e)의 매입세액 환급액 납부 방법 e. (9a), (9b), (9c)항의 매입세액 공제 방법</p> <p>(14) 사업의 통합, 합병, 확장, 분리, 및 인수의 과정에서 과세 대상 물품의 전환이 이루어진 경우, 전환된 과세 대상 물품에 대한 매입 부가세 중 아직 원래의 과세 대상 기업으로부터 공제되지 않은 매입 부가세는 세금 계산서를 전환이 이루어진 이후에 발급받았고, 또한 해당 매입 부가세가 아직 비용 처리되거나 자본화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전환을 받은 과세 대상 기업으로부터 공제 받을 수 있다.</p>	<p>추가 변경 추가 추가 변경</p>
4	<p>Pasal 13</p> <p>(1) 과세 대상 기업은 다음의 경우 각각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p> <p>a. 제4조 1항 a 또는 f, 및 제 16D조에 명시된 과세 대상 물품의 양도 b. 제4조 1항 c에 명시된 과세 대상 용역의 양도 c. 제4조 1항 g에 명시된 무형의 과세 물품 대상의 수출, 또는 d. 제4조 1항 h에 명시된 과세 대상 용역의 수출</p> <p>(1a) 상기 제1항에 명시된 세금 계산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반드시 발급되어야 한다.</p> <p>a. 과세 대상 물품의 양도 또는 과세 대상 용역의 양도 시점</p> <p>b. 과세 대상 물품의 양도 또는 과세 대상 용역의 양도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대금을 지불받은 경우에는 그 대금의 지불 시점 c. 양도가 아직 이루어지는 단계중에 있는 경우, 그 결제 조건의 시점 d. 재무부 장관 규정에 의해 규정된 기타 시점</p>	<p>Pasal 13</p> <p>(1) 과세 대상 기업은 다음의 경우 각각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p> <p>a. 제4조 1항 a 또는 f, 및 제 16D조에 명시된 과세 대상 물품의 양도 b. 제4조 1항 c에 명시된 과세 대상 용역의 양도 c. 제4조 1항 g에 명시된 무형의 과세 물품 대상의 수출, 또는 d. 제4조 1항 h에 명시된 과세 대상 용역의 수출</p> <p>(1a) 상기 제1항에 명시된 세금 계산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반드시 발급되어야 한다.</p> <p>a. 과세 대상 물품의 양도 또는 과세 대상 용역의 양도 시점</p> <p>b. 과세 대상 물품의 양도 또는 과세 대상 용역의 양도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대금을 지불받은 경우에는 그 대금의 지불 시점 c. 양도가 아직 이루어지는 단계중에 있는 경우, 그 결제 조건의 시점 d. 재무부 장관 규정에 의해 규정된 기타 시점</p>	

	UU PPN (부가세법 개정 전)	UU Cipta Kerja (부가세법 개정 후)	비고
	<p>(2) 상기 제1항에 명시된 규정에서 제외되었던 경우, 과세 대상 기업은 동일한 과세 대상 물품의 구매자 또는 과세 대상 영역의 수혜자에게 이루어진 모든 양도를 포함하는 1개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p> <p>(2a) 상기 제2항에 명시된 세금 계산서는 양도가 이루어진 월말 이전에는 반드시 발급되어야 한다.</p> <p>(3) 삭제됨</p> <p>(4) 삭제됨</p> <p>(5) 세금 계산서는 반드시 과세 대상 물품의 양도 및/또는 과세 대상 영역의 양도에 대해 최소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p>a. 과세 대상 물품 또는 과세 대상 영역을 양도하는 당사자의 이름, 주소 및 납세자 번호</p> <p>b. 과세 대상 물품의 구매자 또는 과세 대상 영역의 수혜자의 이름, 주소 및 납세자등록번호</p> <p>c. 물품 또는 영역의 종류, 판매가 또는 급부 및 할인 금액</p> <p>d. 징수된 부가세</p> <p>e. 징수된 사치품에 대한 판매세</p> <p>f. 세금계산서 발급 코드, 번호 및 일자</p> <p>g. 세금계산서에 서명할 권한을 가진 당사자의 이름 및 서명</p>	<p>(2) 상기 제1항에 명시된 규정에서 제외되었던 경우, 과세 대상 기업은 동일한 과세 대상 물품의 구매자 또는 과세 대상 영역의 수혜자에게 이루어진 모든 양도를 포함하는 1개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p> <p>(2a) 상기 제2항에 명시된 세금 계산서는 양도가 이루어진 월말 이전에는 반드시 발급되어야 한다.</p> <p>(3) 삭제됨</p> <p>(4) 삭제됨</p> <p>(5) 세금 계산서는 반드시 과세 대상 물품의 양도 및/또는 과세 대상 영역의 양도에 대해 최소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p>a. 과세 대상 물품 또는 과세 대상 영역을 양도하는 당사자의 이름, 주소 및 납세자 번호</p> <p>b. 과세 대상 물품의 구매자 또는 과세 대상 영역의 수혜자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름, 주소 및 납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납세자는 여권번호 2. 과세 대상 물품의 구매자 또는 과세 대상 영역의 수혜자가 소득세법 3조의 국외의 경우에는 이름과 주소 <p>c. 물품 또는 영역의 종류, 판매가 또는 급부 및 할인 금액</p> <p>d. 징수된 부가세</p> <p>e. 징수된 사치품에 대한 판매세</p> <p>f. 세금계산서 발급 코드, 번호 및 일자</p> <p>g. 세금계산서에 서명할 권한을 가진 당사자의 이름 및 서명</p> <p>(5a) 소매업 과세업의 경우 재무부 장관 규정에 의해 추가로 규제되는 최종 소비자 특성을 가진 구매자에게 과세 물품 및/또는 과세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구매자의 신원과 판매자의 이름 및 서명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고 세금 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다</p>	<p>변경</p> <p>추가</p>

	UU PPN (부가세법 개정 전)	UU Cipta Kerja (부가세법 개정 후)	비고
	<p>(6) 국세청장은 위치가 세금 계산서와 동일시 된 특정 서류를 확정할 수 있다</p> <p>(7) 삭제됨</p> <p>(8) 세금 계산서의 발행 방법과 수정 방법, 또는 세금 계산서의 교체 방법에 관한 더 자세한 규정은 재무부 장관 규정에 의거하여 정한다.</p> <p>(9) 세금 계산서는 반드시 형식적이고 내용적인 측면에서의 조건들을 모두 충족시켜야만 한다.</p>	<p>(6) 국세청장은 위치가 세금 계산서와 동일시 된 특정 서류를 확정할 수 있다</p> <p>(7) 삭제됨</p> <p>(8) 세금 계산서의 발행 방법과 수정 방법, 또는 세금 계산서의 교체 방법에 관한 더 자세한 규정은 재무부 장관 규정에 의거하여 정한다.</p> <p>(9) 세금 계산서는 반드시 형식적이고 내용적인 측면에서의 조건들을 모두 충족시켜야만 한다.</p>	

4. 국세기본법 개정 (Pasal 113)

인도네시아 국세기본법은 1983년 UU No.6/1983 제정되어 3차에 걸쳐 개정되어 최근 개정된 국세기본법은 2007년 개정된 UU No.28/2007 이며, 이에 몇몇 조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No	UU KUP (국세기본법 개정 전)	UU Cipta Kerja (국세기본법 개정 후)	비고
1	<p>Pasal 8</p> <p>(1) 납세의무자 스스로가 원할 경우, 이미 제출된 세무 신고서를 서면 요청을 통해 수정 신고 할 수 있다. 단, 해당 세무신고서에 대한 국세청의 감사가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p> <p>(1a) 위의 제 1항에 언급한 세무 신고서의 수정이 결손 또는 환급 신청에 해당할 경우, 세무 신고서의 수정 신청은 해당 규정의 법적 소멸 시효 전 최대 2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p> <p>(2) 연간 세무 신고서의 수정으로 말미암아 부족 납세액이 발생할 경우 부족 세액의 월 2%의 행정과태료 이자가 부가되며, 월 계산은 결산 신고 마감일로부터 납부일까지 계산하며, 1일 초과하여도 한달로 계산한다.</p> <p>(2a) 기간 세금 신고서의 수정으로 말미암아 미납세금이 증가하여지면, 해당 납세자에게는 미납 세액 총액의 월 2%에 해당하는 금액의 행정과태료이자가 부가되며, 월 계산은 기간 세금 신고서의 마감일로부터 미납세액의 납부일까지 계산하며, 그 기간이 한 달이 채 되지 않아도 한 달로 계산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p>	<p>Pasal 8</p> <p>(1) 납세의무자 스스로가 원할 경우, 이미 제출된 세무 신고서를 서면 요청을 통해 수정 신고 할 수 있다. 단, 해당 세무신고서에 대한 국세청의 감사가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p> <p>(1a) 위의 제 1항에 언급한 세무 신고서의 수정이 결손 또는 환급 신청에 해당할 경우, 세무 신고서의 수정 신청은 해당 규정의 법적 소멸 시효 전 최대 2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p> <p>(2) 연간 세무 신고서의 수정으로 말미암아 부족 납세액이 발생할 경우 부족 세액에 대해 재무부장관이 정한 월 이자율에 따라 행정과태료 이자가 부가되며, 최대 24개월까지 적용되며 1일 초과하여도 한달로 계산한다.</p> <p>(2a) 기간 세금 신고서의 수정으로 말미암아 미납세금이 증가하여지면, 해당 납세자에게는 미납 세액 총액에 재무부장관이 정한 이자율의 행정과태료이자가 부가되며, 최대 24개월까지 적용되고, 한달이 되지 않아도 한 달로 계산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p> <p>(2b) 제 2 항 및 제 2a 항에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월 이자율은 기준 금리에 5%를 더한 다음 산정이 시작된 날부터 유효한 12로 나누어 계산한다.</p>	<p>비고</p> <p>변경</p> <p>변경</p> <p>추가</p>

Ⅲ. 부록편

No	UU KUP (국세기본법 개정 전)	UU Cipta Kerja (국세기본법 개정 후)	비고
	<p>(3) 세무 조사 후에라도 제38조(부지중의 오류)에 규정한 형사 처벌의 대상이되는 내용에 대해 특별(형사) 조치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의 과실을 인정하고 자진해서 미납세금을 납부할 경우 행정 과태료로 해당 미납세금의 150%(1.5배)에 해당하는 벌과금을 납부하면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다.</p> <p>(4) 국세청의 세무조사 후에라도 아직 해당 국세청에서 납세(과세) 결정서가 발급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하여,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세금 신고서를 수정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을 경우 해당 납세 의무자가 작성한 수정 신고서로 수정 신고가 가능하다</p> <p>a. 산출된 미납세금이 증가 또는 감소 b. 조세법에 의한 결손금이 감소 또는 증가 c. 재산 총액의 증가 또는 감소 d. 자본 총액의 증가 또는 감소로 인해 수정 신고가 가능하지만, 이미 진행중인 세무 감사는 계속 진행된다.</p> <p>(5) 제4항에 명시된 내용과 같이 세금 신고서의 작성에 과실이 있어 미납세금이 발생할 경우, 수정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먼저 미납세금 총액의 50%에 해당하는 행정 과태료를 포함한 총 미납 세금액을 납부 완료하여야만 한다.</p>	<p>(3) 예비 증거 조사를 수행 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의 과실을 인정하고는 오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자진해서 서면 진술을 통해</p> <p>a.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b. 부정확하거나 불안정한 내용이 포함된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내용이 잘못된 명세서를 첨부 한 경우 수사 개시되어 검찰에 통보되지 않는 한, 제38 조 또는 제 39 조 (1) 항 c와 d 적용은 면할 수 있다</p> <p>(3a) 제 3 항에 따른 과태료는 과소 납부 세액의 100 %의 가산세가 부과된다.</p> <p>(4) 국세청의 세무조사 후에라도 아직 해당 국세청에서 납세(과세) 결정서가 발급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하여,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세금 신고서를 수정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을 경우 해당 납세 의무자가 작성한 수정 신고서로 수정 신고가 가능하다</p> <p>a. 산출된 미납세금이 증가 또는 감소 b. 조세법에 의한 결손금이 감소 또는 증가 c. 재산 총액의 증가 또는 감소 d. 자본 총액의 증가 또는 감소로 인해 수정 신고가 가능하지만, 이미 진행중인 세무 감사는 계속 진행된다.</p> <p>(5) 제 4 항에 따른 부정확 한 신고로 인해 미납 세액에 대해 재무 부장관이 정하는 월 이자율에 따라 행정 가산세와 함께 별도의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한다.</p> <p>a. 연간 세무 신고서 제출 기한은 납부일까지 완료. 또는 b. 기간 세무 신고서 납부 기한은 납부일까지 완료되며 최대 24 개월이 적용되며 한 달 미만은 1 개월로 계산한다.</p> <p>(5a) 제 5 항에 따라 재무 부장관이 정하는 월 이자율은 기준 이자율에 10 %를 더한 후 제재 산정 일에 적용되는 12 로 나눈 값이다</p>	<p>변경</p> <p>추가</p>

No	UU KUP (국세기본법 개정 전)	UU Cipta Kerja (국세기본법 개정 후)	비고
	<p>(6) 납세 의무자가 직전 과세년도 또는 몇 년 전의 과세년도의 기 신고한 세무상의 누적 결손금과 수정 후의 누적 결손금의 차이를 증명하고 있는 과세 결정서, 이의신청 결정서, 정정 결정서, 조세심판 결정서 또는 재심결정서를 받은 경우, 해당 납세 의무자는 이미 신고된 연간 세금 신고서를 정정할 수 있다. 신고된 연간 세금 신고서의 수정은 세무감사 결정서, 이의신청 결정서, 정정 결정서, 조세심판 결정서, 또는 재심 결정서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정정할 수 있으며, 반드시 국세청의 세무 감사가 진행되기 이전에 수정신고가 접수되어야 한다.</p>	<p>(6) 납세 의무자가 직전 과세년도 또는 몇 년 전의 과세년도의 기 신고한 세무상의 누적 결손금과 수정 후의 누적 결손금의 차이를 증명하고 있는 과세 결정서, 이의신청 결정서, 정정 결정서, 조세심판 결정서 또는 재심결정서를 받은 경우, 해당 납세 의무자는 이미 신고된 연간 세금 신고서를 정정할 수 있다. 신고된 연간 세금 신고서의 수정은 세무감사 결정서, 이의신청 결정서, 정정 결정서, 조세심판 결정서, 또는 재심 결정서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정정할 수 있으며, 반드시 국세청의 세무 감사가 진행되기 이전에 수정신고가 접수되어야 한다.</p>	
2	<p>Pasal 9</p> <p>(1) 재무부 장관은 모든 세목의 기간(월) 납부세액의 납부 기한을 정하며, 늦어도 납세 의무 발생일로부터 또는 과세 기간의 마지막(월말)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p> <p>(2) 연간 소득세 신고서 상의 미납세금은 반드시 해당 소득 신고서의 신고 이전에 납부가 완료되어야 한다.</p> <p>(2a)상기 제1항에서 언급한 세금의 납부 기한을 경과할 경우 월 2%의 행정 과태료가 부가되며, 기간 계산은 납부 기한으로부터 납부한 일자까지로, 경과일이 한달을 채우지 않아도 한 달로 계산한다.</p> <p>(2b) 상기 제2항에서 언급한 미납세금의 납부가 해당 소득 신고서의 신고 기한을 경과하여 이루어질 경우 월 2%의 행정 과태료가 부가되며, 기간 계산은 납부 기한으로부터 납부한 일자까지로, 경과일이 한달을 채우지 않아도 한 달로 계산한다.</p>	<p>(2a)상기 제1항에서 언급한 세금의 납부 기한을 경과할 경우 재무부장관에 정한 월 이자율에 따라 행정과태료가 부가되며, 최대 2개월까지 부과. 기간 계산은 납부 기한으로부터 납부한 일자까지로, 경과일이 한달을 채우지 않아도 한 달로 계산한다.</p> <p>(2b) 상기 제2항에서 언급한 미납세금의 납부가 해당 소득 신고서의 신고 기한을 경과하여 이루어질 경우 재무부장관이 정한 월 이자율의 행정 과태료가 부가되며, 최대 2개월까지 부과, 기간 계산은 납부 기한으로부터 납부한 일자까지로, 경과일이 한달을 채우지 않아도 한 달로 계산한다.</p> <p>(2c) 상기(2a),(2b)항의 재무부장관이 정한 월 이자율은 기준이자율에 5%를 합하여 12개월 나누어 계산된다.</p>	

Ⅲ. 부록편

No	UU KUP (국세기본법 개정 전)	UU Cipta Kerja (국세기본법 개정 후)	비고
	<p>(3)납세 고지서(STP), 추정 결정서(STPKB), 추가 추정 결정서(STPBKT), 이의신청 결정서(SKK), 항소 결정서(PB), 및 재심 결정서(PPK) 등으로 인해 추가 납세액이 발생할 경우 해당 납세액은 반드시 각 서류의 발행 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되어야 한다.</p> <p>(3a) 영세업자나 특정 지역에 위치한 납세 의무자의 경우에는 제3항에서 명시한 납부 기한을 최장 2개월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규정은 재무부 장관 규정에 의거하여 정해진다.</p> <p>(4) 납세 의무자는 제2항에 명시된 미납 세금을 포함한 고지 세액에 대한 분할/연장 납부 신청을 국세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장의 승인 시 최장 12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며, 그 세부 시행령에 관하여는 재무부 장관 규정에 의거하여 결정한다.</p>	<p>(4) 납세 의무자는 제2항에 명시된 미납 세금을 포함한 고지 세액에 대한 분할/연장 납부 신청을 국세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세부 시행령에 관하여는 재무부장관 규정에 의거하여 결정한다.</p>	
3	<p>Pasal 11</p> <p>(1) 본 규정의 제17, 17B, 17C 및 17D조에서 명시된 세금의 과납 금액이 있을 경우, 해당되는 납세 의무자의 요청에 한해 환급 되며, 해당 납세 의무자에게 잔여 미납세금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공제하여 계산한다.</p> <p>(1a) 이의 신청 결정서(SKK), 정정 결정서(SKP), 행정 과태료 감면 결정서(SKPSA), 행정 과태료 면제 결정서(SKPSA), 확정 세금 감면 결정서(SKPKP), 확정 세금 취소 결정서(SKPKP), 조세 심판 결정서(PB), 조세 심판 재심 결정서(PPK) 및 이자 지급 결정서(SKPIB)에 의한 환급 세금은 규정에 의해 해당 납세 의무자에게 환급 되거나, 납세자에게 미납세금이 있을 경우 미납세금을 선 상계 처리한다.</p>		

No	UU KUP (국세기본법 개정 전)	UU Cipta Kerja (국세기본법 개정 후)	비고
	<p>(2) 상기 제1항과 1a항에서 언급한 환급 시기는, 제 17조 1항에 명시된 과납 결정서의 발행으로 인해 환급을 신청한 신청서의 접수일자로부터 1달 이내에 또는 제 17조 2항과 제 17B조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환급 결정서 (SKPLB)의 발행일로부터 1달 이내, 또는 제 17C조와 제 17D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과오 납세금 환급 결정서 (SKPPKP)의 발행일로부터 1달 이내, 또는 이의 신청 결정서(SKK), 정정 결정서(SKP), 행정 과태료 감면/면제 결정서(SKPSA), 확정 세금 감면 결정서 (SKPSA), 확정 세금 취소 결정서 (SKPSA), 조세 심판 결정서(SKPKP), 조세 심판 재심 결정서 (SKPKP) 그리고 이자 지급 결정서(SKPIB)의 발행일로부터 1달 이내에 또는 항소 결정서(PB)나 재심 결정(PPK)을 받은 후 1달 이내에 환급되어야 한다</p> <p>(3) 과납 세금에 대한 환급이 한달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부는 과세 환급의 지연에 대해 월 2%의 지연 이자를 지불하여야 하며, 그 기한은 상기 제 2항에 명시된 환급 시기의 종료일로부터 과세 환급이 이루어지는 일자까지의 일수를 계산하여 이자를 지불한다.</p> <p>(4) 과납세금의 계산과 환급 방법은 재무부 장관 규정에 의거하여 결정한다.</p>	<p>(3) 과납 세금에 대한 환급이 한달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부는 과세 환급의 지연에 대해 재무부 장관이 정한 월 이자를 지불하여야 하며, 그 기한은 상기 제 2항에 명시된 환급 시기의 종료일로부터 과세 환급이 이루어지는 일자까지의 일수를 계산하며 최대 24개월까지이며 한달을 채우지 않아도 한달로 계산한다.</p> <p>(3a) (3)항에 언급한 재무부장관 월 이자율은 기준이자율을 12로 나눈 값을 월 이자율로 적용한다</p>	

No	UU KUP (국세기본법 개정 전)	UU Cipta Kerja (국세기본법 개정 후)	비고
4	<p>Pasal 13</p> <p>(1) 미납세금의 발생 시기 또는 과세 기간, 별도 과세년도 또는 과세년도의 종료 후 5년 이내에 국세청장은 다음과 같은 경우 추정 결정서(SKPKB)를 고지할 수 있다.</p> <p>a. 세무 감사 결과 또는 기타 세무 자료에 의거하여 세금이 미납 또는 일부만이 납부 되었을 경우</p> <p>b. 제3조 3항에 언급된 기한 내에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와 서면 독촉장 발부 후에도 독촉장에 명시된 기한 내에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p> <p>c. 부가세(PPN) 및 사치세(PPnBM)에 대한 세무 감사 결과 또는 기타 세무 자료에 의거하여 과납 세금이 환급되지 않았어야 하거나 또는 0%의 요금이 적용되지 말았어야 된다고 밝혀졌을 경우</p> <p>d. 본 규정 제28조 및 제29조에 명시된 의무 사항들에 대한 불충족으로 미납세금의 총액을 알 수 없을 경우</p> <p>e. 제2조 4a항에 언급된 국세청장의 직권으로 납세자 번호(NPWP)를 부여 받거나 부가세 신고(발행) 사업자로 확인된 납세자의 경우</p>	<p>(1) 미납세금의 발생 시기 또는 과세 기간, 별도 과세년도 또는 과세년도의 종료 후 5년 이내에 국세청장은 다음과 같은 경우 추정 결정서(SKPKB)를 고지할 수 있다.</p> <p>a. 세무 감사 결과 세금이 미납 또는 일부만이 납부 되었을 경우</p> <p>c. 부가세(PPN) 및 사치세(PPnBM)에 대한 세무 감사 결과 과납 세금이 환급되지 않았어야 하거나 또는 0%의 요금이 적용되지 말았어야 된다고 밝혀졌을 경우</p> <p>f. 과세사업자로 과세 물품 및/또는 과세대상 용역을 제공하지 않거나, 과세대상 물품 /또는 용역을 수출하지 않으며, 부가세법 9조 (6e)항에 따라 매입부가세를 환급받거나 공제한 경우</p>	

No	UU KUP (국세기본법 개정 전)	UU Cipta Kerja (국세기본법 개정 후)	비고
	<p>(2) 상기 제1항의 a, e에 명시된 추정 결정서(SKPKB)에 의해 확정된 과부족 세금의 총액에 월 2%의 행정 과태료 이자를 더하여 합산한다. 행정 과태료 이자의 최대 추정 가능 기간은 24개월이며, 이에 대한 기산 일자는 미납세금의 발생 시기 또는 과세 기간, 별도 과세년도 또는 과세년도의 종료일로부터 추정 결정서(SKPKB)의 발급일자까지를 계산한다.</p> <p>(3) 상기 제1항의 b, c, d에서 언급한 추정 결정서(SKPKB) 상의 과세 총액의 행정 벌과금의 증가율은 다음과 같다. a. 1년의 과세년도 중에서 납부하지 않았거나 일부만 납부한 소득세의 50% b. 과부족 징수, 공제 또는 납부한 소득세의 100% c. 납부하지 않았거나 일부만 납부한 부가세(PPN) 및 특별 판매세 (PPnBM)의 100%</p> <p>(4) 상기 제1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미납세금의 발생 시기 또는 과세 기간, 별도 과세년도 또는 과세년도의 종료 후 5년 이내에 납세(과세) 결정서 (SKP)를 발부하지 않으면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산출한 신고 세액은 조세법에 의거하여 정확히 산출된 것으로 간주한다.</p>	<p>(2) 상기 제1항의 a, e에 명시된 추정 결정서(SKPKB)에 의해 확정된 과부족 세금의 총액에 재무부장관이 정한 월 이자율로 계산된 이자를 더하여 합산한다. 행정 과태료 이자의 최대 추정 가능 기간은 24개월이며, 이에 대한 기산 일자는 미납세금의 발생 시기 또는 과세 기간, 별도 과세년도 또는 과세년도의 종료일로부터 추정 결정서(SKPKB)의 발급일자까지를 계산한다.</p> <p>(2a) 제(1)항 f의 과소 납부 세액은 재무부장관이 정한 월 이자율에 따라 행정 과태료가 가산되며, 납부기한일부터 납부 시점까지 계산된다. 최대 24개월 동안 부과되며 한 달의 일부는 1개월로 계산된다.</p> <p>(2c) 상기 (2)항 및 (2a)항의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월 이자율은 기준 금리에 15%를 더한 12개월로 나눈 이자율을 월 이자율로 계산한다.</p> <p>(3) 상기 제1항의 b, c, d에서 언급한 추정 결정서(SKPKB) 상의 과세 총액의 행정 벌과금의 증가율은 다음과 같다. a. 1년의 과세년도 중에서 납부하지 않았거나 일부만 납부한 소득세의 50% b. 과부족 징수, 공제 또는 납부한 소득세의 100% c. 납부하지 않았거나 일부만 납부한 부가세(PPN) 및 특별 판매세 (PPnBM)의 100%</p> <p>(3a) 상기(1) a, c에 언급된 부가가치세 및 사치품 판매세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이자 및 추가로 행정 과태료가 적용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은 가장 높은 한 가지 형태의 과태료만 적용된다.</p> <p>(4) 상기 제1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미납세금의 발생 시기 또는 과세 기간, 별도 과세년도 또는 과세년도의 종료 후 5년 이내에 납세(과세) 결정서 (SKP)를 발부하지 않으면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산출한 신고 세액은 조세법에 의거하여 정확히 산출된 것으로 간주한다.</p> <p>단, 납세자가 과세 기간, 과세 연도 중 조세 관련 형사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한다.</p>	

Ⅲ. 부록편

No	UU KUP (국세기본법 개정 전)	UU Cipta Kerja (국세기본법 개정 후)	비고
	<p>(5) 납세자가 제1항에 명시된 5년의 기한이 종료한 후 국가 수입에 막중한 손해를 일으킨 조세 관련 범법 행위 또는 기타 범법 행위로 인해 형사 기소되어 법정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형사 조치 대상자일 경우에는, 상기 제1항의 5년이 경과할지라도 추징 결정서(SKPKB)를 발행할 수 있으며, 행정 과태료(이자)는 미지급 또는 부족 세액의 48%를 추징할 수 있다.</p> <p>(6) 상기 제5항에 언급한 추징 결정서(SKPKB)의 발급 방법은 재무부 장관 규정에 의거하여 정해진다.</p>	<p>(5) 삭제됨</p> <p>(6) 상기 제1항에 언급한 추징 결정서(SKPKB)의 발급 방법은 재무부 장관 규정에 의거하여 정해진다.</p>	
5	<p>Pasal 13A</p> <p>부지중의 실수로 납세자가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또는 제출은 하였지만 세금 신고서의 기재 내용이 정확하지 않거나 완전하지 않을 경우, 또는 첨부한 별도 서류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음으로 인해 국가 수입에 손해를 일으킨 납세 의무자에게는, 처음으로 발생한 부지중에 일으킨 실수의 경우 추징 결정서(SKPKB)를 통해 확정된 미납세금 총액의 200%에 해당하는 행정 벌과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지만, 이에 대한 형사 처벌은 면할 수 있다.</p>	<p>삭제됨</p>	
6	<p>Pasal 14</p> <p>(1) 국세청장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과세 고지서(Surat Tagihan Pajak)를 발부할 수 있다.</p> <p>a. 당해 년도의 소득세를 미납 또는 일부만 납부한 경우</p> <p>b. 세무 조사 결과, 오기나 계산의 오류로 인한 조세의 부족 납부 사실이 나타났을 경우</p> <p>c. 납세 의무자에게 행정 벌과금 또는 지연 이자가 징수되었을 경우</p> <p>d. 사업자가 부가세 신고 업체로 확인되었으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으나 정해진 기한 내에 발행하지 않은 경우</p>	<p>(1) 국세청장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과세 고지서(Surat Tagihan Pajak)를 발부할 수 있다.</p> <p>a. 당해 년도의 소득세를 미납 또는 일부만 납부한 경우</p> <p>b. 세무 조사 결과, 오기나 계산의 오류로 인한 조세의 부족 납부 사실이 나타났을 경우</p> <p>c. 납세 의무자에게 행정 벌과금 또는 지연 이자가 징수되었을 경우</p> <p>d. 사업자가 부가세 신고 업체로 확인되었으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세금 계산서를 늦게 작성한 경우</p>	

No	UU KUP (국세기본법 개정 전)	UU Cipta Kerja (국세기본법 개정 후)	비고
	<p>e. 부가세 신고 업체로 확인된 사업자가 1984년 부가세법과 그 개정법의 13조 5항에 부합하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단 세금계산서의 내용 중 다음의 항목은 예외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984년 부가세법과 그 개정법의 13조 5항 b에 명시된 구매자의 신분 2) 해당 거래가 소매업자에 의해 이루어졌을 경우, 1984년 부가세법과 그 개정법의 13조 5항 b, g에 명시된 이름, 서명을 포함한 구매자의 신분 <p>f. 부가세 신고업자(PKP)가 세금 계산서 발행 기간과 일치하지 않은 세금 계산서를 신고할 경우</p> <p>g. 1984년 부가세법과 그 개정법의 9조 6a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생산이 취소되었으나 매입 부가세 환급을 받은 부가세 신고업자(PKP)의 경우 경우</p> <p>(2) 상기 제1항의 과세 고지서(STP)는 납세 결정서(SKP)와 같은 법적 효력을 갖는다.</p> <p>(3) 상기 제1항의 a, b에 명시된 과세 고지서(STP)에서 확정된 미납세금 총액에 2%에 해당하는 행정 과태료 지연 이자를 매월, 최장 24개월간 추징할 수 있으며, 그 기산은 납세 의무 발생 일자 또는 과세 기간, 별도 과세년도 또는 과세년도의 종료일로부터 과세 고지서의 발급일자까지 계산한다.</p> <p>(4) 각각 상기 제1항의 d, e, f에 해당하는 사업자 또는 부가세 신고업자의 경우 미납세금의 납부 의무와는 별도로 과세 대상 금액의 2%에 해당하는 행정 벌과금을 추가로 추징당한다.</p>	<p>e. 부가세 신고 업체로 확인된 사업자가 1984년 부가세법과 그 개정법의 13조 5항 및 6항에 부합하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단 세금계산서의 내용 중 다음의 항목은 예외로 한다.</p> <p>1984년 부가세법과 그 개정법의 13조 5항 b에 명시된 구매자의 신분 및 해당 거래가 소매업자에 의해 이루어졌을 경우, 1984년 부가세법과 그 개정법의 13조 5항 b, g에 명시된 이름, 서명을 포함한 구매자의 신분</p> <p>f. 삭제됨</p> <p>g. 삭제됨 ; 또는</p> <p>h. 납세의무자에게 지급되지 않는 보상이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결정이 내려 짐 2. 결정을 받아 드림 3. 정보 및 데이터 접수 <p>(2) 상기 제1항의 과세 고지서(STP)는 납세 결정서(SKP)와 같은 법적 효력을 갖는다.</p> <p>(3) 상기 제1항의 a, b에 명시된 과세 고지서(STP)에서 확정된 미납세금 총액에 재무부장관이 규정한 이자율에 해당하는 행정 과태료 지연 이자를 매월, 최장 24개월간 추징할 수 있으며, 그 기산은 납세 의무 발생 일자 또는 과세 기간, 별도 과세년도 또는 과세년도의 종료일로부터 과세 고지서의 발급일자까지 계산한다</p> <p>(4) 각각 상기 제1항의 d, e, f에 해당하는 사업자 또는 부가세 신고업자의 경우 미납세금의 납부 의무와는 별도로 과세 대상 금액의 1%에 해당하는 행정 벌과금을 추가로 추징당한다.</p>	

Ⅲ. 부록편

No	UU KUP (국세기본법 개정 전)	UU Cipta Kerja (국세기본법 개정 후)	비고
	<p>(5) 상기 제1항 g에 해당하는 부가세 신고 업자는 재지급 요청된 금액의 월 2%에 해당하는 이자를 행정 과태료로 추징 당한다. 이의 기산은 환급 결정서(SKPKPP)의 발급 일자로부터 과세 고지서(STP)의 발급일자까지 하며, 한 달을 채우지 못한 일수일 경우에도 한 달로 계산한다.</p> <p>(6) 과세 고지서의 발급 방법은 재무부장관 규정으로 정한다.</p>	<p>(5) 삭제됨</p> <p>(5a) (3) 항에 언급된 재무 부장관이 정하는 월 이자율은 기준 금리에 5%를 더한 후 12로 나눈 값이다.</p> <p>(5b) 세금 고지서는 세금 납부 기한 또는 과세 기간, 과세 연도 종료 후 5년 이내에 발부되어야 한다.</p> <p>(5c) 단 (5b)에 언급된 발부 기간에 대하여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a. 제 19 조 (1) 항에 따른 행정 제재에 대한 과세 징수서는 추징결정서 및 정정결정서의 신청 결정서, 조세법원결정서로서 만료되기 전까지 발행되어야 한다. b. 제 25 조(9) 항에 따른 행정적 제재에 대한 세금 징수 고지서는 납세자가 조세법원 제기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 결정서로부터 5년 이내에 발급 될 수 있다. c. 제 27 조 (5d) 항에 따른 행정적 제재에 대한 세금 징수 고지서는 재판에서 조세법원 판사가 항소 결정을 선고 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발행 될 수 있다.</p> <p>(6) 과세 고지서의 발급 방법은 재무부장관 규정으로 정한다.</p>	
7	<p>Pasal 15</p> <p>(1) 국세청장은 세무 감사 후 일지라도 새로운 자료의 발견으로 인해 추가적인 미납세금이 발생될 경우, 미납세금의 발생 일자 또는 과세 기간, 별도 과세년도 또는 과세년도의 종료 후 5년 이내에 추가 추징 결정서(SKPKBT)를 발부할 수 있다</p> <p>(2) 추가 추징 결정서(SKPKBT)에 의해 확정된 부족 세금 총액에는 해당 부족 세액의 100%에 해당하는 행정 벌과금이 추가로 부과된다.</p>	<p>Pasal 15</p> <p>(1) 국세청장은 세무 감사 후 일지라도 새로운 자료의 발견으로 인해 추가적인 미납세금이 발생될 경우, 미납세금의 발생 일자 또는 과세 기간, 별도 과세년도 또는 과세년도의 종료 후 5년 이내에 추가 추징 결정서(SKPKBT)를 발부할 수 있다</p> <p>(2) 추가 추징 결정서(SKPKBT)에 의해 확정된 부족 세금 총액에는 해당 부족 세액의 100%에 해당하는 행정 벌과금이 추가로 부과된다.</p>	

No	UU KUP (국세기본법 개정 전)	UU Cipta Kerja (국세기본법 개정 후)	비고
	<p>(3) 국세청장의 추가 추징 결정서(SKPKBT)를 발급하기 위한 세무 감사 이행 전에 납세자의 자진 신고에 의해 추가 추징 결정서(SKPKBT)가 발급되어질 경우에는 상기 제2항에 명시된 행정 벌과금은 부과되지 않는다.</p> <p>(4) 납세자가 제1항에 명시된 5년의 기한이 종료한 후, 국가 수입에 막중한 손해를 일으킨 조세 관련 범법 행위 또는 기타 범법 행위로 인해 형사 기소되어 법정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형사 조치 대상자일 경우에는, 상기 제1항의 5년이 경과할지라도 추가 추징 결정서(SKPKBT)를 발행할 수 있으며, 행정 과태료(이자)는 미지급 또는 부족 세액의 48%를 추징할 수 있다.</p> <p>(5) 상기 제4항에 명시된 추가 추징 결정서(SKPKBT)의 발급 방법은 재무부장관 규정으로 정한다.</p>	<p>(3) 국세청장의 추가 추징 결정서(SKPKBT)를 발급하기 위한 세무 감사 이행 전에 납세자의 자진 신고에 의해 추가 추징 결정서(SKPKBT)가 발급되어질 경우에는 상기 제2항에 명시된 행정 벌과금은 부과되지 않는다.</p> <p>(4) 삭제됨</p> <p>(5) 상기 제4항에 명시된 추가 추징 결정서(SKPKBT)의 발급 방법은 재무부장관 규정으로 정한다.</p>	
8	<p>Pasal 17 B</p> <p>(1) 국세청장은 17C조와 17D조에 명시된 바와 같은 납세 의무자의 환급 신청을 제외한 나머지 환급 신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완전한 환급 신청서류를 접수한 일자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반드시 과세 결정서(SKP)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p> <p>(1a) 상기 제1항에 명시된 규정은 조세법과 관련되어 형사조사 원시 증빙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납세 의무자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에 대한 규정은 재무부 장관 규정에 의거하여 결정한다.</p> <p>(2) 상기 제1항에 명시된 기간 내에 국세청장이 과세 결정서를 발급하지 않았을 경우, 환급 신청서는 인정된 것으로 간주되며, 해당 기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반드시 환급 결정서(SKPLB)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p> <p>(3) 상기 제2항에 명시된 환급 결정서(SKPLB)의 발급 기한을 경과하여 발급할 경우, 납세자에게 월 2%의 균형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그 계산은 제 2항에 명시된 최종 기한 일자로부터 환급 결정서의 발급일자까지로 계산한다.</p>	<p>(1) 국세청장은 17C조와 17D조에 명시된 바와 같은 납세 의무자의 환급 신청을 제외한 나머지 환급 신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완전한 환급 신청서류를 접수한 일자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반드시 과세 결정서(SKP)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p> <p>(1a) 상기 제1항에 명시된 규정은 조세법과 관련되어 형사조사 원시 증빙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납세 의무자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에 대한 규정은 재무부 장관 규정에 의거하여 결정한다.</p> <p>(2) 상기 제1항에 명시된 기간 내에 국세청장이 과세 결정서를 발급하지 않았을 경우, 환급 신청서는 인정된 것으로 간주되며, 해당 기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반드시 환급 결정서(SKPLB)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p> <p>(3) 상기 제2항에 명시된 환급 결정서(SKPLB)의 발급 기한을 경과하여 발급할 경우, 납세자에게 재무부장관이 규정한 월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그 계산은 제 2항에 명시된 최종 기한 일자로부터 환급 결정서의 발급일자까지로 계산한다.</p>	

Ⅲ. 부록편

No	UU KUP (국세기본법 개정 전)	UU Cipta Kerja (국세기본법 개정 후)	비고
	<p>(4) 상기 제1a항에 명시된 조세법과 관련된 형사 조사 원시 증빙 감사가 특별 감사자에 의해 계속해서 진행되지 않거나, 특별 감사가 진행되지만 조세법의 형사 기소는 계속해서 진행되지 않을 경우, 또는 특별 감사와 조세법의 형사 기소는 계속해서 진행되지만 이후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모든 법적 조치에서 자유로워진 경우, 해당 납세 의무자는 환급 결정서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납세 의무자에게 월 2%, 최장 24개월 간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기산 일자 는 제1항에 명시된 12개월 기한의 종료일로부터 환급 결정서의 발급일자까지 이며 1일이 경과되어도 한 달로 계산한다.</p>	<p>(4) (1a) 항에 언급 된 조세 분야의 형사 범죄에 대한 예비 증거를 조사하는 경우 a. 조사가 뒤 따르지 않거나 b. 조사에 이어 조세 분야의 범죄 행위에 대한 기소가 뒤 따르지 않거나 c. 조세 분야의 형사 범죄에 대한 수사 및 기소가 이루어졌지만, 법원 결정에 따라 무죄 판결을 받고 모든 법적 조치에서 자유로워진 경우 해당 납세 의무자는 환급 결정서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납세 의무자에게 매월 재무부장관이 정한 상기(1)항의 월 이자를 지급한다.</p> <p>(5) 조세 분야 형사 범죄의 예비 증거를 조사하는 경우 (4)항에 언급 된 이자는 아래의 경우 제공되지 않는다. a. 납세자가 제 8 조 (3) 항에 따라 자신의 행위가 사실이 아닌 것을 자수하여 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b. 조사를 계속했지만, 조세 범죄 조사가 제 44B 조에 언급 된 바와 같이 종결되었기 때문에 조세 분야의 형사 범죄 기소는 계속되지 경우</p> <p>(6) (3)항 및 (4)항에 따른 이자는 24개월까지 지급되며, 그 달의 일부는 1개월로 계산된다.</p> <p>(7) (3)항 및 (4) 항에 따른 재무 부장관이 정하는 월 이자율은 기준금리에서 12로 나눈 값으로 산정한다.</p>	<p>변경</p> <p>추가</p>

No	UU KUP (국세기본법 개정 전)	UU Cipta Kerja (국세기본법 개정 후)	비고
9	<p>Pasal 19</p> <p>(1) 추정 결정서(SKPKB)나 추가 추정 결정서(SKPKBT) 및 정정 결정서(SKP), 이의 신청 결정서(SKK), 조세 심판 결정서(PB), 조세 심판 재심 결정서(PPK)로 인해 추가 부족 세금이 발생하였으나 과세 납부 기한내에</p> <p>해당 세금이 지불되지 않은 경우, 매월 미납 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이자가 행정 과태료로 부과된다. 이에 대한 기간 일자는 과세 납부 기한일로부터 납부한 날 또는 과세 고지서(STP)의 발급일자까지 계산되어지며, 하루가 경과되어도 한 달로 계산한다.</p> <p>(2) 납세 의무자가 납부할 세금에 대하여 분할 납부 또는 연장 납부를 신청하여 허가 받은 경우에도 미납세액에 대해서는 월 2%의 지연 이자를 행정 과태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하루가 경과되어도 한 달로 계산한다.</p> <p>(3) 납세 의무자가 연간 세금 신고서의 연장 신고를 허가 받았으나 제3조 5 항에 명시된 미납세액의 임시 산출 금액이 실제 부족 세액의 미납 금액보다 적을 경우, 월 2%의 지연 이자를 부과하며 그 기산은 제3조 3항의 b와 c 에서 규정한 연간 세금 신고서의 신고 기한일로부터 부족 지불 세액의 납부 일자까지 계산한다. 하루가 경과되어도 한 달로 계산한다.</p>	<p>Pasal 19</p> <p>(1) 추정 결정서(SKPKB)나 추가 추정 결정서(SKPKBT) 및 정정 결정서(SKP), 이의 신청 결정서(SKK), 조세 심판 결정서(PB), 조세 심판 재심 결정서(PPK)로 인해 추가 부족 세금이 발생하였으나 과세 납부 기한내에</p> <p>해당 세금이 지불되지 않은 경우, 매월 미납 금액에서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월 이자가 행정 과태료로 부과된다. 이에 대한 기간 일자는 과세 납부 기한일로부터 납부한 날 또는 과세 고지서(STP)의 발급일자까지 계산되어지며, 하루가 경과되어도 한 달로 계산한다.</p> <p>최대 24개월까지 부과할 수 있다.</p> <p>(2) 납세 의무자가 납부할 세금에 대하여 분할 납부 또는 연장 납부를 신청하여 허가 받은 경우에도 미납세액에 대해서는 재무부장관이 정한 월이자를 행정 과태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하루가 경과되어도 한 달로 계산한다.</p> <p>최대 24개월까지 부과할 수 있다.</p> <p>(3) 납세 의무자가 연간 세금 신고서의 연장 신고를 허가 받았으나 제3조 5 항에 명시된 미납세액의 임시 산출 금액이 실제 부족 세액의 미납 금액보다 적을 경우, 재무부장관이 규정한 월이자를 지연 이자를 부과하며 그 기산은 제3조 3항의 b와 c 에서 규정한 연간 세금 신고서의 신고 기한일로부터 부족 지불 세액의 납부 일자까지 계산한다. 하루가 경과되어도 한 달로 계산한다.</p> <p>최대 24개월까지 부과할 수 있다.</p> <p>(4) (1)항, (2) 항, (3) 항에 언급한 재무부 장관이 정하는 월 이자율은 기준금리에 12로 나눈 값으로 산정한다.</p>	<p>변경</p> <p>추가</p>
10	<p>Pasal 27A</p> <p>(1) 이의 신청 또는 조세 심판 또는 조세 심판 재심 청구가 일부 또는 전부 승소할 경우, 추정 결정서(SKPKB), 추가 추정 결정서(SKPKBT), 영세 결정서(SKPN) 및 환급 결정서(SKPLB)에 의해 청구된 과세금 중 과오납된(추가 납부된) 세금에 대해서는 과오납 총액에 월 2% 이자를 최고 24개월간 계산하여 더해 환급되어지게 되며, 그 적용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p>	<p>Pasal 27A</p> <p>모두 삭제됨</p>	<p>변경</p>

Ⅲ. 부록편

No	UU KUP (국세기본법 개정 전)	UU Cipta Kerja (국세기본법 개정 후)	비고
	<p>a. 추정 결정서(SKPKB)와 추가 추정 결정서(SKPKBT)의 경우, 과오납을 야기한 과세금의 납부 일자로부터 이의 신청결정서(SKK), 조세 심판 결정서(PB), 또는 재심 결정서(PPK)의 발급일자까지 기산하여 계산한다.</p> <p>b. 영세 결정서(SKPN)와 환급 결정서(SKPLB)의 경우, 과세 결정서(SKPLB)의 발급 일자로부터 이의 신청결정서(SKK), 조세 심판 결정서(PB), 또는 재심 결정서(PPK)의 발급 일자까지 기산하여 계산한다.</p> <p>(1a) 상기 제1항에서 명시된 균형 이자는 일부 또는 전부 승소한 정정 결정서(SKPLB), 확정 세금 감면 결정서(SKPKP), 또는 확정 세금 취소 결정서(SKPKP)에 의해 청구된 과세금 중 과오납된(추가 납부된) 세금에 대해서도 지급되어지며, 그 적용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p> <p>a. 추정 결정서(SKPKB)와 추가 추정 결정서(SKPKBT)의 경우, 과오납을 야기한 과세금의 납부일자로부터 정정 결정서(SKPLB), 확정 세금 감면 결정서(SKPKP), 또는 확정 세금 취소 결정서(SKPKP)의 발급일자까지를 기산하여 계산한다.</p> <p>b. 영세 결정서(SKPN)와 환급 결정서(SKPLB)의 경우, 과세 결정서(SKPLB)의 발급 일자로부터 정정 결정서(SKPLB), 확정 세금 감면 결정서(SKPKP) 또는 확정 세금 취소 결정서(SKPKP)의 발급일자까지를 기산하여 계산한다.</p> <p>c. 과세 고지서(STP)는 과오납을 야기한 과세금의 납부일자로부터 정정 결정서(SKPLB), 확정 세금 감면 결정서(SKPKP), 또는 확정 세금 취소 결정서(SKPKP)의 발급일자까지를 기산하여 계산한다.</p> <p>(2) 상기 제1항에서 언급한 균형 이자는 제14조 4항의 행정 벌과금의 과납 그리고/또는 납세 의무자에 의해 일부 또는 전부 승소한 이의 신청 결정서(SKK), 조세 심판 결정서(PB), 또는 재심 결정서(PPK)의 발급으로 인한 행정 과태료 감면 결정서(SKPSA) 또는 행정 과태료 면제 결정서(SKPSA)에 근거한, 제19조 1항의 이자에 대해서도 지급된다.</p>		

No	UU KUP (국세기본법 개정 전)	UU Cipta Kerja (국세기본법 개정 후)	비고
	(3) 과오납세금에 대한 환급 금액 계산 방법과 균형 이자의 지급 방법은 재무부 장관 규정에 근거하여 규정한다		
11	Pasal 27 B	<p>(1) 이의 신청 또는 조세 심판 또는 조세 심판 재심 청구가 일부 또는 전부 승소한 기납부세금에 대해서는 납세자에게 이자를 보상하여야 한다.</p> <p>(2) (1) 항에 따른 이자 보상은 아래 결정서와 납세자가 동의한 결정의 납부 금액의 최대 금액의 과납에 대하여 지급한다. a. 추정 결정서(SKPKB) b. 추가 추정 결정서(SKPKBT) c. 환급 결정서(SKPLB) d. 영세결정서(SKPN)</p> <p>(3) 납세자는 정정 요청, 세금 감면 신청, 세금 과다 납부를 유발하는 세금 징수 통지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 또는 취소 신청하는 경우 이자 보상을 받는다.</p> <p>(4) (1)항 및 (3) 항에 언급된 이자 보상은 아래와 같다.이 제공됩니다. a. 재무부장관이 정한 기준 이자율을 12로 나눈 값 b. 최대 24 개월까지이며, 한 달의 일부는 전체 1 개월로 계산된다.</p> <p>(5) (4) 항에 따른 월 이자율은 이자 보상 산정 기준으로 사용되는 보상 산정 개시일에 유효한 월 이자율이다.</p> <p>(6) 상기(1)항에 언급한 이자율의 계산은 추정결정서, 추가추정결정서, 환급 결정서,영세결정서 발행일로 이의신청 결정서, 조세심판 결정서 및 재심결정서 발행까지 계산한다</p> <p>(7) 상기 (3)항에 언급된 이자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a. 추정 결정서(SKPKB)와 추가 추정 결정서(SKPKBT)의 경우, 과오납을 야기한 과세금의 납부일자로 부터 정정 결정서(SKP), 확정 세금 감면 결정서(SKPKP), 또는 확정 세금 취소 결정서(SKPKP)의 발급일자까지를 기산하여 계산한다.</p>	추가

Ⅲ. 부록편

No	UU KUP (국세기본법 개정 전)	UU Cipta Kerja (국세기본법 개정 후)	비고
		<p>b. 영세 결정서(SKPN)와 환급 결정서(SKPLB)의 경우, 과세 결정서(SKPLB)의 발급 일자로부터 정정 결정서(SKPN), 확정 세금 감면 결정서(SKPKP) 또는 확정 세금 취소 결정서(SKPKP)의 발급일자까지를 기산하여 계산한다.</p> <p>c. 과세 고지서(STP)는 과오납을 야기한 과세금의 납부일자로부터 정정 결정서(SKPN), 확정 세금 감면 결정서(SKPKP), 또는 확정 세금 취소 결정서(SKPKP)의 발급일자까지를 기산하여 계산한다.</p> <p>(8) 이자 보상 절차에 관한 추가 규정은 재무부 장관의 규정 따른다</p>	
12	<p>Pasal 38</p> <p>다음과 같은 본인의 과실로 인해 국가 수입에 손해를 초래하고, 또 제13A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그 과실이 처음이 아닌 경우, 해당 납세 의무자에게는 미납 또는 부족 세금의 최소 1배에서 최고 2배의 벌과금을 부과, 또는 최소 3개월에서 최고 1년의 징역으로 처벌 받게 된다.</p>	<p>Pasal 38</p> <p>다음과 같은 본인의 과실로 인해 국가 수입에 손해를 초래한 경우 해당 납세 의무자에게는 미납 또는 부족 세금의 최소 1배에서 최고 2배의 벌과금을 부과, 또는 최소 3개월에서 최고 1년의 징역으로 처벌 받게 된다.</p>	변경
13	<p>Pasal 44B</p> <p>(1) 국가 수입의 이익을 위해, 검찰 총장은 재무부 장관의 요청에 의해 요청서의 일자로부터 6(육)개월 이내에 조세 관련 형사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p> <p>(2) 상기 제1항에 명시된 조세 관련 형사 조사의 중지는 납세 의무자가 미지급 또는 부분 지급한 과세액, 또는 잘못 지급된 환급세액과 그에 대한 행정 벌과금을 모두 납부한 이후에만 이루어 질 수 있다. 이때 부과되는 행정 벌과금은 미지급 또는 부분 지급한 과세 총액, 또는 잘못 지급된 환급세액 총액의 최대 4배에 달한다.</p>	<p>Pasal 44B</p> <p>(1) 국가 수입의 이익을 위해, 검찰 총장은 재무부 장관의 요청에 의해 요청서의 일자로부터 6(육)개월 이내에 조세 관련 형사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p> <p>(2) 상기 제1항에 명시된 조세 관련 형사 조사의 중지는 납세 의무자가 미지급 또는 부분 지급한 과세액, 또는 잘못 지급된 환급세액과 그에 대한 행정 벌과금을 모두 납부한 이후에만 이루어 질 수 있다. 이때 부과되는 행정 벌과금은 미지급 또는 부분 지급한 과세 총액, 또는 잘못 지급된 환급세액 총액의 최대 3배에 달한다.</p> <p>(3) (1) 항에 따른 조세 분야 형사 범죄 수사 중지 요구에 관한 규정은 재무부장관령으로 정한다.</p>	<p>변경</p> <p>추가</p>

알기 쉬운 인도네시아 세법

발행일 2020년 11월

발행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도네시아 코리아데스크
(+62 21 5292 1302)

집필자 PT. BNG Consulting 김재훈 대표
(kimjhoon@bngconsulting.co.kr)

이 책은 2020년 11월 현재 인도네시아 세법 관련 법규정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향후 관련 법규가 변경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책에 수록된 내용의 저작권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있습니다.